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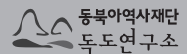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25 Summer 20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연구논문

- 박병섭 ■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7
석주희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49
심정보·박유미 ■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의 실천 85
엄태봉 ■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113

자료소개

- 김수희 ■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둔 시기, 제주해녀의 어업 활동 자료 151
정영미 ■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이력서(履歷書)」 173

서평

- 이석용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도시환 편, 2022, 동북아역사재단 217
주성재 ■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연구」:
김순배·김종근·양윤정·정인철 공저, 2022, 동북아역사재단 237



영토·해양 일지

엄태일 | 영토·해양 일지 244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254

발행 및 심사규정 256

투고 요령 26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264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276



연구 계획서



- **박병섭** |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 **석주희**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 **심정보 · 박유미** |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의 실천
- **엄태봉** |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대표

- I. 머리말
- II. ‘정한’론 정변 이전 ‘정한’ 계획
- III. 고종의 친정과 일본의 ‘정한’ 준비
- IV. 맺음말

1. 머리말

일본 해군 수로국은 조선 해도로서는 최초인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1875년(明治 8) 2월에 간행했다. 이는 영국이나 러시아의 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수십까지 기록한 본격적인 해도다. 이 해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 동도를 러시아 이름 ‘메넬라이 초’, 서도를 ‘올리부차 초’라고 명명했는데 이 외에도 여러 특징이 있다. 항만의 확대도로서 라자레프(Lazarev, 영흥)만, 운코프스키(Unkovskii, 영일)만, 러시아의 포시예트(Posiet)만, 금각(金角, Golden Horn, 블라디보스토크)만 등 네 항구를 개재했다. 이 지도는 이름이 <조선동해안도>인데 러시아 항구의 확대도까지 개재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 해군은 이들 두 항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 6월 일본 해군은 조선에서는 최초로 부산항, 영흥만, 영일만에서 측량을 실시했다. 동해안을 측량했던 배는 군함 운요(雲揚)이다. 그들은 측량 결과 영흥만은 부산 다음의 양항(良港)이며 식량과 소금이 풍부하지만, 군비는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¹ 그런데 이 측량에는 의문점이 많다. 당시 일본은 자국 해안조차 측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영국 측량선 실비아(Sylvia)에 맡기고 측량 기술을 배우던 중이었다.² 이렇듯 측량 기술이 미숙한 일본이 영흥만에서 행한 측량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동해안을 먼저 측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많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영흥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훗날 초대 주한 일본공사가 되는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외무경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보낸 서장에서 세와

* 논문 투고일: 2023.4.17, 심사 완료일: 2023.5.15, 게재 확정일: 2023.5.16.

1 김홍수, 2013, 「1875년 朝日交渉의 실태 요인」, 『한일관계사연구』 45집, 316쪽.

2 小林茂, 2011, 『外邦図』, 中公新書, 31쪽.

키 히사토(瀨脇壽人)를 조선 문체와 관련시켜 라자레프항, 즉 영흥만 일대를 탐지해 오게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썼다.³ 영흥만의 탐지란 군사적인 정탐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임무이다. 당시 신미양요 등을 경험한 조선 정부는 척화(척양)비를 전국에 세워 외세 침입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런 시국에 영흥만에 잠입해 군사적인 정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흥만에 특별한 군사적 정탐을 계획했을까? 이는 필시 일본 정계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정한(征韓)'론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는 듯하다. 이 글은 위의 의문점을 해명한다.

일본의 '정한'론이라 하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이 조선의 '무례함'을 문책하려는 '정한'론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이고의 '정한'론은 조선의 '무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육군대장 겸 참의(參議)인 사이고는 참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함께 구체적인 군사 작전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전 계획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쪽에서는 군사 작전이 전혀 없었으며 만전이 아니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해명한다.

한편, '정한'론은 1873년 정변으로 인해 '정한'과 참의들이 모두 하야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래서인지 정변 이후 '정한' 계획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선행 연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 안에서 '정한' 계획은 계속 제기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동해안과의 관련도 밝힌다.

이 글에서 연월일은 기본적으로 양력을 사용한다. 또한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이다.

3 박한민, 2022,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15쪽.

II. ‘정한’론 정변 이전 ‘정한’ 계획

1. 일본 육군의 ‘정한’ 계획

1870년 일본 외무성은 조선 정부와의 수교를 위해 첫 공식 사절로 외무 권소승(外務權少丞)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을 부산 왜관에 파견했다.⁴ 그들은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宜嘉)가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등을 가지고 12월 왜관에 도착했다. 이 서계는 조일 정부 간 교제를 제안하는 것이며 천황과 무관했기 때문에 조선 측이 싫어하는 황(皇), 칙(勅) 등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측은 때마침 일본인도 승선한 독일 군함이 부산에 입항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되고 다이슈(對州, 쓰시마) 외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을 기본적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조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협상을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조선과의 현안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872년 10월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조선 측을 위협하듯 군함 가스카(春日) 등을 이끌고 왜관에 들어가 다이슈의 조선에 대한 부채 등을 일방적으로 정산하고 왜관을 점거하여 외무성 공관이라 칭했다.

일본 해군은 가스카함을 조선에 파견함에 앞서 조선의 군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그들은 요코하마(橫濱) 항에 정박 중인 미국 군함으로부터 ‘미국, 프랑스 등이 조선국을 공격했던 장소, 즉 강화도의 측량도’ 등을 차용해 모사했다.⁵ 그들의 조선 공격이란 병인(1866), 신미(1871) 양요를 말한다. 또 가스카함은 부산에서 조선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는 왜관에 있는 것을 압수했던 듯하다. 해군 수로국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도 병(丙) 1호

4 요시오카에 앞서 외무성 출사 사다 하루보 등이 왜관에 파견되었으나 그들은 ‘다이슈 관리’를 칭했으므로 외무성의 공식 사절이 아니었다.

5 小林茂, 2011, 앞의 책, 41쪽.

〈조선전도(朝鮮全圖)〉⁶를 작성하여 다음 해 1873년 10월 간행했다. 이 지도는 조선 북부의 모습이 실제 형상과 크게 다르다.

한편, 육군은 하나부사에게 두 명을 동행시켰다. 한 명은 육군대장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고향인 사쓰마(薩摩) 출신 벳푸 시게요리(別府重頼) 대위, 다른 한 명은 참의 이타가키와 같은 고향인 도사(土佐) 출신 기타무라 가게나가(北村景長) 소좌(少佐, 소령)이다. 그들은 조선인으로 변장하고 동태를 정찰했다. 귀국 후 그들은 한인들이 약하며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다고 호언했다. 또 벳푸는 조선 팔도를 유린할 것을 열심히 주장했다.⁷ 그는 이를 위해서는 2~3개 중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장담했다.⁸ 그들의 정보나 위무성에서 빌린 지도 〈조선회도(朝鮮繪圖)〉⁹ 등을 바탕으로 사이고는 이타가키 및 태정관(太政官) 좌원(左院) 부의장 이지치 마사하루(伊地知正治) 등과 함께 '정한(征韓)' 계획을 세웠다. 일찍이 일본 정부의 '정한' 계획은 위무성 출사 사다하쿠보(佐田白茅)의 계획¹⁰ 등이 있었으나, 이는 탁상공론에 가까운 것이며 묘당에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타가키 등의 '정한' 계획이 실전을 상정한 첫 계획이었다.

사이고 등은 '정한' 전략회의를 12월 8일경부터 자주 열었다. 최종 '정한'

6 이 지도는 만주 흑룡강 하류 '奴兒干'까지 기입했으므로 원도의 계통은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한 〈조선국도(朝鮮國圖)〉(청구기호 178-449)와 같다. 다이슈가 16세기 무렵 작성하고, 임진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이 계통 지도의 특징은 수많은 작은 섬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울릉도를 우산도의 동쪽에 그린 것 등이다. 長正統, 1982, 『内閣文庫所蔵朝鮮國圖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 『史淵』 119号, 127쪽.

7 煙山專太郎, 1907, 『征韓論實相』. 早稲田大學出版部, 175-178쪽. 이 책에서 군인들은 벳푸 신스케(別府進介) 소좌, 기타무라 조베에(北村長兵衛) 중좌(中佐, 중령)라고 소개되었으나, 太政類典・第二編・明治四年~明治十年・第九十卷・外国交際三十三・諸官員差遣五, 『花房外務大丞外数名差遣』에는 본문과 같이 기록되었다. JACAR(일본 아시아歴史資料센터) Ref. A01000019400.

8 広瀬為興, 1979, 『明治十年西南ノ戦役土佐拳兵計画ノ真相』, 『鹿児島県史料 西南戦争』 제3권, 1017쪽. <https://ndonline.ndl.go.jp/#/detail/R300000001-1000001444304-00>; 諸星秀俊, 2009, 『明治六年「征韓論」における軍事構想』, 『軍事史学』 177號, 56-57쪽.

9 『朝鮮事務書』 卷之十五, 『史官ヨリ朝鮮繪圖返却ノ爲メ來翰』, JACAR, Ref B03030169600-0012.

10 사다의 '정한' 계획은 군대 30대대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여 국왕을 포로로 한다는 것이다. 『大日本外交文書』 第三卷, 88項, 138-140쪽; 佐田白茅, 1903, 『征韓論の舊夢談』, 사각본, 42-45쪽.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병사 4만 명을 부산에 상륙시키고, 2만 명을 육로로 한성으로 진격시킨다, 조선이 요격을 위해 출동하면 나머지 군대 중 1만 3천 명을 강화도 방면에서 한성으로 진격시키고, 7천 명을 평양에 상륙시켜 조선 왕과 군대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물산과 교통 등도 조사하고 무기 사용 계획 등을 적은 소책자까지 작성했다. 그들은 조선군에 대해, “대저 군은 난세 말기는 22만 8천 명, 치세 말기는 9만 4천 5백 명, 그중 8분의 1이 기병이다. … 그중 3분의 1을 선봉이라고 칭하며, 도성 안의 군대는 중국식 전통 훈련을 하되 서양식 훈련은 모른다. 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병사는 3만여 명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과거의 전란도 분석했다. 그들은 후금의 조선 정복이 성공하고 일본의 조선 출병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일본군이 조선은 극한의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여름 5월경부터 정벌을 시작했기에 조선군이 북방 산악지대로 도망쳤다, 또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공했을 때 부산에서 상륙하여 북상했으므로 조선군 주력부대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반성에서 이지치는 ‘정환’을 겨울철에 실시할 것, 총기는 미니에(Minié) 총을 사용할 것 등을 제기했다. 이 총이라면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에 대량으로 남아 있고, 또 사족들도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해안에 대한 작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조선 왕이 동북쪽으로 피난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이를 알면서도 조선 동해안에서 군함을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이다.

11 鹿兒島県教育会編, 1936, 『伊地知正治小伝』, 鹿兒島県教育会, 23-25쪽; 諸星秀俊, 2009, 앞의 글, 51-58쪽.



〈그림 1〉 일본 육군의 '정한' 전략¹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이고 등은 본격적인 '정한'론 논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 국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족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았다. 일찍

12 諸星秀俊, 2009, 위의 글, 5쪽.

이 그들은 신정부에 적대하는 지방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에서 싸운 병사들이다. 그런데 내란이 끝나고 판적봉환(版籍奉還), 폐번치현(廢藩置縣) 등 내정 개혁이 진행되자 많은 사족들이 실직했다.¹³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녹봉을 나라에서 받았으나 녹봉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사족들이 늘어났다. 게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도의 도입은 사족들의 존재 의의마저 잃게 하는 것이기에 사족들이 강경하게 반발해 사회불안이 증대했다.

한편 유수정부¹⁴ 각 부처는 야심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획득을 둘러싸고 대장성(大藏省)과 큰 마찰을 일으켰다. 게다가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했다. 또 육군대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연루된 부패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언제 사족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사이고는 잘 알려져 있듯이 “내란을 바라는 [사족들의] 마음을 외부로 옮겨 나라를 부흥시키는 원략(遠略)”¹⁵을 구상했다. 사이고의 ‘정한’의 주목적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눈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여 내란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곤란한 내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실력자들이 ‘정한’을 주장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메이지(明治) 초년에도 있었다. 유신의 삼걸로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다이슈가 말하는 조선의 ‘무례’¹⁶를 구실

13 1869년 판적봉환에 의해 각 지방 태수가 천황으로부터 번지사(藩知事)로 임명되었는데 수입은 10분의 1로 줄었다. 이 때문에 태수의 많은 가신, 즉 사족들이 실직했다. 게다가 1871년 폐번치현에 의해 번지사(藩知事)제도마저 폐지되고 실직한 사족들이 증가했다.

14 1871년 폐번치현 직후 많은 참의들이 참가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구미 각국을 순방하고 있었다. 남은 참의 등에 의해 유지된 정부를 ‘유수정부’라고 칭한다.

15 明治 6年 8月 17日付 板垣宛 西郷書簡, 번각문은 大西郷全集刊行會, 1927, 『大西郷全集』 第三卷, 平凡社, 727쪽, <https://dl.ndl.go.jp/pid/1155324/1/1>.

16 다이슈가 말하는 조선의 ‘무례’의 내용은 태수가 1868년 5월 27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이슈는 인구의 3할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척박한 섬이기 때문에 조선과 사교(私交) 조약을 맺어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구해 세건선(歲遣船)을 보내고, 수백 년 동안 ‘굴욕적인 밥(嗟來之食)’을 먹어왔다. 이것은 ‘번신의 예(藩臣之禮)’를 취하는 것과 비슷한 굴욕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천황은 한국

로 '정한'을 주장했다. 그 의도는 여론을 '정한'에 집중시킴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⁷ 이들 기도나 사이고의 '정한'은 어려운 내정을 '정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실정 전가(轉嫁)형 정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일본 외무성의 '정한' 계획

외무성에서는 '국권신장주의자(國權伸張主義者)'로 알려진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정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때로는 이타가키 등의 '정한' 전략회의에 참가하기도 하는¹⁸ 등 '정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드디어 독자적인 '정한' 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소에지마가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H. S. Parkes)에게 말한 '정한' 구상은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절반은 청국 국경에 가까운 북서부에,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북동부에 상륙시켜 조선 측의 퇴로를 차단한다, 상륙 지점에 각각 1만 명의 병력을 잔류시키고 청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다, 나머지 주력 부대를 두 방향에서 남하시켜 열흘 안에 조선을 정복한다는 것이었다.¹⁹ 그는 북방에서 진격하는 이유에 대해 임진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남쪽에서 진격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이 북쪽으로도망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에지마는 위의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 서북

에 일본부(日本府)를 세운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부정(不庭), 즉 천황에 대한 조공이 없다.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쇄신하고, 일본이 한국에 은혜와 위협을 병행하여 잘 통어하면 몇 년 후 조선은 일본의 '외부(外府)'처럼 될 것이다. 『大日本外交文書』 제1권 제1책, 288항, 658-666쪽.

17 荒川九寿男, 1974, 「明治初年における木戸孝允の征韓論」, 『皇学館大学紀要』 12号, 237-238쪽, 기도는 1869년 각 지방 태수들의 판적봉환이 이루어지고 중앙집권체제가 거의 확립되자 '정한'에 소극적으로 되었다.

18 鹿児島県教育会編, 1936, 앞의 책, 1017쪽.

19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168, No.91, 1873.11.3(日本国会図書館 마이크로필름 소장); 宮地正人, 2012, 『幕末維新変革史』 下巻, 岩波書店, 299-300쪽.

부에는 군함의 입항이 가능한 항만이 있지만 동북부에는 그럴 만한 항만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러시아 항구에 상륙해서 조선으로 남하하는 작전을 모색하고 주일 러시아 공사 부초프(E. Butzov)와 협상에 들어갔다. 소에지마는 일본이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영유하는 쿠릴 열도의 일부 섬들을 일본에 양도할 것,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는 중립을 지킬 것, 일본군이 러시아 연안에 상륙해 조선으로 남하하는 것 등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²⁰ 소에지마의 제안에 대해 부초프는 일본군이 러시아를 통행하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를 인정하면 러시아의 중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외무성의 ‘정한’ 구상에서 조선 동북부의 항만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소에지마가 ‘정한’을 열심히 도모한 이유는 그의 동방정책에 있다. 그는 정부에 제출한 건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러시아의 남침(南侵)이다. 그런데 청국은 힘이 미약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 임무는 일본이 맡아야 한다. 일본은 북방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하에 뒤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한편, 남방에서는 타이완을 공략해 일본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타이완이 외국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세력을 청국에 확장시킬 것이며 일본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타이완 해역을 일본 세력 범위에 넣고, 또 조선을 일본의 권력하에 두고 반월형으로 청국을 감싸 동양을 제패하고 러시아의 내침을 방위해야 된다.²¹ 이처럼 소에지마의 ‘정한’의 주목적은 동양을 제패하기 위한 것이며, 그의 ‘정한’론은 ‘제국주의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한’론 정면

1873년 5월(음) 동래부는 다이슈 상인으로 위장한 일본 상인들을 고발했

20 靛龍馬, 2018, 「外務卿副島種臣と日露領土交渉」, 『國際政治』 191号, 25쪽.

21 煙山專太郎, 1907, 앞의 책, 196쪽.

다. 이들 일본 상인은 예전부터 다이슈 무역서(貿易署)와 거래하던 '미쓰이 오복점(三井吳服店)' 계열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吳服店)'의 종업원 3명이었다. 미쓰이는 '육군성 무고사(陸軍省武庫司)'와 거래하는 대상인이었는데 폐번치현과 외무성의 왜관 점수로 인해 다이슈 무역서가 폐지되어 소가죽 등 수입품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미쓰이는 외무성의 알선으로 '무역의 실상'을 시험하기 위해 다이슈 상인으로 위장하여 부산 왜관을 거점으로 장사를 시작했다.²² 동래부는 다이슈 외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단속을 엄격하게 하라는 전갈을 왜관 수문장에게 보내고 수문 안에 게시했다. 이 게시 글에는 일본을 '무법지국(無法之國)'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인들이 망착(妄錯)에 빠져 문제를 일으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²³

이 전갈 내용이 왜관에서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비등했다. 특히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재류자의 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고 다카모리는 전갈 내용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므로 먼저 조선 정부를 문책하는 사신을 파견하자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사신으로서 조선으로 가겠다고 제안했다.²⁴ 이에 대해 외무경 소에지마는 외교 교섭은 외무성의 역할이므로 자기가 사절로서 조선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고는 자신은 외무경처럼 능숙한 교섭은 못 하지만 조선에서 죽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고 사신을 사절로 파견할 것을 고집했다. 결국 내각회의는 사이고의 파견을 내결(內決)했다. 그러나 사절 파견은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미 각국을 방문 중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절단의 귀국을 기다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2 『朝鮮事務書』卷之十九, 明治 6年「1月 21日 森山茂へ往信」, JACAR Ref. B03030171800, 0037-0038.

23 『大日本外交文書』제6권, 119항, 282-283쪽.

24 多田好問, 1968, 『岩倉公実記』下卷, 原書房, 49쪽.

사이고가 사절로 파견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육군대장을 겸하는 사이고가 간다면 이는 일본 정부의 사절이라기보다 천황의 사절, 즉 ‘황사(皇使)’가 된다. 황사는 소기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사과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또 사이고 자신도 일찍이 에도(江戸) 막부 타도를 위해 활약하던 시절부터 존황(尊皇)의 의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절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사이고가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조선 측이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정한’론이 터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고의 파견은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이고, 이타가키 등은 조선과의 전쟁에 대비해 구체적인 ‘정한’ 전략을 세웠다. 이 내용은 ① 사이고가 참의 겸 육군대장의 자격으로 공식 사절로서 조선에 건너가는 동안 이타가키와 이지치는 육해군을 이끌고 규슈(九州) 이키섬(壹岐島) 가자모토(風本)²⁵에서 대기하고, 만약 사이고의 담판이 결렬되면 즉시 조선으로 출병한다, ② 조선 상륙작전에는 군함 아즈마(東), 류조(龍驤), 닛신(日進), 운요 등 14척과 수송선 3척 및 외국에서 빌린 수송선을 사용한다, ③ 동원 병력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약 4만 명으로 한다, ④ 진격 작전은 <그림 1>처럼 한다는 것이었다.²⁶

한편,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3년 9월 귀국했다. 곧 유수정부가 내결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절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구미 각국의 발달된 문화와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일본의 후진성을 통감한 그들은 일본은 세계의 발전 단계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무라는 신념을 가졌으며 조선과 전쟁 가능성이 높은 사이고의 파견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25 가자모토는 신화에서 진구(神功)황후가 ‘신라 정벌’ 때 출항한 항구이며, 그녀가 개선해 귀향했을 때 가쓰모토(勝本)라고 개칭했다는 전설이 있다.

26 諸星秀俊, 2009, 앞의 글, 56-57쪽.

이는 예전에 '정한' 계획을 세웠던 참의(參議) 기도 다카요시도²⁷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의 뜻대로 관적봉환, 폐번치현이 성사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자 '정한'은 근대국가 건설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맹렬히 반대했다. 또한 기도의 '정한'론에 찬동하지 않았던 이와쿠라 및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도 물론 사이고의 '정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와 같이 이와쿠라 사절단 참가자들은 거의 내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한'을 주장하는 참의들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타협안으로 사절 파견의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사이고의 강한 반대로 타협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이고는 앞의 내결대로 사절 파견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결해 국우(國友)에 사과하겠다고 산조에게 통고했다.²⁸ 만약 사이고가 자결한다면 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었다. 경악한 산조는 부득이 사절 파견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내각이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 와중에 산조는 심통으로 인해 발병해 직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대신 이와쿠라가 태정대신을 대행했다. 이와쿠라는 산조가 결정한 사절의 즉시 파견안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파견 연기안 두 가지를 천황에게 상신했다. 천황은 파견 연기를 명했으며 사이고 등 '정한' 강경파는 정쟁에서 패배했다. 그 결과 사이고, 소에지마 등 참의 5명이 사임하고 소위 이와쿠라·오쿠보 내각이 탄생했다. 새 외무경에는 데라시마 무네노리가 임명되었다.

27 기도의 '정한' 계획은 병력으로 부산항을 개항시키는 것이며, 만약 전투가 시작되면 수년간에 걸쳐 꾸준히 침공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木戸公傳記編纂所, 1930, 『木戸孝允文書第3』, 日本史籍協會, 233쪽; 荒川九寿男, 1974, 앞의 글, 220-221쪽.

28 高橋秀直, 1992, 『征韓論政變と朝鮮政策』, 『史林』 75卷 2号, 93쪽.

Ⅲ. 고종의 친정과 일본의 ‘정한’ 준비

1.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의 ‘정한’론

1873년 고종의 친정 체제가 확립되어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점차 권력을 장악했다. 1874년 조선 정부는 대원군과 가까운 동래부사, 훈도 등을 파직하고 일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했다.

일본 정부는 부산의 왜관으로부터 ‘조선 국론 일변’이라는 보고를 받고, 5월 15일 모리아마 시게루에게 조선의 ‘사정 탐색’을 명했다.²⁹ 모리아마는 왜관에서 조선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정 탐사의 범위를 넘어 조선 측과 회담을 갖게 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모리아마는 10월까지 협상을 계속한 결과, 앞으로 50일 안에 일본 외무경의 예조판서 앞 서계 등을 가져올 것 등을 합의했다.³⁰

일본으로 귀국한 모리아마는 영국 공사 파크스와 면담해 조선 문제를 논의했다. 모리아마는 자신을 미국 제독 페리(M. C. Perry)에 비유했다. 페리는 군함 4척을 이끌고 포함외교로 미일 협상을 시작하고 1년 후 일본을 개국 시켰다. 일본은 그를 근대화 길의 연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모리아마는 그런 페리를 본받아 조선을 개국시키려면 포함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일찍이 포함외교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막부(幕府)는 천황의 신하로서 외국과 교제해 왔으나,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일 등을 바로잡아 황사를 [조선으로] 파견해 설복하고, 서로 구원한다는 지성(至誠)을 보이고,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문명의 힘과 무위를 협동시키고, 서로 협력하여 만국과 대적할 것을 설득한다고 짐스러운 그들이라도 겁사리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력의

29 『大日本外交文書』 제7권, 208항, 361쪽.

30 위의 책, 218항, 414쪽.

도움이 필요하다. 천황의 조서(詔書)를 만드는 사자가 군함 몇 척을 거느리고 부산 왜관에서 동래부로 들어가 사자가 한성에 갈 뜻을 전하고, 평화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고, 병력으로 일본의 위엄을 보여 주고, 관례에 따라 한성으로 갈 것을 알린다. 열흘 후 사자가 강화에서 한성으로 들어간다. 만약 조선이 우리의 예서(禮序)를 거부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자를 모독하고 병사들을 움직인다면 명분은 우리에게 있으니 군대를 진격시켜 단숨에 정복한다. 청국은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³¹

모리아마의 '정한'론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선을 개국시켜 일본이 주도하여 서양 열강국가들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모리아마가 생각하는 조선을 단숨에 정복하는 방도는 그가 1875년에 파크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육군 2만 명을 조선 북부에 상륙시켜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간섭에 대비해 북부에 남기고, 나머지 본대는 수도를 향해 남진하여 산악지대로 도망가려는 국왕을 잡는다는 것이었다.³² 이 방도는 전 외무경 소에지마의 전술을 이어받은 것이며 병사의 수만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모리아마는 소에지마의 '정한' 전략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 계획의 약점인 조선 동북부의 항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의 '정한' 준비와 조선 정탐

세와키는 모리아마나 소에지마 등의 '정한'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875년 1월 외무경 데라시마에게 보낸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을 현지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세를 보면 러시아는 조선을 건들기 시작하고 서양 각국은 지나(支

31 『大日本外交文書』 제3권, 88항, 140-142쪽.

32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190, Parkes' No.33, 22 Feb 1875; 宮地正人, 2012, 앞의 글, 297쪽.

那)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빨리 결정해서 지나 동북 성경(盛京)에서 조선 남안 큐에루포루토(Quelpart, 제주도) 제도(諸島) 및 조선 동북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초산(두만강 남쪽) 지방에 사람을 보내 지형, 인물, 산물을 비롯해서 유럽·러시아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탐색하게 하는 한편, 해상에는 군함을 파견하고 위 지역의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고 압초 등을 조사할 것을 바랍니다.³³

세와키가 말하는 성경은 그가 1862년에 데즈카 리쓰조(手塚律藏)라는 개명 전 이름으로 번역한 『콜튼 씨 만국도지(格尔屯氏 萬國圖誌)』³⁴에 부속된 지도 <콜튼 씨 지나지도(格尔屯氏 支那地圖)>(그림 2)를 보면, 랴오둥(遼東)반도 및 랴오둥만을 포함한 현재 랴오닝(遼寧)성 전체를 말한다. 그는 조선에 인접한 성경에서 조선 서해안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 동북부에 군함이나 사람을 보내 수로나 지형 등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러시아의 극동 진출에 있다. 그는 위의 서장에서 러시아는 베이징(北京)조약에 따라 연해주를 얻은 다음 조선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로 두만강을 건너오는 조선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진출에 따른 폐해가 일본에 미치기 전에 조선을 일본 측에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책으로 조선과의 친화를 도모해 일본이 교화를 실시하고 기술을 전수하면 조선은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러시아의 위협을 잘 설명하면 조선이 일본 측에 서게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며 이런 책략을 실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³⁵ 세와키는 이 책략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군사적 해결도 고려하고 군함 파견에 대비해 수로 조사도 제안했던 것이다.

33 寺島宗則研究会, 1987,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卷, 示人社, 564쪽.

34 手塚律藏·佐波銀治郎, 1862, 『格尔屯氏 萬國圖誌』, 복각판은, 鈴木忠, 1991, 『佐波銀治郎の生涯』, 佐倉歴史顕彰会. 원본은, Colton, G. W., 1855, Colton's Atlas of the World Illustrating Physical and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35 寺島宗則研究会, 1987, 앞의 책, 564쪽.



〈그림 2〉 세와키가 번역한 〈골튼 씨 지나지도(格爾屯氏支那地圖)〉(일부)

세와키는 “러시아의 폐해가 일본에 미치지 전에”라고 썼는데 러시아의 폐해가 이미 일본에 미쳤던 일이 있었다. 남하정책을 실시하던 러시아는 1861년 다이슈 서해안 중앙에 있는 이모사키(芋崎)를 점거해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과 영국이 몹시 반발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6개월 후 퇴거했다.

세와키의 제안에 대해 외무경 데라시마는 조선 동북부의 조사를 인정하고 태정대신 산조에게 문의서 「포시에트 탐지를 위해 외무성 관원 두어 명을 파출할 것에 관한 문의」를 제출했다. 이 내용은 “러시아국 포시에트는 조

선국에 인접하여 그곳의 상황을 가장 잘 탐지할 수 있으므로 그곳의 탐지, 조사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관원 두어 명을 포시예트에 파견하는 일을 문의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문의서의 제목이 ‘포시예트 탐지’이므로 조사는 조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관심 등도 조사 대상일 것이다.

외무성의 문의에 대해 태정관은 3월 31일, “공무로 청국에 파견할 것,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 히사토”³⁶라는 사령을 보냈다. 이처럼 태정관은 제목을 청국 파견으로 바꾸었으므로 ‘포시예트 탐지’라는 명목이 사라졌다. 이는 포시예트 탐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시예트 탐지는 주목적 이 아님을 의미한다. ‘청국 파견’이라는 사령장을 받은 세와키는 「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제출했다.

이번에 청국 근항(近港) 시찰 명령을 받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명심할 것

- ① 각 항구의 형태, 축항(築港) 착수의 순서를 조사할 것
- ② 무역상황, 당지(當地) 산물, 수출입의 다과, 매해 산물의 증가 여부를 조사할 것
- ③ 각 항구 일반인의 풍습, 토지의 험저(險阻), 인구의 정도, 기후의 한난, 상선(商船)의 다과 및 교법(教法)을 정탐할 것
- ④ 조선 동북부의 러시아 영토에 근접한 지방에 들어갈 때는 양항(良港)을 검출할 것
- ⑤ 포시예트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아 토착인을 고용하여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토지, 풍속 등을 탐색할 것
- ⑥ 포시예트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포시예트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진대(鎭臺) 총독을 개인적으로 면회하여 청원할 것
- ⑦ 그곳 토착인과 조선인을 고용하여 길을 인도하게 하고 사정을 정탐할 것³⁷

36 『太政官日誌』 明治 八年 三月 三十一日.

37 一、外務省七等出仕瀨脇寿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国領「ポシエット」へ派出ノ件 自明治八年/

이를 보면 세와키의 첫째 임무는 축항에 착수할 순서를 조사하는 것인데 '축항 착수'에서 어느 나라의 축항을 말하는지가 모호하다. 청국은 이 근처에 바다가 없다. 세와키의 당초 목적은 조선 정탐이며, 또 위 「훈령」안의 문맥이나, 이 문서에 첨부된 후술하는 쪽지에서 짐작하면, 축항은 조선에서의 축항을 가리킬 것이다. 이 「훈령」안은 외무성 공신국(公信局)에서 수정안이 작성되는 등 여러 사람이 수정을 가했는데 최종적인 외무성의 「훈령」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며 수정된 원고만 볼 수 있다. 이 원고에는 외무대보의 도장도 찍혀 있으므로 이것이 최종 문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 원고에서 세와키의 「훈령」안은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되었다.

- ① 각 항구의 형태 및 저쪽(彼ノ方) 개항(開港) 착수의 모양새를 탐지할 것 [전면 수정됨]
- ②, ③ [거의 변함이 없음]
- ④ 조선 동북부의 러시아 영토에 근접한 지방에서 양항 유무의 일 [마지막 부분 수정]
- ⑤ [모두 삭제]
- ⑥ 블라디보스토크 및 포시예트에서 소요(所要)사건이 있을 때는 그 지방 러시아 국에 체류하고 있는 진대 총독에게 면회를 요청하여 의뢰할 것 [전면 수정]
- ⑦ 그곳의 토착인과 조선인을 상황에 따라 고용하여 길을 인도하게 하고 사정을 정탐해도 무방하다 [‘상황에 따라’, ‘무방하다’가 추가됨]

이처럼 세와키의 임무 제①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원고에 붙인 쪽지에 “타국 영지에서 우리들이 항구를 건설할 리가 없

分割1, JACAR, Ref. B16080698600-0346; 구양근은 아래 논문에서 이 문서를 '일본 외무성의 출장명령서'로 보았는데 이는 세와키가 작성한 '훈령'안으로 보아야 한다. 구양근,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213쪽.

다. 축항 착수 순서란 무슨 일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글 옆에 ‘太一’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이는 4등 출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가 쓴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는 구 막부에서 외국 관계를 담당한 이색적인 관리이다. 그는 일본이 타국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를 세와키가 하겠다는 계획을 부인했다. 이 ‘타국’을 러시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국’은 조선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세와키 등은 조선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를 계획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제④항을 보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들어가 좋은 항구를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서 좋은 항구를 찾아 거기에 군함이 착안할 만한 항구의 건설에 착수할 순서를 조사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전 외무경 소에지마의 과제였던 조선 동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는 방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나베는 그런 계획을 부인하고 대신 ‘저쪽 개항 착수의 모양새’를 탐지할 것을 세와키의 임무로 생각했다. 이 ‘저쪽 개항’이란 조선의 개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나베는 장차 조선이 개항할 때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무경 데라시마도 조선의 항구에 대해 무언가 구상하고 있었던 상황은 앞의 하나부사가 데라시마에게 보냈던 다음 서장에서 알 수 있다.

이번에 조선으로 파견되는 세와키 씨가 혹시 라자레프[영총]만을 잘 탐지해 오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조(訓條)에는 이름이 없지만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이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tactic[전술]’이나 ‘topography[지형학]’ 등 조금이라도 이는 군관을 동반하

38 1874년 3월 당시 외무성의 서열과 인원은 『外務省職員一覽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외무경 寺島宗則, 大輔 공석, 少輔 山口尚芳·上野景範, 大丞 森有禮·宮本小一·花房義質·鹽田三郎, 四等出仕 田邊太一, 少丞 鄭永寧 등 4명, 五等出仕 中山信彬, 六等出仕 伊地知貞馨 등 4명, 七等出仕 瀨脇壽人·森山茂·広津弘信 등 5명, 大録 이하는 생략. JACAR Ref. A09054282000.

면 어떤가요?³⁹

이 서장을 게재한 『테라시마 무네노리 자료집』은 서장의 연도를 1872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의문이다. 테라시마가 세와키에게 ‘훈조’를 내린 시기는 1875년 4월이므로 하나부사의 서장도 이즈음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⁴⁰ 하나부사는 영흥만을 군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즈음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1875년 2월 일본 해군 수로부가 영국이나 러시아의 지도를 바탕으로 앞의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해 영흥만의 해도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흥만을 하나부사나 테라시마 등은 군사적으로 중시해 장차 개항지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875년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 동해안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와키는 1875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그 사이의 행보를 일기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지(烏刺細廸斯杜屈見聞雜誌)』⁴¹에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세와키는 조선 북부에는 잠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록에 그의 첫째 임무인 ‘축항 착수의 순서’ 혹은 ‘저쪽 개항 착수의 모양새’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대신 세와키는 조선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김인승(金麟昇)에게서 얻었다. 김인승은 함경도 경흥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러시아의 이민 모집에 응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하고 러시아 국적을 얻었으며, 당시는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세와키는 김인승을 일본으로 데리고 돌아와 외무성에서 고용했다. 세와

39 寺島宗則研究会, 1987, 앞의 책, 613쪽.

40 『寺島宗則關係資料集』이 메이지 5년(1872년)으로 소개한 하나부사의 서장의 내용은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연도가 다른 3통의 서장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사항은 테라시마가 런던으로 출발하기 직전이므로 이것은 1872년의 사항이다. 다음 세와키에 관한 사항은 본문에 쓴 것처럼 1875년이다. 마지막 사항은 “혹시 지금 갑자기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라자레프와 부산, 강화도의 항구 하나를 열리게 함으로써 끝날 것이다”라고 썼으므로 이는 분명히 1872년이 아니며, 조·일 수호 조약을 체결한 1876년 전후의 일이다.

41 一,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ポシエツト」へ派出ノ件 自明治八年/分冊2, JACAR Ref. B16080698700.

키는 김인승에게서 청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야시 신조(林深造)와 함께 1876년 4월 『계림사략(鷄林事略)』을 간행했다. 제1권은 조선의 지지, 사회, 정치체제 등을 기록했다. 제2권은 군사 관계를 기록했다. 목차는 병제(兵制), 시취(試取), 병선(兵船), 성보(城堡), 군기·군장(軍器·軍裝), 경급(警急), 봉수(烽燧), 연병(鍊兵), 시위입직행순부성문개폐(侍衛入直行巡附城門開閉), 부신(符信), 병적(兵籍), 면역(免役), 구휼·급가(救恤·給暇), 유방(留防), 포핍(褒貶), 군형(軍刑), 역마구목(驛馬廐牧)이다. 제2권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때 필요한 군사정보를 거의 망라했다. 조선의 군사 기밀 등을 상세히 밝힌 이 책은 일본 정부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로써 세와키는 ‘조선 정탐’이라는 소임을 충분히 완수했던 것이다.

3. 일본의 포함외교와 이노우네 요시카(井上良馨)의 도발

조선과의 국교 교섭을 위해 이사관으로 임명된 외무소승 모리아마 시게루는 1875년 2월 외무경 데라시마 무넨오리 등의 서계를 가지고 조선 측이 싫어하는 기선을 타고 부산 왜관에 들어갔다. 이때 그는 군함을 이끄는 소위 포함외교를 원했는데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왜관에서 훈도 현석운(玄昔運) 등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계 원본이 일본어로 쓰여 있고 외무성 도장이 찍힌 데다 ‘황상(皇上)’ 등의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조선 정부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즉 일본 사신을 위로하는 연향을 베풀고 그때 서계를 보고 격식을 어긴 곳이 있다면 사리에 의거해 물리치고, 만약 일본 측이 서계를 모두 개수해 바친다면 즉시 받아들여 이기로 하였다.⁴²

이에 대해 모리아마는 연향 시 서양식 대례복(大禮服)을 입고 연향 대청 정문에서 들어가겠다고 주장해 문제가 생겼다. 조선 측은 전례가 없다고 하여

42 『일성록』 고종 을해년(1875) 2월 5일(음조);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 365쪽.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판단한 모리아마는 부관 히로쓰 히로노부(広津弘信)를 귀국시켰다. 4월 말 히로쓰는 이 사태를 외무경에게 보고하고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히로쓰는 요청서에, “지금 군함 1~2척을 보내 다이슈와 조선 사이를 왕복·출몰하면서 해로를 측량한다. … 미리 그 바다를 측량하는 것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썼다.⁴³

이에 대해 외무경 데라시마는 소극적이었으나, 해군대보가와무라(河村, 개명 후는 川村) 스미요시(純義)가 적극적으로 나서 태정관에 「북해 서해 측량 문의서(北海西海測量問書)」를 4월 27일 제출했다.⁴⁴ 그가 말하는 북해는 동해이며, 서해는 황해이다. 해군은 조선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의 측량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 문의를 허가되어, 5월 4일 해군성은 태정대신에게 군함 운요함과 다이니테이보(第二丁卯)함을 쓰시마노구니(對馬國)에서 조선국 해로 연구를 위해 회항시킬 것을 신고했다.⁴⁵ 운요함 함장 이노우에는 예전부터 갈망하던 조선행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져 크게 기뻐했다. 다이니테이보함은 같은 해 4월 13일 측량함으로서 수로료(水路寮)로 인도되었던 측량 전용함이다.

출항 명령을 받은 운요함은 5월 10일 도쿄 시나가와(品川)를 출발했고, 다이니테이보함은 5월 16일 나가사키(長崎)를 출항했다.⁴⁶ 이들은 다이슈 항구와 수로를 조사한 후 운요함은 5월 25일, 제2데이보함은 6월 12일 부산에 도착했다. 운요함에는 측량 담당으로 소위(少尉) 다치미 겐(立見研)이 승선했으며, 다이니테이보함에는 수로료 11등 출사 관리가 1명, 15등 출사 관리가 2명 승선했다.⁴⁷

43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71-72쪽.

44 『朝鮮理事誌』(正本)/2 自明治八年二月 至同年十一月四日, JACAR Ref. B03030132600-0180.

45 『公文録』 明治八年五月, 第五十一卷, 「海軍省伺(布達)」, JACAR Ref. A01100106200.

46 海軍省, 「記録材料・海軍省報告書第一」, 「海軍省報告書」第一, 自明治元年9月 至同9年6月 JACAR Ref. A07062089000, 64-65/133 고마.

47 外務省, 『朝鮮理事誌』(正本)/3, JACAR Ref. B030301327000-0213~0221.

운요함에 탄 다치미 등은 나가사키 현 가라쓰(唐津)를 출항한 5월 20일부터 부산을 출항한 6월 29일까지의 행동을 항행 일지「조선국 회항 잡지(朝鮮國回航雜誌)」⁴⁸에 상세히 기록했다.

일지에 따르면 운요함은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항과 주변 섬 등을 측량했다. 다만 이때 해군은 이미 조선의 해도를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측량은 바다의 깊이 등을 측정하는 정도였다. 또 그들은 절영도에서는 석탄을 채굴할 수 있다는 미확인 정보나 청수 확보의 관점 등에서 섬이 함선의 보급기지로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훗날 이노우에는 부산을 점령해 절영도에 석탄과 물 보급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이 지방은 일본 소유가 된다고 제안했다.⁴⁹ 이 말대로 훗날 보급소가 설치되었다.

그들은 부산에서는 조선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포격 연습 등을 마친 후, 운요함은 6월 19일 일단 부산항을 떠나 10일간 영흥만과 영일만을 측량했다.⁵⁰ 이 항행은 앞의 「조선국 회항 잡지」에 기록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이 사관 모리아마 시게루가 6월 29일 입항한 운요함 이노우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6월 29일] 운요함이 [부산으로] 돌아왔다. 함장 이노우에 소좌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함경도 영흥에 약 3일 동안 머물렀다. 이 항만의 깊이를 측량했다. 이 땅은 북쪽에 있는 좋은 항만이며 이곳으로 유입하는 대하(大河)가 6조 있다. 어느 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3리[12km] 거슬러 올라가 [깊이를] 측정해 보니, 작은 증기선은 들어갈 수 있다. 양쪽 강가에는 싸리, 갈대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평지가 많다. 항만에는 소도가 하나 있다. 제염소가 여러 곳에 있다. 바닷가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도착인은 매우 질박하며 이익으로 유인하면 쉽게 따를 것 같다. ... 돌아가는 길에 영일만에 들어갔다. 이는

48 「明八 孟春 雲揚 朝鮮廻航記事」(防衛省防衛研究所所藏)에 수록됨. 이 자료의 해제는 鈴木淳, 2002,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学雑誌』 111권 2호, 68쪽 참조.

49 藤田定市 편, 1930, 『海軍逸話集』, 有終会, 14쪽.

50 金光男, 2007, 「雲揚号事件をめぐる一考察」,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 43호, 38-39쪽.

좋은 항구라고 말할 수 없으나 동북 방면에 있는 항구 가운데 하나이다. 지형은 평탄하고 아주 좋은 옥토이다. 인가도 많다. 경주 현령(縣令)은 우리 군함의 입항을 확인하자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린 차관을 파견해서 방문 이유를 물었다. … 그 병사들이 지닌 장비를 보니 일본의 낡은 총과 죽창 같은 것이어서 실로 웃음이 난다.⁵¹

이처럼 운요함의 동해 탐사는 영흥만의 깊이를 측정하고 이곳으로 유입하는 강은 군함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 등을 조사했다. 영일만에서 이노우에가 만난 '경주 현령'은 영일현감 김명구이다.⁵² 그가 강을 거슬러 올라온 작은 배 선원들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물었더니, 일본인들은 대일본제국 도쿄에서 왔는데 물, 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답했다. 그런데 작은 배는 관리들과의 문답이 끝나자 아무 것도 보급하지 않고 돌아갔다.⁵³ 일본인들이 말하는 물 등의 보급은 구실이였다. 이 구실은 불법 침입을 감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게끔 모리아마는 조선 측과의 협상에서, “작년 가을과 올해 봄 국기의 도판을 제공하면서 만약 지나(支那)해를 왕래하는 [일본] 함선이 풍파나 물, 쌀 때문에 해변에 들릴 일이 있다면 잘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했더니 그들도 양해했다”⁵⁴고 한다.

다시 부산항에 입항한 이노우에는 모리아마로부터 조선과의 국교교섭이 모리아마의 대례복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보고를 위해 도쿄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이노우에는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가고시마(鹿兒島)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리아마는 “자기가 보내는 사람이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노우에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겠다고 약

51 外務省, 『朝鮮理事誌』(正本)/3 明治八年二月 至同年十一月四日, JACAR Ref. B03030132700-0224.

52 박한민, 2022, 앞의 글, 19쪽.

53 앞의 자료 『朝鮮國回航雜誌』; 金光男, 2007, 앞의 글, 39쪽.

54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3항, 123쪽.

속해 다이니테이보함에도 말하지 않고 부산을 떠나 우선 나가사키로 갔다.⁵⁵ 나가사키에 도착한 이노우에는 곧 함대지휘관 이토 스케마로(伊東祐磨)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정한’론을 주장했다.

오호 이 나라(조선)가 반복(反覆) 무신(無信)하여 실례한 일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금까지 누차 우리 국사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에는 우리의 복제 변혁에 참견하여 말이 비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교제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즉 아국을 배척하는 이치다.

이 같은 실례의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는 우리의 국위가 서지 않는다. 국위가 서지 않으면 타국의 모만(侮謾)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를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해서 생각하니, 이 나라는 수백 년 이래 개화(開化)하지 않은 습속으로 실로 완우(頑愚)하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지고 책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오직 병력으로써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나라는 우리 나라에 있어 요용(要用)의 땅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같이 비례를 행할 때 결국 반드시 다른 나라가 이를 공격할 것이다. 타국이 이 나라를 공격할 때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들의 소유가 됨은 필연이다. 이 나라가 만약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될 때는 우리 나라가 다시 머리를 들 때가 없다. 오직 고심(苦心)에 그칠 뿐이다. 장차 이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하면 더욱 나라의 기초를 강하게 하여 세계로 웅비하는 사다리가 된다. 오호 나라의 강약이 이 일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이를 칠 명분이 충분하다. 실로 좋은 기회이다. 또 이즈음 국내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기타 내환이 있다(상세한 것은 별지에 있음).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내리신 그때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믿는다. …

부디 이런 호기회를 깊이 통찰하여 꼭 빨리 출병이 있기를 희망한다.⁵⁶

55 藤田定市 편, 1930, 앞의 책, 9쪽.

56 「明八 孟春 雲揚 朝鮮廻航記事」(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 鈴木淳, 2002, 앞의 글, 71쪽; 김흥수, 2022, 『은

이처럼 '정환'의 실시를 호소한 이노우에는 훗날 진술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가고시마로 가서 탄약과 화약 등을 가득 실었다. 그때 그는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더니 모두들 열심히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나가사키로 갔더니 웬일인지 이노우에에게 북쪽 홋카이도(北海道)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이노우에는 고베(神戸)항에 가서 해군경과 직접 담판하고 결국 청국 잉커우(營口)로 항행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런 결정이 변하지 않도록 서둘러 나가사키에 가서 석탄을 만재하자마자 출항했다고 한다.⁵⁷

이노우에의 진술은 55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의 증언에는 사소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는 ‘해군경’이라고 말했으나 실은 해군대보이며, 당시 해군경은 공석이였다. 또 ‘잉커우’는 정확하게는 그 근처 있는 ‘뉴쵡(牛莊)’이며 당시 랴오둥반도에서 유일한 개항장이였다. 이 개항장은 훗날 잉커우로 옮겼다. 이노우에의 증언 중에서 그가 허가를 받아 가고시마까지 가서 어렵게 탄약을 싣고,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노우에는 모리아마로부터 프랑스 선박이 강화도 수역에서 조선 측에서 화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노우에는 요새로 되어 있는 강화도에서는 조선 측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맞서 포격전을 벌일 작정이었을 것이다. 즉 이노우에는 강화도에서의 도발을 도모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군이 그에게 갑자기 홋카이도로 가기를 명했던 것은 그토록 위험한 이노우에를 조선 문제에서 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해군대보 가와무라는 이노우에의 열정에 젖는지 결국은 조선으로 갈 것을 허가했다.⁵⁸ 해군대보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노우에는 곧 조선으로 출항했다. 이 결과 9월에 필연적으로 강화도에서 이노우에의 예상대

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동북아역사재단, 44-45쪽.

57 藤田定市 편, 1930, 앞의 책, 9-10쪽.

58 김흥수는 앞의 책 66쪽에서 가와무라는 이 자리에서 이노우에 함장에게 행동 지침을 전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강화도 사건이며 그는 포격전 끝에 조선 측 대포 등을 노획해 나가사키로 개선했다.

4.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정한’ 제언

일본 외무성에서는 국방의 관점에서 ‘정한’을 주장하는 관료도 있었다.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이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의 국경 확정 문제를 러시아 측과 협상 중이었는데, 사할린이나 연해주에 급속히 진출한 러시아에 위협을 느끼고 ‘정한’을 주장했다. 1875년 1월 에노모토는 데라시마에게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은 조선을 혼도하고, 일본과의 교의를 돈독히 하여 일본의 위덕을 조선에 감화시켜야 한다, 또 만약 러시아가 선행하여 쓰시마섬 건너편 조선 땅에 거점을 세운다면 일본의 해양 방어에 위협이 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모리아마를 조선에 파견한 것은 시의를 얻은 것이다, 만약 조선이 완고하게 일본과 교류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면 일이 일어났을 때 쓰시마섬 건너편에 일본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언했다.⁵⁹

이처럼 에노모토의 ‘정한’론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이 부산 부근에 교두보를 만들어 일본의 국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는 이노우에 요시카의 생각과 비슷하다. 다음 해 에노모토가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 1875년 9월 이노우에가 도발한 강화도 사건이다. 에노모토는 외무경 데라시마로부터 강화도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9월 20일 우리 군함이 조선의 수도 부근 해안을 측량했을 때 그쪽이 포격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의도를 물으려고 배를 진행시켰다. 다시 발포를 받아 드디어 교전이 벌어졌다. 우리 병사들은 상륙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철수해 돌아왔다.”⁶⁰

59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71항, 172-174쪽.

60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6항, 127-128쪽.

이에 대해 에노모토는 10월 10일 자 공신(公信)을 데라시마에게 보내고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쟁의 원인(casus belli)'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묘당이 결의한다면 신속히 전력을 다해 조선을 압력으로 굴복시키고 이쪽 조건(term)을 승낙시켜야 한다. 곧바로 출병해 쓰시마섬의 건너편에 있는 지방이나 섬을 점거하고 거기에 조선의 충신을 불러 최후통첩(ultimatum)을 전하는 것이 빠르다. 또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동해안의 영흥만도 점거해 조선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치우산⁶¹(부산)으로부터 러시아 포시예트만까지의 해안과 항만을 그린 도면은 지난해 푸차틴 씨가 측량한 도면을 입수했으므로 그의 기행문 번역과 함께 7일 안에 우편으로 보내겠다.⁶²

이처럼 에노모토는 곧바로 조선으로 진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네덜란드에서 만국공법을 배웠던 외교관이며, 『해률전서(海律全書)』라는 고본을 쓸 만큼 특히 바다의 만국공법을 숙지했던 자이다.⁶³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 측량을 한다는 것이 만국공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를 무시하고 조선 측의 포격을 개전의 명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만국공법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관료였다. 게다가 에노모토는 '정한'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서둘러 조선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서적을 번역했다. 그 서적은 프랑스 선교사 클로드 샤를 달레(Claude Charles Dallet)의 저서 『조선 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이다. 이 저서에서 '정한'에 유용한 부분을 공사관이 고용한 네덜란드인 의사에게 네덜란드어로 번역시키고 그것을 에노모토가 일본어로 번역했다. 1876년 1월 완성된 고본의 서문에 그는 “‘정한’ 건이 날이 갈수록 임박하고 양국에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

61 아래 논문 15쪽에 게재된 <그림 3> 콜튼의 <일본지도>에 있는 'P. Chusan'은 같은 논문 14쪽에 있는 세와키가 번역한 <그림 2> <일본지도>에 '釜山岬'라고 표기되었다. 박병섭, 2022,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독도연구』 33호, 14-15쪽.

62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6항, 128쪽.

63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207쪽.

다. 따라서 이 책은 유용하다. 부속 도면 등에서 조선 산천의 위치나 병영의 위치 등이 일목요연하므로 일본의 해륙 장교들에게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고본은 9월 『조선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⁶⁴ 이 저서와 앞서 소개한 세와키의 『계림사략』 등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도구로서 유용했다.

이 무렵 가모 기이치(加茂儀一)에 따르면, 에노모토는 러시아 정부가 조선의 원산을 조차(租借)하여 그곳에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려는 것을 탐지했기에 서둘러 서기관을 휴가로 귀국시켜 정부에 전했다고 한다.⁶⁵ 이즈음 일본 측은 포함외교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강화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권 대사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군함 6척을 이끌고 조선 측을 위협하면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은 개항지의 하나로 영흥만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천군 송전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그 근처에 태조 묘(廟)가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영흥부는 초가집 풍경이 적막한 곳이며 무역의 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기에 일본 측은 다른 지방도 일단 검토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견’에서 영흥만을 고집했다.⁶⁶ 그 소견이란 에노모토의 정보 등을 고려한 군사적 중요성일 것이다. 영흥만은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고,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 이 항구를 일본에 대한 개항지로 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으며 군사적 가치가 높다. 결국 조일 양국은 영흥만에서 태조 묘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을 개항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원산 조차라는 계획이 사라졌다. 이처럼 영흥만은 한때 조선 진출을 노리는 러일 양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였다.

64 榎本武揚 重譯, 1876, 『朝鮮事情』, 東洋社.

65 加茂儀一, 1988, 『榎本武揚』, 中公文庫, 490쪽.

66 『大日本外交文書』 제9권, 191항, 311쪽.

IV. 맺음말

에도(江戸)막부를 타도한 메이지 신정부는 봉건국가를 근대국가로 바꾸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신정부는 정부에 대한 큰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메이지 유신의 삼걸로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는 1868~1869년에, 육군대장 겸 참의인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2~1873년에 각각 '정한'을 주장했다. 그들의 '정한'론은 '실정전가형 정한'이다. 그런데 기도는 그의 뜻대로 일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거의 확립되자 '정한'에 소극적으로 되고, 드디어 사이고 등이 '정한'을 주장했을 때는 내치 우선을 주장해 맹렬히 반대했다.

사이고 등 군부가 1872년에 세운 '정한' 작전을 군사적으로 볼 때 이는 동해안이 약점이었다. 그들은 동해안에서 군함이 입항해 병사들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동해안에서의 작전을 누락시켰다. 따라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국왕은 동북부 산악지대로 피난할 수 있어서 이 작전은 만전이 아니었다.

이 결함을 중시한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는 독자적인 '정한' 구상을 생각했다. 원래 그는 동양 제패를 꿈꾸는 '국권신장주의자'이며 조선을 일본의 보호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소에지마의 '정한'론은 '제국주의형 정한'이다. 그의 '정한' 작전은 병사 5만 명이 조선 서북부와 동북부, 두 곳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청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막으면서 남하하여 조선 왕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은 동해안이며, 조선 동북부에 어떻게 병사들을 상륙시키느냐가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전에 소에지마는 사이고와 함께 '정한'론 정쟁에서 패배해 해야했다.

소에지마의 '제국주의형 정한'론은 외무성 내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를 계승한 자들이 세와키 히사토, 모리아마 시게루, 에노모토 다케아키 등이다. 이들은 러시아 등이 조선으로 진출하기 전에 조선을 일본의 세력하에 두어야 하며, 이를 평화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모리아마는 소에지마의 '정한' 전략도 계승해 '정한' 실행

시에에는 2만 군대를 조선의 동북부와 서북부에서 진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선 동북부에서의 군대 상륙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잠입하고 적당한 항구를 찾아 군함이 착안할 수 있는 항구로 만드는 절차 등을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 내 반대의견 때문에 그 조사만은 중지되었다. 세와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중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 김인승을 만나 그를 일본으로 데려가고 그로부터 충분한 조선의 군사정보를 얻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고종의 친정이 실현되었다. 외세 배척정책을 주도한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 정부는 유연한 대일정책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동래부사에게 부산에 파견된 일본 사자 모리아마 시게루를 위해 연향을 열고 일본 정부의 서계에 관해 협의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모리아마가 관례를 깨고 연향에 서양식 대례복으로 참석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졌다. 그러자 모리아마는 일본을 개국시킨 미국 페리 제독을 본받아 조선에 대한 포함외교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군함 2척이 파견되었는데 그중 1척은 운요이며 함장은 이노우에 요시카였다. 그는 노골적인 침략 사상을 가진 군인이었다. 이노우에는 부산 근처의 수로를 조사한 다음 특별히 영흥만을 골라 수로 조사를 했다. 일본 해군은 '정한' 실행 시 조선 동북부 항만 문제가 애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즈음 일본 해군은 영국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해도로서는 처음이 되는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고 있었으며 이 해도와 이노우에의 현지 조사에 의해 '정한' 실행 시 영흥만에 군함이 입항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로써 일본이 '정한'을 실행할 때 애로로 남았던 조선 동북부 항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영흥만 등의 수로 조사를 마친 이노우에는 부산에 돌아와 모리아마에게서 조일 협상이 대례복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이노우에는 복장 문제로 교제를 거절하는 조선의 실례를 간과하면 일본의 국위가 서지 않는다, 조선은 어리석은 나라이지만 일본에게는 유용한 나라이니 타국이 조선을 치기 전에 일본이 공격해야 한다고 군부에 진언했다. 또 그는 조선 서해안을 항행하고 사건을 일으킬 것을 모리아마에게 예언했

다. 그는 요새지 강화도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탄약을 가득 실었는데 이때도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예언했다. 해군은 이처럼 위험한 이노우에를 조선에서 멀리하려 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이노우에는 오히려 해군대보를 설득하고, 조선 남해, 서해안 수로를 조사하게 되었다. 드디어 강화도 수역에 침입한 결과 필연적으로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강화도 사건을 외무경의 전보로 알게 된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네덜란드에서 배운 만국공법을 응용하여 이 사건을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부산 근처를 점거하고 조선의 중신을 불러 ‘최후통첩’을 전할 것을 제언했다. 에노모토는 타국의 연안을 허가 없이 측량하는 것은 만국공법에서 불법임을 잘 알면서 만국공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게다가 에노모토는 조선을 압복하기 위해 육군이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동해안 영흥만도 점거해 조선을 교란할 것도 진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해안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에서 입수해 외무성에 보냈다. 또 프랑스 신부가 간행한 『조선 교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번역하고 그 고본을 ‘조선 사정’이라고 이름 지어 외무성에 보냈다. 일본 정부는 영흥만의 군사적 중요성을 다시 깊이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에노모토의 ‘정한’ 방책을 채용하지 않고 포함외교를 계속해 군함 6척을 강화도에 파견했다. 1876년 전권 대사 구로다 기요타카가 조선 측과 협상하고 조일수호조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은 조선의 세 개 개항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무렵 에노모토는 러시아 정부가 동해안 원산의 조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외무경에 전했다. 일본 측은 에노모토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영흥만의 개항을 고집했다. 조선 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원산을 개항지로 결정했다. 이곳은 경제적인 가치는 낮지만 군함 입항이 가능하며, 일본이 ‘정한’을 실행하게 되면 일본군의 중요한 상륙지가 된다. 또 원산이 일본에게 개방되면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처럼 원산항은 일본에게는 ‘정한’의 관점과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한다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항구이며, 1880년(고종 17, 明治 13) 일본에게 개항되었다.

참고문헌

- 구양근, 1998, 「블라디보스토크 건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 김홍수, 2013, 「1875년 朝日交渉의 실패 요인」, 『한일관계사연구』 45집.
-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 _____, 2022,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독도 연구』 33호.
- 박한민, 2022,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 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일성록』.
- 加茂儀一, 1988, 『榎本武揚』, 中公文庫.
- 広瀬為興, 1979, 「明治十年西南ノ戦役土佐拳兵計画ノ真相」, 『鹿児島県史料 西南戦争』 第三卷.
- 高橋秀直, 1992, 「征韓論政変と朝鮮政策」, 『史林』 75卷 2号.
『公文録』 明治八年五月, 第五十一卷.
- 宮地正人, 2012, 『幕末維新変革史』 下卷, 岩波書店.
- 金光男, 2007, 「雲揚号事件をめぐる一考察」,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 43号.
- 多田好問, 1968, 『岩倉公実記』 下卷, 原書房.
- 大西郷全集刊行会, 1927, 『大西郷全集』 第三卷, 平凡社.
- 藤田定市 編, 1930, 『海軍逸話集』, 有終会.
- 鈴木淳, 2002,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学雑誌』 111卷 12号.
- 鹿児島県教育会編, 『伊地知正治小伝』, 鹿児島県教育会.
- 木戸公傳記編纂所, 1930, 『木戸孝允文書第3』, 日本史籍協会.
- 寺島宗則研究会, 1987,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卷, 示人社.
- 小林茂, 2011, 『外邦図』, 中公新書.
- 手塚律蔵・佐波銀治郎, 1862, 『格尔屯氏 萬國圖誌』.
- 外務省, 1872, 『朝鮮事務書』, JACAR Ref B03030169600.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 _____, 1874, 『外務省職員一覽表』, JACAR Ref. A09054282000.
- _____, 1875, 『朝鮮理事誌』(正本)/3, JACAR Ref. B03030132700.
- _____, 1938, 『大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協會.
- 煙山專太郎, 1907, 『征韓論實相』, 早稻田大學出版部.
- 長正統, 1982, 「內閣文庫所藏「朝鮮國圖」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 『史淵』 119号.
-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
- 諸星秀俊, 2009, 「明治六年「征韓論」における軍事構想」, 『軍事史学』 177号.
- 醍醐龍馬, 2018, 「外務卿副島種臣と日露領土交渉」, 『國際政治』 191号.
- 佐田白茅, 1903, 『征韓論の舊夢談』, 사각본.
『太政官日誌』.
- 海軍省, 『海軍省報告書』 제一, 自明治元年9月 至同9年6月.
- 榎本武揚 重譯, 1876, 『朝鮮事情』, 東洋社.
-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日本国会図書館 마이크로필름 소장).
- Colton, G. W., 1855, *Colton's Atlas of the World Illustrating Physical and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국문초록

일본에서 ‘정한’론이 비등하기 전인 1872년 육군대장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정한’의 군사작전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는 실정으로 인한 내란의 발생을 ‘정한’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는 동방 제패의 일환으로 제국주의적 ‘정한’론을 주장하고 독자적인 ‘정한’ 전략을 세웠다. 이들 사이고와 소에지마의 전략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북부에서 군함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없기에 그 지방에 대한 군사 작전을 세울 수 없었다. 이 결함을 극복하기 전에 사이고, 소에지마 등 ‘정한’과 참의(參議)들은 정쟁에 패해 해야했다. 그러나 소에지마의 ‘정한’ 구상은 외무성 내에서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등에게 이어졌다.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잠입해 양항을 찾아 군항을 만드는 절차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외무성 내 반대로 그 조사만은 중지되었다.

한편, 모리아마는 미국의 페리 제독을 본받아 포함외교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파견된 운요(雲揚)함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부산과 동해안의 수로를 조사하고 영흥만에 군함이 입항할 수 있음을 실증하여 동북부 항만 문제를 해결했다. 게다가 그는 모리아마에게서 포함외교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듣자 사건을 일으킬 생각으로 운요함에 탄약을 가득 실은 후 조선 남해안·서해안의 수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노우에는 드디어 요새가 되어 있다고 들었던 강화도의 수로를 측량해 조선수비대와 포격전을 벌였다. 이 강화도 사건을 들은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사건을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일본이 부산을 점거해 최후통첩을 전해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영흥만에도 상륙하고 조선을 압복할 것을 진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로지 포함외교를 진행시켜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이즈음 에노모토는 러시아가 원산의 초차(租借)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외무경에 알렸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영흥만을 일본에 대한 개항지로 삼을 것을 고집하고 난색을 보인 조선 측에서 동의를 얻었다. 영흥만은 일본에게는 ‘정한’과 국제정치의 양

면에서 중요한 항만이었다.

〈주제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에노모토 다케아키
(榎本武揚), 군함 운요(雲揚), 포함외교, 영흥만

ABSTRACT

Japan's Plan for "Conquest of Korea" and the East Coast of Korea in the 1870s

Park, Byoung Sup

(Representative, Takeshima=Dokdo Research Net, Japan)

In 1872, before the theory of "conquest of Korea" boiled over in Japan, Army General Saigo Takamori was setting up a military operation for "conquest of Korea". He tried to prevent the outbreak of civil war caused by misgovernment through the "conquest of Korea". Meanwhile, Foreign Minister Taneomi Soejima, argued for an imperialist "conquest of Korea" theory as part of the conquest of the East and formulated his own "conquest of Korea" strategy. These strategies of Saigo and Soejima were flawed. They did not have information on ports where warships could land in northeastern Korea. Before this flaw could be overcome, Saigo, Soejima, and the other "conquest of Korea" sect were defeated in a political war. However, Soejima's ideas for "conquest of Korea" were passed on to Hisato Sewaki, Shigeru Moriyama, and others within the Foreign Ministry. Sewaki attempted to infiltrate northeastern Korea to find a suitable port and investigate the process of using it for military operations, but opposition within the Foreign Ministry prevented him from doing so.

Meanwhile, Moriyama attempted gunboat diplomacy following the example of Admiral Perry of the United States. Captain Yoshika Inoue, the commander of the Unyo warship, was dispatched for this purpose, surveyed the waterways around Busan and the east coast, revealed that warships could enter Yeongheung Bay, and resolved the northeastern port problem. In addition, upon hearing that gunboat diplomacy was not effective in Moriyama, Inoue loaded up with ammunition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an incident, and began investigating the waterways on the south and west coasts of Korea. Finally, he surveyed the waterways of Ganghwa Island, which he had heard was a fortress, and engaged in an artillery battle with the Korea defenders. Upon hearing of the Ganghwa Island incident, the Russian Minister, Takeaki Enomoto, regarded it as a "cause for war" and call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apture Busan, deliver an ultimatum, march to the capital, and land in Yeongheung Bay to disturb Korea.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only proceeded with its gunboat diplomacy and concluded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Around this time, Enomoto obtained information that Russia was planning to seize Wonsan and informed the Foreign Ministry.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on using Yeongheung Bay as an open port to deter Russian expansion, and obtained the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howed reluctance. Yeongheung Bay was an important place in the perspective of military operations for Japan both in terms of

“conquest of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Keywords

Taneomi Soejima, Yoshika Inoue, Takeaki Enomoto, warship Unyo, Gunboat
Diplomacy, Yeongheung Bay

日本語要約

1870年代、日本の「征韓」計画と東海岸

朴炳涉

(日本竹島, 独島問題研究ネット代表)

日本では「征韓」論が沸騰する前の1872年、陸軍大将西郷隆盛は「征韓」の軍事的な作戦まで立てていた。彼は失政による内乱の発生を「征韓」で防ごうとしたのである。また、外務卿副島種臣は東方を制覇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帝国主義的「征韓」を主張し、独自の「征韓」戦略を立てた。これら西郷や副島の戦略には欠陥があった。朝鮮東北部にて軍艦が着岸できる港湾を見つけられず、その地方の軍事作戦を立てられなかった。この欠陥を克服する前に西郷や副島ら「征韓」派参議は政争に敗れて下野した。しかし、副島の「征韓」構想は外務省内で瀬脇寿人や森山茂らに引き継がれた。瀬脇は朝鮮東北部に潜入して良港を探して軍港を作る手順などを調査しようとしたが、外務省内の反対でその調査だけは中止になった。

一方、森山はアメリカのペリー提督をまねて砲艦外交を試みた。そのために派遣された雲揚艦長井上良馨は、釜山や東海岸の水路を調査し、永興湾に軍艦が入港できることを実証し、東北部の港湾問題を解決した。また、彼は森山から砲艦外交の効果が無いことを聞かされ、事件を起こすつもりで雲揚に弾薬を満載した後、朝鮮南岸・西岸の水路を調査し始めた。ついに、要塞になっていると聞いていた江華島の測量をおこなった。朝鮮守備隊と砲撃戦になった。この江華島事件を聞いたロシア公使榎本武揚は、事件を「戦争の原因」と見なし、釜山を占拠して朝鮮に最後通牒を突きつけ、首都に進撃するとともに、東海岸の永興湾にも上陸して朝鮮を圧伏するよう進言した。しかし、日本政府は砲艦外交に徹し、

江華島條約を結んだ。このころ、榎本はロシアが元山の租借を計画しているという情報を得て外務卿へ知らせた。日本政府は、ロシアの南下を抑えるためにも永興湾を日本に対する開港地にすることにこだわり、難色を示した朝鮮側から同意を得た。永興湾は、日本にとって「征韓」と国際政治の両面から軍事的に重要な港湾であった。

キーワード

西郷隆盛、井上良馨、榎本武揚、軍艦雲揚、砲艦外交、永興湾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서론
- II. 1990년대 일본의 해양정책과 신한일어업협정
- III. 수산청과 시마네현·돗토리현의 인식과 쟁점
- IV.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의 정책적
연계
-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일본 국내 요인으로 어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를 고찰한다. 일본에서 해양영토와 관련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1994년 11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발효되자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일본은 1996년 7월 20일 ‘바다의 날’에 동 협약을 비준했으며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정책대강을 발표했다. 이어서 2008년 제1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영토보전 및 해양안보, 환경 등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명시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업뿐 아니라 해양자원과 해양안보, 환경 등 전 분야로 해양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일본 지자체에서는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다. 2005년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다케시마(竹島)¹의 날’ 조례안² 지자체의 요구가 제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일본 수산청과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 지자체의 논의를 분석한다. 1990년대는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해양영토와 어업권, 배타적 경제수역 등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났다.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른바 ‘관리하는 해양’을 향한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일본은 1997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관련하여 국내법을 정비했다. 1998년 한국과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 4월에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해양

* 논문 투고일: 2023.4.30, 심사 완료일: 2023.5.15, 게재 확정일: 2023.5.16.

1 이 글에서 ‘竹島’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다케시마’로 표기한다.

2 2005년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초당파 의원 35명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3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에서는 어업과 독도영유권, 해양영토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 이외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한 지자체와 일본 수산청의 인식과 쟁점을 검토한다. 일본 수산청은 독도 주변을 우량어장이라고 인식하며 일본의 어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위무성은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에서는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시마네현에서는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을 결부시켜 일본 정부가 조기에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돗토리현에서는 한일교류와 지자체 간 협력, 어업문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접근을 보였다. 또한 어업문제의 경우 지역구 의원, 어민, 어업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관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

일본의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관해 기존 연구는 주로 해양정책과 한일 관계,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해양정책에 관해서는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와 구리바야시 다다오(栗林忠男)의 『바다의 국제질서와 해양정책(海の國際秩序と海洋政策)』에서 195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유엔해양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해양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어업문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사료를 통해 분석했다. 김수희는 조선후기 시기와 어업, 어민에 관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수희는 주로 17세기 돗토리번을 중심으로 막부와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죽도도해금지령과 해상무역, 돗토리현의 조선어업 장려책에 대하여 분석했다.³ 박한민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에 관하여 보고서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⁴ 현대에 들어서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주로 한일 관계

3 김수희, 2020, 「일본 돗토리현(鳥取県)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독도」, 『인문연구』 제19권.

4 박한민, 2022, 「1880~1890년대 울릉도 물산을 둘러싼 분쟁과 조일 양국의 대응」, 『사학연구』 제148호.

와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조윤수는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일회담 교섭과정과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했다.⁵

최근에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시마네현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박창건은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한 고유영토 주장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⁶ 곽진오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⁷ 최장근은 ‘다케시마 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론 논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⁸ 도시환은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일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⁹ 서인원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경향을 분석했으며,¹⁰ 문상명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경위에 대해 일본의 의회 의사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¹¹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역사회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수산청과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의 인식과 대응에 주목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990년대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른 일본 해양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검토하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수산청과 지자체의 논의를 통해 신한

5 조윤수, 2011, 「한국 교섭 참석자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권.

6 박창건, 2019,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7권.

7 곽진오, 2012, 「시마네현(島根縣) 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연구』 통권13호.

8 최장근, 2014,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会’의 일본영토론 조작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44권.

9 도시환, 2020,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통권 29호.

10 서인원, 2021,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경향 분석-평화선 및 독도 어업 관련 연구에 대해서」, 『독도연구』 통권 30호.

11 문상명, 2019,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의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통권51호.

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수산청과 지자체의 인식을 밝힌다. 수산청에서 발표한 문서 자료와 시마네현·돗토리현의 입장문, 현의회 의사록을 통해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에 관한 논의를 쟁점별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해양영토와 어업문제 관련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 대응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로 지역사회와 민간 차원에서의 인식과 대응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일본의 해양영유권 강화와 어업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II. 1990년대 일본의 해양정책과 신한일어업협정

1.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해양기본법 성립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해양질서는 이른바 ‘자유로운 공해’에서 ‘관리되는 영해’로 인식이 변화했다.¹² 영해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내에서도 해양자원의 개발 및 해상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해양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 것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이다.¹³ 트루먼 선언으로 각국에서는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958년과 1960년, 1973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200해리 어업 수역 설정이 채택되었다.

일본의 해양정책은 전통적으로 ‘넓은 공해(広い公海)와 좁은 영해(狭い領海)’의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6년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발효하고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기존의 법제도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법률을 정비

12 '자유로운 바다'와 '관리되는 바다'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山本草二, 1992, 『海洋法』, 三省堂.

13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대통령이 보츠 수역과 대륙붕에 관해 최초로 권리를 주장한 선언이다.

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영해와 내수에 대해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켰다.¹⁴ 일본은 직선기선을 채택하여 영해와 내수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어업을 철저히 금지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어업수역 잠정조치법을 폐지하고 대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어업법)’을 제정했다.¹⁵ 동 법은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담보 금액을 내면 조기에 석방한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동경 135도 이서 해역을 포함하여 약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대해 어업, 수산, 동식물 채집 및 탐사에 대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정책을 강화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기본법은 일본의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해양기본법은 자민당과 민간 주도의 해양정책연구회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성립되었다.¹⁶

해양기본법의 성립은 일본의 해양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의미했다. 해양기본법은 전통과 새로운 바다의 가치 변화를 제시하고 해양자원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강조했다. 해양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산업, 해운, 조선 등을 통해 사회경제기반의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쓰나미 고조 등의 바다의 위협을 정비, 해양에너지, 광물 자원, 해양재생가능에너지, 심해생물자원, 해양레저 등의 새로운 바다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양기본법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력을 강조했다. 즉, “유엔해양법 협약과 국제약속에 기반하여 국제협

14 外国人漁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二年法律第六十号).

15 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權的權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平成八年法律第七十六号).

16 최은봉·석주희, 2010,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해양권익의 확대와 쟁점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 44호, 51쪽.

조를 바탕으로 해양의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개발 이용과 해양환경의 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해양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¹⁷

해양기본법 시행과 함께 일본에서는 내각관방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했다.¹⁸ 2007년 해양기본법과 함께 채택된 해양정책대강에는 해양에 관한 주요 시책을 제시했다.¹⁹ 해양정책대강에는 해양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정비와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해양정책 담당 대신 임명 등을 명시했다. 해양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해양에 관한 개발과 이용, 과학, 산업의 활용과 국제협력이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해양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양에 관한 종합적 관리와 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일본 정부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양영유권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통적인 분야인 어업에 대해서는 영유권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어민, 중앙정부 간 이견이 나타났다.

2.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둘러싼 일본 내 논의

1996년 5월 한일어업실무자협에서 새로운 한일 어업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실무자협에서 한국은 기존의 한일 간 어업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된 후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를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경계확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업문제는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유엔해양법조약을 국회에

17 海洋基本法(平成十九年法律第三十三号).

18 海洋政策本部, 「海洋政策大綱」(검색일: 2023.4.20).

19 해양정책대강의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 일본 해역의 관리 확립,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개발, ③ 해양 환경 보호 안전 및 재생 추진, ④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추진, ⑤ 일본의 경제 및 생활을 유지하는 해상 운송 확보, ⑥ 일본의 안전 보장과 해상의 안전 확보, ⑦ 국토 보전과 방재 대책 추진, ⑧ 연안역에 대한 이용과 관리, ⑨ 해양 산업의 육성 및 진흥, ⑩ 해양에 관한 과학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추진, ⑪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충실한 해양 교육·연구, ⑫ 해양 국제 질서의 선도와 국제 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서 심의하기 이전인 1996년 2월 20일, “유엔해양법 조약체결 및 해양법제정비를 위한 각의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서는 “한국 및 중국 어업관계에 관하여 양국과의 협의에 의해 해양법에 관한 유엔연합조약(가칭) 취지를 충분히 명시한 새로운 어업협정을 조기에 해결하여 신속하게 교섭을 시작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일본 수산청과 자민당, 국회에서도 각각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수산청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²⁰

1965년에 체결한 구 한일어업협정에서 자국의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어업권수역)으로 상호인정하며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여 동 수역에서 출어어선의 척수, 어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 협정에 따른 합의의사록 등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어선에 의한 조업을 자원보호 관점에서 금지하는 수역에서는 다른 나라도 해당 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 어선이 계속 출어하는 등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다.

1996년 유엔해양법조약을 한일 양국에 대해 발효하고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따라 유엔해양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 관해 정부 간 협상이 1996년 5월부터 진행되었으나 한일 양측의 입장 차이로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자원 유지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 구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 협정 종료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 협정이 종료하였다.

20 境港漁業調整事務所, '日韓漁業協定の概要', https://www.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gaiyo.html (검색일: 2022.05.28).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한일 양국 간 협의를 계속했으나 종료 통고 이후 한국이 자율규제 조치를 중단하고 7월에 이를 재개하는 등 경위를 거쳐 1998년 11월 28일 '어업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 협정'(이하 '신협정')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신협정 및 관련한 일본의 국내법이 국회 심의를 거쳐 2001년 1월 22일 발효되었다. 신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취지에 따라 잠정 수역 등을 제외하고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상대국에 대한 어획할당량 및 기타 조업 조건을 결정하면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조업 허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연안국주의) 동해 중부, 규슈 서쪽 앞바다에 설치한 잠정수역에서 한일 양국이 상대국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신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등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각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²¹

일본의 자민당, 사회민주당, 신당 사키가케는 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자 했다. 이들은 “첫째, 한일어업협정은 올해 개정방침을 합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이내를 목표로 교섭을 실시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협의하여도 개정방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등에 관한 주권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법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이 일 년 후에는 전면 적용하도록 대처한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내각제출 제6호)」에서 “본안은 어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간 협정을 실시함에 따라 어업에 관한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와 해양생물자원의 보

21 境港漁業調整事務所, '日韓漁業協定の概要' <https://www.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gaibo.html> (검색일: 2022.5.28).

존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5.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을 발효함에 따라 관련 어업자에게 발생하는 영향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신협정체제 아래 일본 어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²²

참의원 해양법 특별위원회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기반한 연안국의 권리로서 새로운 법제도에 기반하여 일본 주변 수역 모두에서 설정하고 동시에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동 체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 유엔해양법조약의 취지를 충분히 밝히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 개정교섭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하며 교섭 경과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색한다”고 결의했다.²³ 이처럼 일본 정부는 국회로부터 “교섭 경과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를 요청하였다. 이후 한일 어업협정 개정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당 3당 정책책임자는 외무성에게 한국 측에 협정 종료를 통고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종료 통고로 한일 양국 교섭이 중단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재개되어 대통령의 방일 직전 양 국가 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위한 기본합의를 실시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체결되었다. 다음해 1999년 1월 22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동 협정을 발효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은 전문, 본칙 11개조, 부속서 I,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신협정은 그 제명에 “어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했다.²⁴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논의 결과는 권고와 결정으로 이루어지도록

22 衆議院, 農林水産委員會, “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權的權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及び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第6号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ugoki/h11ugoki/144/f144nous.htm (검색일: 2022.8.20).

23 第136回国會 參議院 海洋法條約等に関する特別委員會 第3号(平成8年6月4日).

24 “신 한일어업협정”의 정식제명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1998년 11월 28일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서명되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했다. 제12조 4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업 조건, 조업의 질서유지, 어업협력 및 제9조 1항이 정하는 잠정수역(독도 주변 북부 잠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양 체결국에 권고하도록 했다. 동 조 5항은 제9조 2항이 정하는 잠정수역(동중국해 남부 잠정수역)에 관한 위원회의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결과는 권고가 아닌 ‘결정’으로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법적인 효력을 구별했다.

일본에서는 어업문제를 독도영유권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른바 ‘미뤄두기(棚あげ)’ 방식으로 접근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나 독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한일 양국은 한일잠정수역을 설정하고 한국과 일본 어선이 각각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은 한국에서는 울릉도로 설정했으며 일본은 오키섬(隠岐島)으로 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실무자협의를 비롯하여 정상과 외무장관 등 여러 차례 교섭이 이루어졌다. 해양경계획정과 어업문제를 분리하고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일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잠정수역의 범위와 어획 실적의 보증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 이견이 있었다.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협정 규정에 따라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반발하였으나 1998년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²⁵ 한국과 일본은 최종적으로 1998년 9월 25일 동해 및 제주 남부 수역에서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명태와 대게, 기타 어획량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현에서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일본 국회, 이듬해 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협정을 승인했다. 기본 합의에 도달한 이후 구체적으로 쌍방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조건, 어획할당량 및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등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나 한국의 대게를 목적으로 하는 저인망 어업, 바구니 어업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

25 境港漁業調整事務所,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검색일: 2022.6.3).

본 측 의견이 대립했다. 1999년 1월 23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한일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상대국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월 5일 한일 양측의 상대국 수역 조업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조업 조건을 통보하고 1999년 2월 22일부터 조업을 실시했다.²⁶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어업과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경제획정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는 어업권과 독도 영유권을 단기간에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²⁷ 일본의 어민들은 잠정수역 설정에 따라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50억 엔의 추경예산으로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대책 특별기금을 마련했다.²⁸

III. 수산청과 시마네현·돗토리현의 인식과 쟁점

1. 수산청과 신한일어업협정

이 장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협의의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가졌다. 일본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한일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조업 조건을 협의하고 잠정수역의 수산자원 관리를 협의했다. 2000년부터는 매년 한일어업실무자협의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에서는 불

26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27 境港漁業調整事務所,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검색일: 2022.6.3.)

28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법 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2005년부터는 한일 수산자원협의를 개최했다. 한일수산자원협회는 잠정수역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 수역에서 자원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민간차원에서는 어업단체로는 한일민간어업자단체협회의와 한일민간어업자 당사자 간 협의, 한일어로장로회 등이 참여하여 협의를 실시했다. 협의 내용으로는 주로 잠정수역 조업질서와 해저관리 문제, 한일 교대 조업 실시, 한국과 일본 어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를 다뤘다. 일본의 수산청 국경어업조정사무소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 교섭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²⁹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1945년(1965년)에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이 한일 간 어업관계를 규정했다. 구 협정은 연안선에서 12해리까지 수역을 연안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정하고 이보다 더 먼 수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조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기국(소속국)이 해당 어선을 단속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국주의를 채택했다. 이처럼 한일 양방에서 어업을 실시했으나 한국의 어획능력의 향상, 한국 수역에서의 자원 악화, 중국 어선의 진출 등 한국 어업이 점차 일본 수역에도 진출하여 홋카이도나 서일본 연안에서 일본 어업인들과 어장을 경쟁하거나 어구가 손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이 조업금지구역과 금지기간 설정, 재배어업 진흥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 대책과 자원증식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자원의 남획이 계속되었으며 양국이 합의한 자율규제 조치를 계속 위반하는 등(위반이라고 인식) 한국 어업인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업 등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을 기선에서 200해리로 하는 등 이른바 200해리 체제가 주류가 되었다. 일본은 1977년 구 소련이 200해리 수역을 설정함에 따라 200해리 수역을 설정했으나 한일

29 境港漁業調整事務所,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검색일: 2022.5.20).

어업협정으로 한국 어선에 대해서는 주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1994년 11월 영해,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 심해저개발 등 해양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 해양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으로 유엔해양법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1996년 1월, 동 조약체결국이 되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조약 체결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기존의 어업전관수역을 폐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시에 조약의 의무인 어획가능량 제도를 창설했다. 그러나 어획가능량 제도를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권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 수역 내 자원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면서 기국주의 한일 어업협정을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관할권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관리를 한다는 연안국주의 협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었다.³⁰

‘다케시마(竹島)’ 주변 해역에서의 구체적인 어획량 통계인 ‘서부동해지역 오징어 낚시 어업어장별 어획량 분포도’에 따르면 독도 주변은 많은 경우 서부동해지역 전체의 반을 점유하는 우량한 어장으로 보고 있다.³¹ 해당 해역에서는 현재 한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 감소에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어구 회수에 드는 경비 등 간접적인 손실이 표면화되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구체적인 손실액은 연간 약 74억 엔으로 추정한다.³² 그 외에 매년 19건 내외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나포되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7건에 달했다.³³

일본에서는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에서 한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감시했

30 境港漁業調整事務所, 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teiketu.html (검색일: 2023.1.15).

31 岩下明裕 外, 2014, 『領土という病』, 北海道大学出版界, 44쪽.

32 福原裕二, 2016, 「竹島/独島周辺海域・日韓暫定水域をめぐる漁場紛争の論点」, 『漁業経済研究』 60(1), 37쪽.

33 水産庁, 韓国はえ縄漁船の拿捕について(令和2年1月20日), 九州漁業調整事務所.

다. 수산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어선의 조업을 단속했다. 시마네현 농림수산부장인 이마오카 야스히코는 어장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산인 앞바다 어장에서는 1975년의 약 3,300척이 최고치였으며 이후 매년 100척에서 2,600척 정도의 트롤 및 저인망 어선 등이 오고갔다. 1983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던 작년에 비해 금년 10월 말에는 예년의 1.5배인 약 1,500척에 달했다. 한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로는 지적인 바와 같이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한 자원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산인(山陰) 앞바다에서는 조업이 금지된 트롤의 조업과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6월부터 8월의 휴어기 중 트롤과 저인망 어선의 조업으로 바다속 물고기 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한국 어선의 조업으로 어구의 피해와 다수의 한국 어선의 진출로 인한 조업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에서는 해안에서 12해리 이원의 수역에서의 단속은 기국주의, 즉 어선의 소속국만이 단속 및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협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³⁴고 주장했다.

2. 시마네현과 독도영유권·어업문제에 대한 인식

1)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했다. 시마네현은 시마네현 내에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会)’를 설치하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 조사, 연구 활동을 추진했다.³⁵ 2005년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의 초당파 의원 35명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3월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다.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하자 경상북도는 대응 조치로 시마네현과

34 島根県議会議 平成7年 12月定例会(1995.12.11).

35 Web竹島問題研究所の主な動き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web-takeshima-ugoki28.html> (검색일: 2023.1.22).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독도수호실을 설치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해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주의 부활”이라고 보도했으며 전국적으로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주도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과 심포지엄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역 인사를 초청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발표한 이래 일본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계된 행보를 보였다.³⁶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는 개발시설의 설치 등 국민을 향해 홍보와 개발을 강화했다.³⁷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竹島)’ 조기 영토권 확립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일본 정부에게 2005년부터 국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매년 5~6월, 11~12월에 걸쳐 ‘국가의 시책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중점요청(国の施策及び予算編成等に係る重点要望)’을 각 관계 성청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게 제출, ② 전국지사회 중국지방(中国地方) 지사회를 통한 요청, ③ 중·참 양원 국회요청 및 본회의 채택, ④ 그 외 조직을 통한 요구 활동 등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다케시마문제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총 5기의 연구회를 조직했다. 현이 소유하는 ‘다케시마’ 관련한 역사 공문서나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수집하고 2007년 4월 ‘다케시마’ 자료실을 개설했다. 연구회 활동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로 발표했다. 2014년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설한 『다케시마문제 100문 100답(竹島問題100問100答)』을 발간했다. 2016년 6월 1일 ‘다케시마’에 관한 주민의 증언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오키섬 오키노시마정(隠岐の島町) 도고(島

36 박찬건, 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권 4호, 365쪽.

37 島根県, 『島根県離島振興計画(平成25年度~平成34年度)』, 46쪽.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後) 지역에 ‘구미다케시마역사관(久見竹島歴史館)’을 개관했다. 독도와 관련한 시마네현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마네현 주요 활동

일자	주요 활동
1905,2,22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발표
1953,6,27	• 시마네현, 해상보안청과 독도 조사 • 한국인 6명에게 퇴거명령, 나무기둥 설치
1965,7,6	• 시마네현 지사, 현의회 의장 연명으로 정부에 독도영토권 확보 요청
1977,3,19	• 시마네현 의회, 독도영유권 확립 및 안전조업 확보에 대한 결의
1977,4,27	•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해결촉진협의회(島根県竹島問題解決促進協議会) 설립
1987,3,11	•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県民大会) 설립
2004,3,15	•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서 채택
2004,10,25	• 시마네현 의회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요청
2005,3,25	•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공포·시행
2006,6	• ‘다케시마자료실(竹島資料室)’ 설립
2006,8,16	• ‘다케시마(竹島)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서’ 중의원과 참의원 제출
2007,3	• 제1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2012,8	• 제2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2014,2	• 제3기 ‘다케시마문제100문100답(竹島問題100問100答)’ 발간
2015,8	• 제3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2020,3	• 제4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최종보고서 발표
2023,2	• 제5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중간보고서 발표

출처: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소(島根県Web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시마네현에서는 여론의 확산을 모색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했다. 2005년 3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竹島)’를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올렸다. 2023년 2월에 발표한 제5기 시마네현다케시마연구회 ‘중간보고서’에서는 연구회의 목적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연구 강화와 다케시마학습추진을 위한

검토, 홍보자료 작성이라고 밝혔다.³⁸

2)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들의 발언과 인식

이 항에서는 1995~2005년까지 시마네현 의회록을 검토한 결과를 쟁점 별로 제시하고 지자체의 인식을 검토한다. 시마네현의원은 일본 정부에 대해 어민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의 분리와 결부, 신한일어업협정, 한일공동관리수역 등 시마네현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①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일 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마오카 야스히코(今岡康彦) 농림수산부장은 1995년 12월 11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때 다케시마(竹島)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답변하겠다.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현재 200해리 어업수역에서의 북방 4개(남쿠릴열도) 섬의 사례를 보아도 당연히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설정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³⁹고 말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영유권을 결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선에 대해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국 사이의 중간선까지 일본 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⁴⁰ 스미다 노부요시(澄田信義) 당시 시마네현 지사는 1996년 6월 정례회에서 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을 앞두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단속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업협정 개정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한국 어선의 조업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본 현 어업인의 의견 및 요청이 반영된 새로운 규칙을 조

38 「第5期島根県竹島研究会「中間報告書」の提出にあたって」, 令和5年2月21日 島根県総務部総務課.

39 島根県県議会 平成7年 12月 定例会 1995.12.11.

40 島根県県議会 平成7年 12月 定例会 1995.12.11.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⁴¹ 이처럼 현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에 불과하나 이 같은 발언과 인식은 독도를 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②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 분리

시마네현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결합한 협의체를 통해 대응했다. 스미다 노부요시 당시 시마네현 지사는 “현에서는 1975년에 현, 시정촌, 관계 단체로 구성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문제해결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국가에 대한 요청항목 가운데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계속해서 진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양국의 우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까지 한일 외교장관 정기협의의장 등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⁴²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결부시켜 해결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주야마 츠토무(寿山勉)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인 1996년 3월 8일 “다케시마(竹島)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영토문제의 보류, 분리, 어업교섭의 목표도 제시하지 않는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관계 지역의 현민, 어민들에게 외교 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영토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키도민 특히 어민의 오랜 숙원을 생각할 때 어업과 다케시마(竹島)를 일체화하여 교섭할 것을 강력히

41 島根県議会議 平成8年 6月 定例会 1996.6.

42 島根県議会議 平成8年 2月 定例会 1996.3.5.

요청한다”⁴³며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시마네현에서는 1997년 고카무라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서 관련 단체를 결집하여 다케시마(竹島) 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현민대회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 관련한 논의를 여론에 확산시키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⁴⁴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교섭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미다 노부요시는 다케시마영유권 문제는 분리하여 교섭해야 하며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⁴⁵ 그러나 외무성 등 일본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③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대해서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조기에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하다 다이키치(秦大吉) 의원은 1998년 3월 3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⁴⁶ 스미다 노부요시 지사도 마찬가지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⁴⁷ 이처럼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어업에 관한 우려와 유엔해양법이라는 새로운 해양질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다쿠와 다다오(多久和忠雄) 의원은 일본은 한국 어선이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함으로써 자원을 고갈시키고 어업인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했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⁴⁸ 다쿠와 다다오는 1998

43 島根県議会議 平成8年 2月 定例会 1996.3.6.

44 島根県議会議 平成9年 6月 定例会 1997.6.23.

45 島根県議会議 平成8年 2月 定例会 1996.3.6.

46 島根県議会議 平成10年 2月 定例会 1998.3.3.

47 島根県議会議 平成10年 2月 定例会 1998.3.3.

48 島根県議会議 平成10年 9月 定例会 1998.9.25.

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현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다쿠와 다다오는 일본 어업경영 악화와 협동조합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와 현의 관계에 대한 맥락에서 볼 때 현의 어민들에 대한 권익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어민들과 관련 단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신한일어업협정에 대응하도록 했다.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어업단체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강조했다. 스미다 노부요시는 1998년 9월 25일 “현에서는 향후의 교섭 추이를 주시해 관련 단체와 제휴하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본 현의 어업인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했다.⁴⁹ 나카야마 테즈오(中山哲夫) 의원은 1998년 12월 7일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대해 시마네현 어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⁵⁰ 오자와 히데카즈(小沢秀多) 의원도 새로운 질서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 어선의 저인망 어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수산업계에서 평기를 받는다고 말했다.⁵¹

④ 한일공동관리수역과 조업규제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시마네현은 어업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조업을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시마네현에서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 정부가 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지와라 농림수산부참사는 2003년 5월 19일 “잠정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현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정보수집을 통한 조업 규제와 감시 체제, 단속 강화를 요청한다. 잠정수역에서 효

49 島根県議会議 平成10年 9月 定例会 1998.9.25.

50 島根県議会議 平成10年 12月 定例会 1998.12.7.

51 島根県議会議 平成11年 9月 定例会 1999.9.7.

올직한 관리 방안을 위해 관계 단체와 제후해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⁵² 나라아이 야스노부(成相安信) 의원은 2003년 9월 16일 “1999년 한일 신어업협정 발효로 한일 양측이 어업에 관해 각각 주권을 가진 광대한 잠정수역을 시마네현 앞바다에 설정했다. … 잠정수역에서 자원관리 방안을 조기에 확립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감시단속 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잠정수역 문제의 근본인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요청한다”고 했다.⁵³ 이처럼 시마네현 의회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독도영유권과 어업권을 연계하고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끊임 없이 요구했다.

후지와라 어업관리부장은 2002년 12월 11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대해 “잠정수역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표면상으로는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여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어업인, 어선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시마네현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한일 양국이 자원관리를 함께해 나가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⁵⁴ 마쓰오 히데다카(松尾秀孝) 농림수산부장 역시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마쓰오 히데다카는 2003년 2월 18일 “한국 정부에게 잠정수역을 비롯하여 어업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관련 단체와 제후하여 민간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진한다”고 했다.⁵⁵ 이처럼 시마네현 지역구 의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독도 주변 어장과 지역 어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한국의 조업을 견제하려는 인식을 나타낸다. 시마네현에서는 수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쓰치와 이사오 총무위원장은 2001년 10월 12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52 島根県議会議 平成15年 農水商工委員会 2003.5.19.

53 島根県議会議 平成15年 9月 定例会 2003.9.16.

54 島根県議会議 平成14年 農林水産委員会 2002.12.11.

55 島根県議会議 平成15年 2月 定例会 2003.02.18.

해, ‘다케시마(竹島)’의 영토권 확립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을 바란다. 지역사정을 배려하여 지방교부세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국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⁵⁶

시마네현에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나 대응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 등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의 차이도 보였다. 2023년 제18회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현 지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⁵⁷ 오키 기성동맹회장인 이케다 고세이(池田高世偉)도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대해 별도의 대응이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3) 돗토리현과 어민들의 조업 문제에 대한 인식

돗토리현은 시마네현과 다소 상이한 인식과 대응을 보인다. 돗토리현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새로운 어업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어업협정이나 자율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한국 어선은 끊이지 않고, 일본 주변 수역에서 무질서 조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차 일본 연안 어업인의 반발이 높아져 일본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1996년 유엔해양법조약이 한일 양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조약에서는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인정하므로 동 조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등 충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어업협

56 島根県議会議 平成13年 9月 定例会 2001.10.12.

57 山陰中央新報デジタル, “竹島の日前に質問戦活発、丸山知事 國の対応改善訴え島根県議会議” 2023年 2月18日.

정을 요구한다”⁵⁸고 입장을 밝혔다.

돗토리현은 신한어어업협정이 체결되자 한국 어선의 조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했다. 반면 한일 간 어업협정 규칙에 관한 기능이 미비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⁹

① 돗토리현 앞바다에서 한국 어선 조업 감소

새 협정에서는 돗토리 현의 앞바다 약 150km까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일본의 허락 없이는 조업하지 못하면서 옛 협정(앞바다 약 22km)보다 일본이 적절한 자원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역이 넓어졌다. 특히 돗토리현 앞바다 30~80km에 설치한 대게의 증식장(통칭 ‘계목장’)에서 한국 어선의 남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게의 자원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② 어업협정 규칙 기능 미비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잠정수역의 수산 자원 보호 대책을 민간 협의에 맡기거나 한국 어선의 독점 조업, 불법 조업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등 새로운 협정이 정한 규칙이 잘 기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결정인 어업협정이 잘 기능하지 못하므로 기본적으로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필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설치된 잠정수역은 영유권 다툼이 있는 ‘다케시마(竹島)’ 주변뿐 아니라 오키 제도, 남서부, 대화퇴 등 일본 측의 좋은 어장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어민들에게 노출되고

58 鳥取県, “歴史的経緯”, (旧)日韓漁業協定の締結,新しい日韓漁業協定の締結へ, <https://www.pref.tottori.lg.jp/dd.aspx?menuid=44932> (검색일: 2023.1.21).

59 鳥取県の意見, <https://www.pref.tottori.lg.jp/44937.htm> (검색일: 2023.1.21).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있다. 연안국들이 충분히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잠정수역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취지에 따르고 있지 않다. 어업협정에서 정한 대로 적극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정부 간 교섭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역, 즉 잠정수역을 좁히고 싶은 일본과 잠정수역을 넓히고 싶은 한국 등 양 국가의 주장이 크게 달라서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돗토리현은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독도 인근에서 한국 경비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돗토리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일 정부 간 회담의 진척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계속 어업 관계자들이나 다른 현과 연계하여 쟁점들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돗토리현의 주요 쟁점별 인식과 대응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돗토리현의 입장

쟁점	내용
조업질서	한국 어선이 그물이나 망 등 어구를 두고 어장을 독점하는 수역이 있다. 잠정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역이지만 실제로 휴어기에도 대부분 한국 어선 어구가 설치되어 있어 하마다 등 일본 어선이 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 레벨에서 한일 양국 간 민간 레벨에서 논의하도록 하지만 민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협정에서 정해진 대로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등에서 양국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어업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관리	한국 어선의 포획으로 자원 고갈 우려가 있다. 양국 협조에 의해 자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잠정수역 어획량 감소와 자원 고갈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2008년 말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 어선을 감소시키고 잠정수역에서 해저청소사업을 확대, 소형 개체 보호조치 도입 검토 등에 합의했다. 이후 합의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등 양국 정부의 책임으로 어선의 최대 수 설정, 조업기간이나 어구 수를 통일하는 등 자원관리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
독도 인근 충돌 가능성	돗토리현의 경우 2002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경비정과 돗토리현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⁶⁰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이나 한국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경비대를 보내는 등 일본 어선을 나포하거나 위협하므로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없다. 돗토리현은 한국 어선이 위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출처: 鳥取県新日韓漁業協定以後操業の状況と問題点, https://www.pref.tottori.lg.jp/dd.aspx?m_euid=44935 을 바탕으로 작성

60 鳥取県 新日韓漁業協定以後操業の状況と問題点, https://www.pref.tottori.lg.jp/dd.aspx?m_euid=44935 (검색일: 2023.2.10).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에 관하여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은 시기와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한 입장을 가진다. 2005년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돗토리현의 입장 변화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돗토리현은 2005년 3월 23일 돗토리현 의회에서 「다케시마(竹島) 문제의 해결과 한일 잠정수역에서 어업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서」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돗토리현 지사는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잠정수역으로 일본의 어민이 쫓겨나고 있다.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의견서 제출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5일 돗토리현 의회는 구 조례에서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진정을 제출할 것을 유보했다. 돗토리현은 시마네현과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연대하여 대응하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했다. 2007년 11월 30일 돗토리현은 “다케시마(竹島) 문제로 2005년 3월 이후 중단했던 한국 강원도와의 교류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마네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2007년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돗토리현 지사는 김진선 당시 강원도 지사와의 회담에서 “지역 간 교류에서 영토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교류 재개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⁶¹ 돗토리현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업협정의 규칙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문제는 양 국가 간 정부 레벨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전에 돗토리현은 2008년 제3회 이후 현재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돗토리현은 영토 주권과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日本海洋新聞』, 2007年12月1日.

IV.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의 정책적 연계

일본 정부는 2007년 4월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어업과 섬, 연안 지역에 대한 자원관리보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했다. 해양영토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했다.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관련 성청(省庁) 간 긴밀한 협조와 영토와 영해, 주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했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국토지리원과 업무협조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여 해양영토에 관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는 주로 국내외의 발신을 위한 지식인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종합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및 독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연계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모색했다(표 3).

〈표 3〉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네트워크: 지자체·민간단체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지자체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	오키나와현	지자체 대응
		이시가키시(데이터 베이스)	센카쿠열도 관련 정보 자료 구축
		도쿄도 센카쿠열도 홈페이지	정책, 자료 구축
		해양정책연구소도서자료센터	센카쿠열도 관련 자료 구축
	독도	시마네현(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독도영유권 관련 자료실, 출판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독도영유권 자료 구축
		해양정책연구소도서자료센터	독도영유권 관련 자료 구축
	북방영토 (남쿠릴열도)	홋카이도청	지자체 대응
		네무로진흥국	북방영토 관련
		네무로시	북방영토 최신 정보, 시민대회
민간 단체	독립행정법인 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		북방영토 자료
	북방영토 에리카장 학습 콘텐츠		북방영토 관련 현지조사 자료
	쿠릴하보마이제도 이주자연맹		-
	북방영토북귀기성동맹		북방영토에 관한 자체자료 제작

민간 단체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해양국제협력과 국제질서, 제언
	해양정책연구소 도서자료센터	북방영토 · 센카쿠열도 · 독도 관련
	센카쿠열도문헌자료편찬회	센카쿠열도 관련 연구조사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도서문제)	도서문제

출처: 内閣官房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 “政府の取組について”를 바탕으로 작성(<https://www.cas.go.jp/jp/ryodo/torikumi/torikumi.html>, 검색일: 2023.1.10.)

일본의 경우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현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쿠릴열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독도는 각각 다른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쿠릴열도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이 수십 년간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실시해 왔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경제협력과 성묘, 주민교류 등이 이루어졌다. 센카쿠열도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이 관련되며 과도한 영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의 경우 주로 시마네현에서 어업권을 내세우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듯 해양영토와 관련한 논의는 국가 간 단일행위자로서 대응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게다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빈발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을 일체화하는 데 중요한 명제이나 갈등적이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마네현은 지자체 가운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일체화하여 독도 주변에서 조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지사, 현의회, 지방시정촌, JF시마네 관계자와 연계하여 일본 정부에게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020년 시마네현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다케시마(竹島)영토권확립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을 설립했다. 이어서 2021년 1월 15일에는 오키에서 현민회의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돌아오라 섬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다케시마(竹島)북방영토반환 운동 시마네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는 스미다현 지사를 포함해 시마네

현 출신 자민당 국회의원과 외무성, 수산청 간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실상 시마네현 어민들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므로 일본 어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시마네현은 1953년 6월 18일 제1종 공동어업권을 설정해서 어업권을 교부했다. 현재도 독도 주변에서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업권 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제1종 공동어업권은 어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있지 않다. 독도의 경우 산인의 어업자가 소속하는 오키섬어업협동조합연합회(隠岐島漁業協同組合連合会)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어업권에 의한 조업활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⁶²

V. 결론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어민과 어업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수산청과 지자체는 어업자원보호와 해양질서를 내세우며 자국의 어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수산청은 독도 주변을 '우량어장'으로 인식하고 수산자원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어민, 어업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산청은 어

62 島根県 水産課, 「竹島の漁業権について—竹島の漁業権に対する島根県の基本的な考え方」.

업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가 어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에서는 한일어업협정 이전에는 독도영유권과 어업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즉 현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영유권을 갈등의 소지로 쟁점화했으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자체만을 위한 단일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커질 소지가 있다.

한일 간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는 광복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쟁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시마네현 관계자는 1998년 체결한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시마네현의 수산업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마네현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수산청과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지역어민을 보호하고 어업권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가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시마네현 어업조합에서도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하는 데 항의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거센 요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이 해양영토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의 해양영유권과 어업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본 국내의 정부와 지자체, 어업 관련 민간 행위자 간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島根県議会, 「島根県議会議録」.

隠岐島町村会, 「竹島の領土権確保に関する陳情書」(一九六三年).

隠岐公論, 「竹島に戦後初出漁」.

島根県議会, 「島根県議会議録 第178回」(一九五八年).

_____, 「竹島の領土権確保に関する県民運動推進要綱案」(一九六五年).

_____, 「竹島の領土権確保について要望書」(1965.09.15.).

島根県, 『島根県離島振興計画(平成25年度~平成34年度)』.

_____, 『竹島の領土権の早期確立に関する請願書』.

「排他的經濟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1996)」法律 第74号.

「内閣府設置法(1999)」法律 第89号.

「海洋基本法(2007)」法律 第33号.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2007)」法律 第34号.

「海洋基本計画」(2008).

島根県総務部総務課. 「第5期島根県竹島研究会「中間報告書」の提出にあたって」
令和5年2月21日.

2. 2차 연구문헌

곽진오, 2010, 「독도와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46집.

_____, 2012, 「시마네현(島根縣) 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연구』 통권13호.

김수희, 2020,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독도」, 『인문연구』 제19권.

_____, 2010,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어업」, 『인문연구』 제58권.

- 남상구, 2012, 「남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일본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4권.
- 도시환, 2020,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통권29호.
- 문상명, 2019,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통권51호.
- 박창건, 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竹島)의 날’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권 4호.
- _____, 2019,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7권.
- 박한민, 2022, 「1880~1890년대 울릉도 물산을 둘러싼 분쟁과 조일 양국의 대응」, 『사학연구』 제148호.
- 서인원, 2021,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경향 분석-평화선 및 독도 어업 관련 연구에 대해서」, 『독도연구』 통권 30호.
- 석주희, 2021, 「중·참의원 의사록(1948~2020)에서 나타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발언 및 인식」, 『국제학논총』 제34집.
- 송희영, 2021,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과 시마네현의 독도 교육 검토」, 『독도연구』 통권 30호.
- 조윤수, 2011, 「한국 교섭 참석자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권.
- _____, 2012, 「한일회담과 독도: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4권.
- 차철표, 1997, 「일본의 어업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9-2.
- 최은봉·석주희, 2010,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해양권익의 확대와 쟁점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 44호.
- 최장근, 2014,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會’의 일본영토론 조작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44권.
- 최재선·이주하, 2008, 「일본의 해양주도권 강화전략과 시사점」,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8-01.
- 秋山昌廣, 2007, 「海洋利用と海洋空間の管理」, 『国際安全保障』 第35卷 第1号.
- 海洋政策研究財団, 2006, 海洋基本法研究会の活動について.

- 해양開發關係省庁連絡會議, 2006, 海洋開發推進計画.
- 日本海洋学会, 2007, 海洋基本法への海洋研究者からの提言.
-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2004, 海洋權益を守るための9つの提言.
_____, 2006, 海洋開發關係省庁連絡會議.
- 防衛省, 2004, 『平成16年版日本の防衛 - 防衛白書 - 』,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
- 村田良平, 2001, 『海洋めぐる世界と日本』, 成山堂.
- 福原裕二, 2012, 「漁業問題と領土問題の交錯」, 『北東アジア研究』第23号.
_____, 2016, 「竹島/独島周辺海域・日韓暫定水域をめぐる漁場紛争の論点」,
『漁業經濟研究』60(1).
- 山内康英, 1999, 「海洋レジームの現状と日本の対応」, 『国際問題』9月号 No.
438.
- 山本草二, 1992, 『海洋法』, 三省堂.
- 高坂政堯, 2000, 『海洋国家日本の構想』, 都市出版.

3. 인터넷 자료

- 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 島根県Web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
- 島根県,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
- 総合海洋政策本部, <https://www.kantei.go.jp/jp/singi/kaiyou/index.html>.
- 内閣府, 「海洋基本計画」, <https://www8.cao.go.jp/ocean/policies/plan/plan.html>.
- 内閣府, 「海洋基本計画」, <https://www8.cao.go.jp/ocean/policies/plan/plan.html>.

국문초록

1990년대 일본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신한일어업협정, 해양기본법 등 해양영토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후 일본은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정부 주도의 '관리하는 해양영토'와 지자체의 어업권과 영토권의 '결합'과 '분리'라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자리한다. 기존에는 일본 정부 주도의 해양영토와 종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 국내 요인으로 지방의회나 지자체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덜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은 수산청과 지자체 등 국내 요인에 주목하여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제시한다. 내용 면에서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과 국내정치적 맥락을 밝힌다. 우선 1990년대 일본의 해양정책의 변화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경위에 관한 일본 내 인식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일본 수산청과 시마네현·돗토리현의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일본의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을 분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해양영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는 등 주도적으로 해양영토를 강화하려고 했음을 밝힌다. 결론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전략의 변화에는 국제해양질서의 편입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가운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등 지자체의 어업문제의 쟁점화가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유엔해양법, 신한일어업협정, 수산청, 시마네현, 돗토리현, 독도영유권

ABSTRACT

Japan'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Ocean Policy and Fisheries Issues Since the 1990s.

Suk, Ju Hee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study examines Japan's perception of maritime territory and issues since the 1990s, with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and fisheries issues. In this article, documents and reports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s well as the minutes of Shimane Prefecture's assembly are examined. First, it reviews the flow and changes in Japan's maritime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East Asia maritime order in the 1990s, and present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econd, it examines the recognition of the Japanese Fisheries Agency and Shimane-Tottori Prefecture in relation to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main topic i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and fisheries issues, and the regulation of oper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Korea-Japan Joint Management Zone,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In conclusion, since the 1990s, the dissatisfaction of Shimane Prefecture's political elites and their collaboration with fishermen's unions have been the background of Japan's strengthening of it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and its fisheries problems. Such a discussion will help us understand the perceptions and political context of Japanes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regarding maritime territory and fisheries issues.

Key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Fisheries Agency, Shimane Prefecture, Tottori Prefecture, Dokdo's sovereignty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의 실천

심정보 서원대학교 교수
박유미 서울압구정초등학교 교사

- I. 머리말
- II. 독도 수업의 설계와 실천
- III. 독도 수업에 대한 소감
- IV. 맺음말

1. 머리말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동해상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논쟁을 지속하였다. 울릉도 영유권은 1693년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이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양국 사이에 외교문제로 확대되었으며, 마침내 당시 일본 정부는 여러 조사를 통해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1696년 제1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9세기 전반에는 산인(山陰)지방의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 일행이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삼림을 벌채해서 돌아왔다. 이 일은 관리에게 적발되어 그들 일행은 사형, 무기징역, 면직,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1837년 제2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¹ 안용복 사건 당시 조선과 일본은 외교문서에 독도나 해양 경계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독도 남부, 즉 독도와 오키제도 사이를 조일 간의 묵시적 경계로 보았다.²

한편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이슈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06년 3월 당시 심흥택 울도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상부 기관에 보고했지만,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지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20세기 후반까지 독도 이슈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다. 그 계기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 100주년을

* 논문 투고일: 2023.5.1, 심사 완료일: 2023.5.15, 재심사 완료일: 2023.6.2 게재 확정일: 2023.6.2

1 송취영, 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학보』 제68호.

2 박현진, 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맞아 2005년 3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2월 22일에 기념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7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의 지리적 분야에 독도(竹島)를 최초로 명기 하여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나아가 일본의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 그리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부는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독도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³ 게다가 일본의 독도교육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비판적 독도교육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독도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독도교육 정책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 연구, 독도 수업 연구, 독도 교육의 방향 연구, 기타 등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⁴ 이들 가운데 독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 연구가 가장 많다.

독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에 의한 독도 수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독도 수업을 실천한 사례는 김외순⁵의 교과와 예술을 통합한 수업, 김지현⁶의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활용한 사회과 융합 독도 수업 실천, 한동균·남경희⁷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과융합형 독도 수업 모델 개발과 실천, 그리고 정효영·김진봉⁸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 주제 및 독도 수업 등

3 심정보, 2018,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독도연구』 제24호.

4 심정보, 2022, 「한국에서 독도교육의 연구 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30권 제1호.

5 김외순, 2014, 「교과와 예술을 통합한 수업의 실제-『독도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7권.

6 김지현, 2017,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활용한 사회과 융합 독도 수업 실천 사례 연구」, 『사회과수업연구』 제5권 제2호.

7 한동균·남경희, 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과융합형 독도수업 모델 개발과 실천」, 『영도해양연구』 제14권.

8 정효영·김진봉, 2022,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 주제 및 수업 사례 연구-독도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논집』 제58권.

으로 제한적이다. 이처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독도 수업의 실천 사례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좋은 수업이란 교사 중심의 행동주의적 관점보다는 학습자가 실세계의 문제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학습자와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⁹ 훌륭한 교사는 미시적인 교과서 중심주의보다는 거시적인 교육과정을 중요시하고,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의 함양,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도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면, 독도 수업은 40분 수업으로 2~3차시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독도 수업의 실천을 총 8차시로 설계하였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사회 교과서 이외에 학습 동기부여 및 수업의 안내로서 독도일기 작성 방법을 알려 주었다. 게다가 미술 교과와의 통합 수업을 통해 독도 홍보자료 만들기,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를 교실로 초대하여 독도특강 및 질의응답하기, 수업의 마무리로서 활동지 작성 및 소감 발표하기 등을 추가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초등학교 사회과 독도 수업을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학습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수업을 전개하고, 학습자들의 독도 수업에 대한 소감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실천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반포초등학교 6학년 2반 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모형은 꼬마 독도전문가를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탐구수업이다. 연구자는 수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습자들의 소감문에 드러나는 내용을 질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9 조철기, 2014, 『지리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서울: 푸른길.

II. 독도 수업의 설계와 실천

1. 사회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장 → 지역 → 국토 → 세계의 순서로 학습하도록 환경확대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다. 그러나 지리의 내용은 기계적 환경확대법이 아닌 탄력적 환경확대법으로 지역을 상호 관련적으로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독도는 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의 마지막 대단원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했다.¹⁰ 대단원에서 독도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의식을 기르며”라고 기술되었다. 그리고 독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중단원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의 성취기준은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른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토 수호 의지, 영토주권 의식 함양, 주변국과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게다가 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독도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간행된 교육부¹¹의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에는 중단원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독도와 관련하여

10 교육부,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11 교육부, 2022,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2』, 서울: ㈜지학사.

동시(童詩) 〈독도에 가 봐〉,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댓글 쓰기 등의 내용이 12페이지에 걸쳐 기술되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의 독도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사진, 그림, 지도)가 다수 등장한다(표 1).

〈표 1〉 초등학교 『사회 6-2』에 수록된 독도 관련 이미지

학습 주제	독도 관련 시각 이미지
〈독도에 가 봐〉	독도경비대, 우체통, 독도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바다사자, 일본 어부가 정부에 독도에서 감치잡이 요청, 일본 정부의 감치잡이 허락, 일본의 감치잡이, 한국지도와 독도의 위치, 〈팔도총도〉(1531), 〈대일본전도〉(1877), 『세종실록』 지리지(1454), 대한제국칙령(1900),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 동도와 서도 전경, 사철나무, 탕건봉, 코끼리바위, 섬기린초, 팽이갈매기, 삼형제굴 바위, 천장굴, 한반도 바위, 독립문 바위,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저 지형도, 해양 생물(살오징어, 부채빨산호, 도화 새우)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 독도주민, 최종덕, 독도 경비대원, 한국령 표시, 반크, 독도 홍보 포스터, 독도 캐리터, 독도 동영상,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댓글 쓰기	태정관 지령

출처: 교육부, 2022,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2』, 서울: (주)지학사에서 작성

교과서의 첫 부분에는 독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안영선 시인의 〈독도에 가 봐〉라는 동시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넌 독도를 알고 있었니? 바위섬에 갈매기, 지키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생물이 자생하고 우체통도 있고, 전화도 되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다. 동시를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인데, 결국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다.

교과서 본문의 첫째 주제로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는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반 해도 강치가 무리지어 살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내용,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살펴보는 내용,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연합국의 옛 지도와 문헌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역사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는 내용, 화산섬으로서 독도의 자연 경관 및 천연기념물 지정, 독도 주변 바다

의 조정수역 및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의 내용을 다뤘다.

둘째 주제로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는 옛날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및 단체로서 안용복, 최종덕, 독도 경비대원, 대한민국 영토 표시, 반크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독도 홍보 포스터 그리기, 독도 캐릭터 만들기, 독도 홍보 동영상 만들기,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 소개하기 등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 보도록 했다.

마지막 주제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댓글 쓰기’는 옛 자료인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바탕으로 독도와 관련해 일본 메이지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소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독도지킴이로서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된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써 보도록 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독도는 6학년 2학기에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교육의 목적은 독도를 지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독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독도의 기초적·기본적 이해, 독도를 지키려는 태도의 형성, 적극적인 홍보활동, 독도지킴이로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리적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독도 수업의 실천

1) 독도 수업 구상하기

독도교육의 실천가로서 교사는 교사가 진심으로 이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때에 그들의 수업 태도와 성취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단지 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결같이 설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독도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독도일기 쓰기, 모둠 토론 활동 기회를 자주 제공했으며, 외부로부터 독도연구 전문가를 교실로 초대하여 독도를 차근차근 알아 가는 수업을 설계했다.

물론 교과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진도와 상관없이 ‘독도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자주 교과서의 독도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교사는 독도에 대해 알고 지켜야 하는 주체는 바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학생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 실천을 구상했다.

실천자는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 수업을 8차시로 구성했다. 사회 교과서에 근거하여 수업의 학습 목표는 “우리 땅 독도를 알고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 수 있다”로 설정했다. 차시별 독도 수업의 주요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은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사회과 독도 수업 지도안

교과	사회	일시	2022.10.11.~12.09.	대상	6-2	지도교사	○○○
단원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차시	8	교과서	92~102쪽
학습 주제	우리 땅 독도와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알아보기					수업모형	탐구수업
학습 목표	우리 땅 독도를 알고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준비물	독도 관련 자료

차시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1	학습 동기부여 및 수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독도일기 쓰는 방법 소개 : 스스로가 흥미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줄 이상 자주 기록 전문가와 협력 수업 예고 : 2달 후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강의 예정 	자발적 참여유도
2	독도에 대해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의 위치와 지형 독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 	교과서, 지도
3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 안용복, 최종덕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체들 - 독도 경비대, 반크, 학술단체 	교과서, 영상자료
4	독도 홍보자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 홍보포스터 그리기, 독도캐릭터 만들기 작품 설명하기 	미술자료
5	활동지1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를 사랑하는 아이들 - 주어진 질문에 기록하고 모둠별로 발표하기 	활동지1
6	전문가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 소개 	PPT
7	전문가와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와 독도일기, 강의에서 궁금한 내용 질문 	
8	활동지2 작성 및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 수업을 마치며 -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활동지2

2) 독도에 관심 갖기

1차시 수업은 학습 동기부여 및 독도 수업의 안내로서 본격적인 수업 약 한 달 전인 2022년 10월 11일(화)에 실시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독도 수업의 필요성 알기이다. 수업 활동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 뉴스 알아보기(영토 분쟁 관련 동영상, 뉴스 제공), 독도에 대한 누리집 기사 살펴보기(일본의 독도 교과서 관련 기사), 독도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 알아보기(지도에서 독도를 찾아 'O' 표시하고, 독도는 어느 바다에 위치해 있는가, 독도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독도의 위치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등), 독도 수업에 대해 안내하기(책 소개, 독도일기 쓰기 확인, 독도연구자와 협력 수업 예고 등)이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교사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 독도 전문가 및 지킴이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둠활동을 통해 토의하도록 했다. 교사는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자발적인(형식, 내용, 분량 등) 독도일기 작성하기(〈그림 1〉), 독도연구자와의 협력수업을 제시하여 독도 수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였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독도일기 쓰기에 큰 관심을 두어 기존의 수업에서 실시하던 독도 조사하기 등의 포괄적인 일회성 과제 제시에서 벗어나 〈그림 1〉과 같이 매일 조금씩 독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거나 학생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부분 전문가가 되기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였다. 분량과 형식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록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3) 사회 교과서로 독도 수업하기

2차시 수업은 『사회 6-2』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2년 11월 24일(목)에 실시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이다. 수업 활동은 독도의 주소(동도, 서도)와 명칭(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독도의 인문환경(독도 경비대 숙소, 동도 선착장), 독도의 자연환경(기후 및 생물-괘이갈매기, 섬기린초, 해마, 도화새우 등 바다생물)과 가치(자원-가스 하이드레이트), 독도 이슈(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 찾기(한국 의 <팔도총도>,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척령, 일본의 <삼국집양지도>, 태정관 지령)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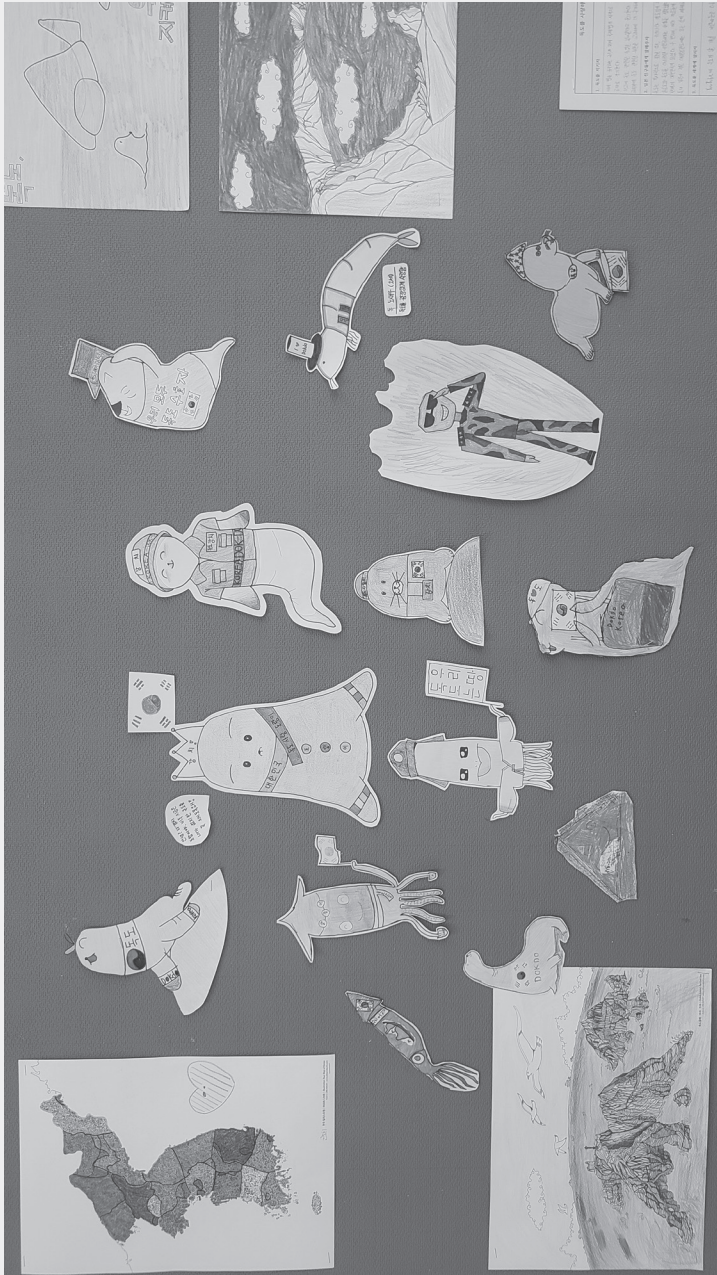
교재 및 준비 자료는 교과서, 독도 관련 동영상 자료, 학생들의 독도일기 등이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막상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독도 일기를 2일에 한 번 확인하여 싸인을 했으며, 교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기 내용 중에 독도 관련 노래를 찾은 학생이 있는 경우, 쉬는 시간에 그 독도 노래를 틀어 교사와 함께 불러 보았으며, 서로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3차시 수업도 『사회 6-2』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2년 11월 29일(화)에 실시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알아보기이다. 수업 활동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조상들의 노력(안용복, 심홍택,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바로알리기를 위한 국가의 노력(동북아역사재단)과 민간단체의 노력(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등을 소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생각하기(어린이로서, 또 앞으로 성장해서 독도지킴이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했다.

교재 및 준비 자료는 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누리집, 반크 누리집, 학생들의 독도일기 등이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몇 가지 예시로 제시하여 구안하도록 했다. 예컨대 미래에 제빵사가 된다면, 독도의 날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독도 빵 만들기 등이다. 모듬원의 장래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듬별로 생각나누기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미술 시간에 독도 수업하기

4차시 수업은 독도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목)에 실시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독도 홍보자료 만들기이다. 수업 활동은 독도 마스크트와 포스터 만들기(원하는 형태 선택하기-마스크트와 포스터 중 택일,



〈그림 2〉 학생들이 그린 독도 마스크

마스코트는 가능한 한 크게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하고 제작하기), 독도 마스코트와 포스터 전시하기(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 주고받기)이다. 교재 및 준비 자료는 도화지 혹은 A4 용지, 색연필, 사인펜 등이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독도를 상징하는 식물, 자연환경, 자원, 인물 등을 다시 상기시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작품을 그리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독도가 들어간 대한민국 지도, 독도(동서, 서도), 강치, 태극기, 갈매기, 독도새우, 살오징어 등을 소재로 다양한 마스코트를 그렸다. 이들 작품은 교실 뒤의 게시판에 부착하여 환경미화로 활용하면서 항상 학생들이 독도를 상기하도록 했다(그림 2).

미술 교과와의 융합은 독도 수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그리고 교실 환경 조성에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마스코트 제작 이외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독도 지도 그리기 등의 자율성을 제공한 것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5) 모듈별로 소감 발표하기

5차시 수업은 4차시까지의 수업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으로 2022년 12월 6일(화)에 실시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독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며, 주어진 활동지의 질문에 내용을 기록하고 모듈별로 소감을 발표하도록 지도했다. 활동지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지키자, 일본 친구에게 말해 주자, 독도를 세계에 알리자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소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도를 지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해 평상시에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갖기, 독도 거주자에 특혜주기, 과학기지 세우기, 독도에 경비대원을 더 배치하기, 국민들의 독도밟기, 독도의 날에 방송사에서 독도 관련 뉴스·홍보·역사 알려주기, 독도교육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독도 문제 출제하기, 초대 강사처럼 독도학자가 되어 독도강의 봉사하기 등이 있었다.

둘째, 일본 친구들에게 말해 주자에 대해서는 옛 지도와 문헌에 독도가 한국령 또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 및 반박하기, 영상 통화 및 채팅 대화로 만난 일본 친구들에게 독도 바로 알리기, 초대 강사

가 들려주었듯이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 등이 있었다.

셋째, 독도를 세계에 알리자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독도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세계 각 지역에서도 독도의 날 행사하기, 유명 브랜드와 독도 홍보용품 만들기, 유명한 노래를 독도 내용으로 개사하여 SNS에 올리기, 우리나라의 공항이나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에 포스터 및 전광판 설치하기, 외국 원조물품에 독도 문구 넣기, SNS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홍보하기, 독도 춤 챌린지 만들기 등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6) 독도연구자와 함께하기

6차시 수업은 외부에서 초대한 독도연구자의 특강 시간으로 2022년 12월 8일(목)에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교과서 밖의 새로운 독도 내용을 기대했으며, 독도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강의 주제는 ‘○ 교수가 들려주는 독도 이야기’이다. 초대 강사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주는 다양한 옛 지도와 문헌, 사진, 그림 등의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독도의 역사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표 3).

외부 강사의 독도강의 내용은 <표 1>의 초등학교 『사회 6-2』에 수록된 독도 관련 이미지와 비교할 때에 교과서 밖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독도의 지질 명소, 독도리 최초 이장 김성도, 한국인의 독도밧기,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한국과 일본의 옛 문헌 및 지도, 독도는 일본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 그리고 현대에 한국이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들 등이다.

7차시 수업은 같은 날 6차시 수업에 이어 독도연구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교과서와 독도일기, 강의에서 궁금한 내용 등을 질문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8차시 수업은 독도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으로 2022년 12월 9일(금)에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의 실천

〈표 3〉 외부 강사가 독도 강의에서 소개한 독도 관련 이미지

학습 주제	시각 이미지
독도의 자연과 주민	독도의 위치와 주변 지역의 지도, 독도의 일출, 독도의 전경, 독도의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독도 지형도,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 동도의 선착장, 동도의 와이, 서도의 물골, 독도의 지질 명소, 메탄 하이드레이트, 울릉도 지도, 최중덕의 동도 선착장 계단 공사(1982), 독도 최초 이장 김성도, 한국인의 독도밧기
근대 이전의 독도 인식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우산국, 『고려사』지리지의 우산,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우산, 울릉도에서 바라본 죽도와 관음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우산도, <팔도총도>의 우산도, 안용복의 제1차 도일 경로(1693), <조선자팔도>(1696)의 울릉도와 독도, 돛토리번의 회답서(1696), <죽도지회도>(1696), 니가타현의 울릉도도해금지 팻말(1696), <동국대지도>(1640년대), <해좌전도>(19세기), <삼국절양지도>(1785), <대삼국지도>(1802)
근대 이후의 독도 인식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태정관 지령(1877), <기죽도약도>(1877),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결정문(1905), 시마네현 고시(1905), <조선동해안도>(1876), <조선여지전도>(1876), <실측 일정한군용정도>(1895), 대한제국 관보(1900), 시마네현의 독도시찰단(1906), 이명래 보고서와 참정 대신의 지령(1906), 『대한매일신보』(1906), 『황성신문』(1906), 대일본제국육지총량부의 울릉도(1939), 송완식의 <경상북도관내도>(1939)
현대의 독도 인식	조선산악회의 독도 학술조사(1947),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 윌리엄 시볼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일본영역도>(1952), 동도의 독도 표식(2015), 독도 우표(1954), <한일어업협정수역도>(1965), <신한일어업협정수역도>(1998),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2020), 일본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독도재단의 독도문화 대축제, 독도지킴이 학교의 독도탐방(2008), 서도의 주민숙소, 동도의 독도경비대, 국제사법재판소, 변영태,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

III. 독도 수업에 대한 소감

1. 독도에 눈뜨는 아이들

마지막 8차시는 독도 수업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독도 수업을 마치며’라는 활동지를 나눠주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했다(그림 3). 활동지는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출자 17명의 답변 내용 및 소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가지이다. 독도와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총 132개의 답변이 나와 1인당 평균 7.8개를 제시했다. 독도 관련 주요 연상 단어로써 가장 많은 강치(12.1%)를 비롯하여 팽이갈매기(7.6%), 일본(6.9%), 안용복(6.1%), 최중덕(6.1%), 가스 하이드레이트(6.1%), <팔도총도>(5.3%),

섬기린초(5.3%), 사철나무(5.3%), 독도(도화)새우(5.3%) 등이 다소 높으며, 동도와 서도, <대일본전도>, 울릉도, 『세종실록』지리지, 코끼리바위 등이 3% 내외이다. 그 외에 1% 내외의 응답은 천연기념물, 국제사법재판소, 이사부, 한국, 신라, 일출, 독도수호대, 오징어, 반크, 영유권, 우리 땅, 억지 주장, 다케시마, 우산국, 대한제국칙령, 독립, 독립문바위, 한반도바위, 천장굴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교과서와 외부 강사가 들려 준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의 기억에는 독도의 침탈과 관련하여 강치, 일본,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안용복과 최종덕에 대한 기억이 높은 편이다. 기타 독도의 자연환경, 자원, 영유권 자료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둘째, 내가 만든 ‘독도 마스크트’나 ‘포스터’를 그리도록 하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이다. 독도 마스크트나 포스터는 강치 9개(52.9%), 독도 3개(17.6%), 살오징어 3개(17.6%), 독도새우 1개(5.9%), 독도경비대 1개(5.9%)로 나타났다. 그림에 기재한 글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 Dokdo, Korea, 독도지킴이, 잃어버린 강치를 위해 독도를 지킵시다, 대한민국 독도사랑 등이다. 마스크트나 포스터에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강치이다. 여기에는 강치가 독도 수호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독도를 지키자는 염원, 일본인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바다사자 강치를 기억하고 일본인들이 이 마스크트를 본다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 강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고, 강치에 표시된 태극기에는 독도사랑·한국 땅·독도지킴이 등이 적혀 있어 독도에서 멸종된 강치, 강치에 대한 기억, 독도사랑, 우리 모두 독도지킴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셋째, 독도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교과서 내용, 조사한 내용, 전문가 강의 내용)의 기억이다. 사회 교과서 내용으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안용복·최종덕·반크, 독도 관련 사료로서 한국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최초로 나타나는 <팔도총도>, 일본의 관찬 <대일본국전도>에 독도가 없다는 것, 독도의 자연환경으로 지형지물(한반도바위, 코끼리바위)의 생김새와 독도의 동·식물(오징어, 새우, 사철나무) 등이 다소 많은 편이다. 그 외에 강치 멸종, 가스 하이

드레이트 등이 나왔다.

학생들 스스로 조사한 내용으로는 일본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것, 독도 영화가 있다는 것, 일본의 독도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무의미하다는 것, 반크의 항의 내용,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가 너무 많다는 것, 독도의 탄생 연도 및 화산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독도가 울릉도와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것, 삼국시대 이래 독도를 보는 시각, 외국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것, 독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독도의 날이 10월 25일로 정해진 이유, 홍순철이 수비대를 만들어 독도를 지켜 냈다는 사실, 아직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바뀐 가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등이다.

외부 강사의 독도강의 내용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독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팔도총도〉에 독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진 이유, 옛날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불렀다는 사실,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 독도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가치,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고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는 내용 등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담임 교사와 수업 시간에 독도를 미리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밖에도 외부 강사를 통해 다른 내용을 알게 되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넷째,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나 교과서에서 더 알려주었으면 하고 희망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는 증거 문서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주장 이외에 일본 측 주장도 교과서에 기술되면 좋겠다는 것, 더 깊은 내용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반크 이외에 독도 관련 사이트나 단체,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

거, 독도 주민이 되는 방법, 독도리 김성도 이장의 활동,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의 『고려사』지리지의 독도 내용, 독도가 대한민국의 막내 섬이라는 이미지를 벗겨주기 위해 울릉도와 제주도보다 훨씬 먼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 한국이나 일본이 독도를 갖게 되면 국토 및 해양의 면적 변화 등이다. 특히 학생들은 우리를 넘어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과 근거, 외국인들의 독도 인식 등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다섯째, 공부한 모든 내용(교과서, 답입교사, 조사, 모둠토의, 초청강의 등)을 종합한 독도 수업의 소감이다.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독도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다. 친구들과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조사하는 친구의 열정과 태도를 본받고 싶었고, 독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지식이 쌓여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마치 독도전문가가 된 기분이었고, 독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섬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부끄러운 마음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조사 내용을 나누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잘못된 내용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스스로 독도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뿌듯하고 독도에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것이며, 다음 단계는 독도밟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으며, 무엇보다 이제는 독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교사와의 독도 수업에서는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모를 만한 지식을 교사가 알려주어 독도 조사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모둠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고, 부족한 점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독도 수업은 더욱 흥미로웠고, 각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통해 친구들이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토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출하여 실행되기를 바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 교사와 친구들이 모두 함께하는 독도

수업은 즐거움에 웃음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교사가 독도를 새롭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수업을 기획하여 학생들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종래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수업 전개보다는 교사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하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독도 수업을 한 것에 만족을 드러내었다.

한편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을 통한 독도 수업에 대해서는 교사와 교과서 밖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외부 강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왔던 강의라고 생각해서 엄청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각 이미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다고 했다. 학생들은 외부 강사가 PPT로 독도 관련 자료를 많이 보여 주었는데, 특히 일본이 만든 고지도 가운데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된 것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게다가 학생들은 강사가 독도강의의 마지막에 퀴즈를 통한 상품 받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강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자료 조사 이외에 자신들이 궁금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외부 강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상상 이상으로 즐거웠고 의문이 해소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2. 독도교육의 실천가로서 교사

독도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했던 교사는 해마다 6학년을 담당하여 독도 수업을 실시했다. 외부에서 별도로 얻을 수 있는 독도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독도 수업을 진행했으며,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2022년은 학생들과 라포르가 잘 형성되었고, 학급은 17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독도연구자와 협력하는 독도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우선 전문가와의 협력 수업 2달 전부터 독도일기 쓰는 것을 안내했고, 학

생들이 원하는 분량만큼 매일 조금씩 독도일기를 쓰도록 권장하였다. 한 줄 쓰는 학생부터 별도로 공책을 마련하여 매일 한 쪽 분량을 작성해 오는 학생들까지 모두 자유의사에 맡겼다. 이때 독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 조사하려고 지도한 것이 아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독도 관련 역사 이야기를,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독도 바다 주변의 생물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자신의 흥미 분야에 대해 조사하도록 안내했다.

2주에 한 번씩 사회 시간을 이용하여 모듈별로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했으며, 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여 독도 수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15분을 넘지 않게 3회 정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수업에서 독도를 다룰 때에는 독도 관련 다양한 지식과 용어에 익숙한 듯 보였다.

수업은 교과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모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두 개의 활동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독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학습지에서 어떻게 독도를 지켜야 할지, 일본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지,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하여 ‘남이 하는 독도지킴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독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해 보았다.

전문가와의 협력 수업을 미리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3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 진도와 다른 프로젝트 수업으로 독도교육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에 형성했던 것도 독도 학습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포스터나 마스크트 만들기’ 등은 교과서에 아이디어가 제공되어 있어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많이 고민하여 애정을 담은 마스크트가 완성되도록 지도했다. 이 마스크트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도 별도로 할애했는데,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교과서 수업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외부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강의를 경청했다. 강의를 잘 듣고 ‘독도 수업을 마치며’라는 활동지를 활용해 배운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고 독도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때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교과서 내용과 스스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독도강의 내용 중에서 찾아보도록 했다. 그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 놀라웠고 학생들이 수업에 매우 진지하게 참여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교과서에서 더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느낀 점들을 잘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고 효과적인 독도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2022년의 독도 수업에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수업이라는 대전제하에 독도일기를 사전에 써보는 활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느 해와 달리 학생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독도의 자연, 경제적 가치, 역사적 사실 등에 각기 다른 관심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관심을 활용해 독도에 대한 ‘부분 전문가’가 되어 보도록 하는 시도가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분에서 전체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독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런 시도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권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6학년 2반 학생들이 독도 사랑을 위한 자신들의 깨알 아이디어를 잘 실천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의 기초·기본을 잘 형성하고, 나아가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면, 독도는 암울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IV. 맺음말

20세기 이래 한일 간에 독도 이슈는 여러 차례에 걸쳐 요동쳤다. 주요 사건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 명기를 둘러싼 논쟁,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 100주년을 맞아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한 것,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지리적 분야에 독도(竹島)를 명기한 것 등이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독도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독도 연구자들은 독도 내용학 연구 이외에 독도 교육학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도교육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판적 경향을 보이며,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독도 수업의 실천 사례 연구는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독도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며, 학습자와 실천 교사의 수업 소감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다가 교사는 협력자로서 외부의 독도연구자를 교실로 초대하여 독도 수업을 풍요롭게 실천하고자 궁리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2~3차시 분량의 독도 수업을 총 8차시로 설계했으며, 수업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수업이다.

독도 수업은 서울반포초등학교 6학년 2반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독도 내용 이외에 동기부여 및 수업의 안내로서 독도일기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독도 홍보자료 만들기,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독도특강 및 질의응답, 수업의 마무리로서 학생들의 활동지 작성 및 소감 발표하기 등을 추가하였다.

교사가 진심으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때, 교사는 그들의 수업 태도와 성취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의 독도 내용을 모두 설명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독도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독도일기

쓰기와 모둠 토론 활동 기회를 자주 제공하였다. 그것은 효과적이었고 학습자 스스로 독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기사들도 검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교과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진도와 상관없이 독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주 교과서의 독도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독도에 대해 알고 지켜야 하는 주체가 바로 ‘학생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수업의 주안점을 두었다.

교사가 설계했던 독도 수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고, 학습자는 꼬마 독도전문가가 되었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지도자 및 안내자 역할에 충실했으며,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독도 수업에 임했다. 그들은 독도를 알기 위해 개인 및 모둠별로 열심히 조사하여 발표했으며, 전문가의 독도강의와 질의응답에도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목표대로 학생들은 일본이 독도에 관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사

이 원고는 2022년 서울반포초등학교 6학년 2반에서 이루어진 총 8차시 독도 수업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 준 권도희, 김승연, 김재준, 김진욱, 김태윤, 김하늘, 박정하, 박진오, 안지원, 유지효, 윤리원, 윤지훈, 이도근, 정석준, 정현우, 조민준, 최도윤 학생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 _____, 2022,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2』, 서울: (주)지학사.
- 김의순, 2014, 「교과와 예술을 통합한 수업의 실제-“독도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제37권.
- 김지현, 2017, 「프로젝트기반학습을 활용한 사회과 융합 독도 수업 실천 사례 연구」, 『사회과수업연구』 제5권 제2호.
- 박현진, 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 송휘영, 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학보』 제68호.
- 심정보, 2018,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독도연구』 제24호.
- _____, 2022, 「한국에서 독도교육의 연구 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30권 제1호.
- 정효영·김진봉, 2022,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 주제 및 수업 사례 연구 -독도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논집』 제58권.
- 조철기, 2014, 『지리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서울: 푸른길.
- 한동균·남경희, 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과융합형 독도수업 모델 개발과 실천」, 『영도해양연구』 제14권.

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함에 따라 반일 감정은 절정에 달했다. 이에 한국의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게다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의 독도교육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도를 주제로 하는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독도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나아가 실천 교사와 학습자들의 독도 수업 소감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2~3차시 분량에 해당하는 독도 수업을 총 8차시로 설계하였다. 수업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수업이며, 수업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교사는 교과서의 독도 내용 이외에 동기부여 및 수업의 안내로서 독도일기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독도 홍보자료 만들기,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독도특강 및 질의응답, 수업의 마무리로서 학생들의 활동지 작성 및 소감 발표하기 등을 추가하였다.

독도 수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고, 학습자들은 꼬마 독도전문가가 되었다. 수업에서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했으며, 학습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도 수업에 임했다. 학생들은 독도를 알기 위해 개인 및 모둠별로 열심히 조사 및 발표를 하고, 전문가의 독도강의와 질의응답에도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목표대로 학생들은 일본이 어떠한 독도 관련 도발을 하더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제어〉

독도, 사회 교과서, 수업 설계, 수업 실천, 독도 전문가, 수업 소감

ABSTRACT

Collaboration with Experts for Teaching About Dokdo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Shim, Jeong Bo(Associate Professor, Seowon University)
Park, You Mi(Teacher, Seoul Apgujeong Elementary School)

Since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Japan's provocation against Dokdo has worsened Korea-Japan relations. In particular, as the Japanese government described Dokdo as its territory in school curricula and textbooks,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reached its peak.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as further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addition, research projects on Dokdo education have been undertaken actively, focusing on educational policies, curricula, and textbooks. However, research on the practice of school education about Dokdo has been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implement learner-centered education about Dokdo,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teacher and textbook-centered teaching method,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okdo education.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derive educational significance by analyzing how teachers and learners feel about their Dokdo education experience.

This study has redesigned the two lessons about Dokdo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textbooks into a total of eight lessons. The teaching method is a learner-centered inquiry class and classe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11 to December 9, 2022. In addition to the content about Dokdo in the textbook, the teacher explained how to write Dokdo diaries to motivate the students and to give them some guidance. The students created promotional materials on Dokdo as an artistic activity, and external experts gave special lectures and had Q&A sessions. At the end of the class, student activity papers were written and the students presented their impressions.

The Dokdo class was completed as planned and the learners have become little Dokdo experts. The teacher acted as a guide, and the learners participated proactively in the Dokdo class. The students worked hard for their research and delivered individual and group presentation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Dokdo. All of the students showed active participation during the expert lectures and Q&A sessions. Most of all, the students showed a strong will to protect Dokdo no matter what kind of provocations Japan makes.

Keywords

Dokdo, social studies textbook, lesson design, class practice, Dokdo experts, students' impressions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교육

—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중심으로

엄태봉 대전대학교 강의교수

- I. 머리말
- II.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경위
- III.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 IV.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 V.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과 학습지도요령 해설(學習指導要領解説, 이하 ‘해설서’)을 중심으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독도,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¹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 ‘소련과 러시아의 불법 점거’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영토 교육을 통해 일본 학생들에게 영토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특히 2010년대 초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을 계기로 영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특히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등의 취지를 기술해 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외교적 이슈가 되었고, 이른바 교과서 문제를 발생시켰다.² 이로 인해 독도 관련 기

* 논문 투고일: 2023.4.8, 심사 완료일: 2023.5.15, 재심사 완료일: 2023.5.30, 게재 확정일: 2023.6.2.

1 본고에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본 명칭(다케시마, 북방영토)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교과서 문제가 외교적 이슈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독도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일본의 영토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고, 이것이 일선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주로 검토했다(김영수, 2021. 「독도 관련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제60권 제1호; 홍성근, 2021. “일본

술은 교과서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또 다른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선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기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과 독도 관련 기술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본 정부의 영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영토 교육의 전체상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섬들에 대한 영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內閣官房領土·主權対策企画調整室)’을 통한 영토 문제 대응, ‘영토·주권 전시관(領土·主權展示館)’을 통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영토 문제에 관한 홍보·전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독도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본 정부의 영토 교육의 실상을 모두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또 다른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를 검토하는 작업은 일본 정부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21호; 송취영, 2020.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독도연구』제28호; 임태봉, 2020a.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비교일본학』 제49집; 임태봉, 2020b.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와 독도 문제-2020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75집; 임태봉, 2020c.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9호; 김병연·이상균, 2019.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7호; 이우진, 2018.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본 일본의 영토교육-개정 교육법'부터 '2018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독도연구』 제24호; 홍성근·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제16호;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제8호;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제1호 등).

가 실시하고 있는 영토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토 교육이나 교과서 문제 측면에서 센카쿠열도를 연구 주제로 삼은 선행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2010년 9월에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중국의 어선과 이를 단속하던 일본의 순시선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중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정치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대립을 분석한 연구,³ 둘째,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인식과 대응, 정치 과정을 분석한 연구,⁴ 셋째,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국내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 연구⁵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참조하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토 교육, 즉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

3 김기주·황병선, 2013,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남궁영·김원규,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제1호; 이명찬,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1호; 정광호, 2013,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 『한국군사학논집』 제69집 제2권; 河村範行, 2014, 「尖閣諸島領有権問題と日中関係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考察」, 『名古屋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紀要』第46号; 齊藤孝弘, 2015, 「中国の台頭と日本の安全保障—新たな安全保障環境構築に向けて—」, 『国際情報研究』12巻 1号; 서인연, 2020, 「센카쿠제도 관련 중일 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집.

4 최은봉·석주희, 2012,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해양정책 - 갈등, 대응,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15권 제1호; Karol Zakowski, 2014, 「年尖閣諸島国有化をめぐる決定過程の一考察」, 『法と政治』 64(4); 이정환, 2018, 「이시하라 스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 신정화, 2017, 「일본의 센카쿠열도 정책의 내용과 변화: 현상 유지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6호; 윤석상, 2019, 「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일본의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1호.

5 김기정·정진문, 2010,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 분석: 군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제2호; 尹埈, 2012,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독도연구』 제13호; 呂秀一, 2013, 「다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 『독도연구』 제15호; 장성호, 2014,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의 분쟁 대응방식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4호; 이동률, 2015,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이기현, 2016, 「중국의 다오위다오 대응 전략 변화 원인 분석: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열도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3월, 2017년 3월 개정)과 해설서(2008년 7월, 2014년 1월, 2017년 6월 개정),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09년 3월, 2018년 3월 개정)과 해설서(2009년 12월, 2014년 1월, 2018년 7월 개정)이며, 해당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⁶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역사적 경위를 검토하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II.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경위

1. 근대 시기의 류큐 귀속 문제와 일본의 센카쿠열도 편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그 전사(前史)로서 1880년대 초에 청일 간에 진행된 류큐국(琉球國) 귀속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류큐국은 오키나와현(沖縄縣)에 존재했던 국가로서 12세기에 소국가들이 출현했으며, 14세기에 난잔(南山), 슈잔(中山), 호

6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같이 여러 과목의 사회과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고, 학년마다 하나의 사회과 교과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고, 2017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관련 기술이 등장했는데, 모든 학년이 아닌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와 같이 전면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기로 한다.

쿠잔(北山)의 세 개의 국가가 존재했던 산산 시대(三山時代)를 거쳐 1429년에 류잔이 이들을 통일하면서 류큐국이 탄생했다. 이후 류큐국은 명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에 속하는 한편, 조선, 명,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600년대에 사쓰마번(薩摩藩)의 침략으로 공물을 바치게 되는 등 일본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으며, 180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정부가 두 번에 걸쳐 ‘류큐 처분’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오키나와현이 설치되면서 류큐국이 멸망하고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류큐국이 일본으로 편입되는 사건은 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일 양국은 1880~1881년까지 류큐국의 귀속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청은 류큐 본섬과 그 주변을 류큐국으로 삼고, 류큐 본섬 북부에 위치한 아마미 군도(奄美群島)를 일본의 영토로, 남부에 위치한 미야코섬(宮古島)과 아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를 청의 영토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은 이에 반대하며 류큐 본섬과 아마미 군도 등을 일본의 영토로, 미야코섬과 아에야마 제도를 청의 영토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청은 이에 반대했다. 이와 같이 류큐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894년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전쟁 당시 류큐 귀속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았고, 시모노세키 강화회의에서도 청일 양국은 류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큐 지역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⁷

청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를 편입했다. 1885년부터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을 통해 센카쿠열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오키나와현이 센카쿠열도에 국표(國標) 설치에 대해 문의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1890년과 1893년에 오키나와현이 다시 이를 문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7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탄생한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한다. 그 예로 폐번치현(廢藩置縣) 정책이 있었는데,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 류큐국을 류큐번(琉球藩)으로 만들어 일본의 속령으로 삼았고(제1차 류큐 처분), 1879년에는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했다(제2차 류큐 처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류큐국이 멸망하고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8 송한용, 2012, 「尖閣列島/釣魚島 영유권분쟁의 역사적 추이」,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496쪽.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가 1894년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개척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표 설치, 민간인의 센카쿠열도 개척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센카쿠열도에 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895년 1월 14일에 각의 결정을 통해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⁹ 1894년 7월 청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년 12월 말에 강화회의를 준비했는데, 1885년 이후와 같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청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⁰ 청일 전쟁 당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센카쿠열도는 1970년대 초까지 특별한 분쟁 없이 일본의 영토로 존속하게 되었다.

2. 일본 패전 이후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센카쿠열도는 미국의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일본은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되찾게 되는데, 센카쿠열도는 동 조약 체결에 앞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50년 9월에 시행한 ‘군도조직법(群島組織法)’에 따라 야에야마 제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동 조약에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명확한 조문은 없었지만, 류큐열도 미국민정부(琉球列島米國民政府)가 1952년 4월에 시행한 포령(布令) 제68호의 ‘류큐정부장전(琉球政府章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지리적 관할 구역에 센카쿠열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센카쿠열도는 미국의 관할하에 놓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센카쿠열도를 관할

9 ‘어부들의 의견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우오쓰리시마(魚釣島), 구바시마(久場島)를 관할할 필요가 있으며, 오키나와현 지사의 신청대로 표항(標杭) 설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이 각의에 따라 우오쓰리시마와 구바시마가 오키나와현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野村靖, 1895, 『標杭建設二関スル件(秘別一三三號講議書および閣議決定)』, https://www.spf.org/islandstudies/jp/wp/infolib/docs/01_history013_add01.pdf (검색일: 2023.03.26)].

10 이성환, 2014, 『근대 일본의 팽창과 영토문제 - 센카쿠, 독도, 간도』, 『일본역사연구』 제40집, 13-14쪽.

하는 상황에서 센카쿠열도가 중일 양국 간의 영토 문제로 크게 분쟁화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센카쿠열도는 중국/대만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로 다시 부상하게 된다. 1970년 6월과 8월에 류큐열도 미국민정부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대만 정부가 같은 해 9월에 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 정부도 곧바로 센카쿠열도가 오키나와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대만 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1968년 초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가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대만과 중국이 잇달아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고조되었다.

한편 오키나와 반환 협정(1971년 6월 17일)이 체결되면서 이듬해 5월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했고, 오키나와에 포함되어 있었던 센카쿠열도 또한 반환되었다. 중일 양국은 1972년 하반기부터 국교정상화 회담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고, 9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교를 정상화했다. 당시 일본은 센카쿠열도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지금 센카쿠열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문제는 석유가 그 이유인데,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대만도 미국도 문제시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센카쿠열도 관련 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¹¹ 이후 1978년 8월에 도쿄에서 체결된 중일평화우호조약 관련 논의에서도 덩샤오핑(鄧小平) 부총리가 ‘센카쿠열도 문제를 10년간 보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세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¹² 이와 같이 중일 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는데, 여기

11 石井明他 編, 2003, 『記録と検証日中国交正常化・日中友好条約締結交渉』, 東京: 岩波書店, 68쪽.

12 浦野起央 외, 2001, 『釣魚臺群島(尖閣諸島)問題研究資料匯編』, 東京: 刀水書房, 46-47쪽.

에는 당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중일 양국의 암묵적인 이해가 작용을 했고, 중국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에 집중해 나갔다.¹³

이와 같이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는 1992년에 중국이 영해법을 제정하는 시기까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중일 양국이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동 문제 해결을 보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큰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1996~2000년까지 동 문제가 쟁점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보수화가 강화되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 정부, 민간단체, 정치인들이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한편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가 첨예화되는 시기였다.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강경한 대응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협력은 동 문제를 국가 레벨에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해양 정책을 구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¹⁴

이 시기 중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가 중일 간의 가장 큰 분쟁으로 등장한 계기는 바로 2010년 9월 초에 중국의 어선과 일본의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에서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을 구속하고 일본 국내법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일본 언론과 우익단체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적인 압력을 가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9월 말까지 중국 선박과 선원을 귀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게다가 11월 초에 중국의 어선과 일본의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중일 양국 간에 크게 분쟁화된 것은 당시 민주당 정권이 중일 신어업협정(1997년 체결)을 통한 중국 불법 어선 강제 퇴치, 센카쿠열도 상륙 중국인 강제 송환 등의 암묵적인 합의

13 이명찬, 2013, 앞의 글, 273쪽.

14 최은봉·석주희, 2012, 앞의 글, 51-52쪽.

15 송한용, 2012, 앞의 글, 514-515쪽.

를 깨고 중국 선원들을 구속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¹⁶ 이 사건 이후에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마찰은 지속되었다. 2010년 12월 초에 일본의 자위대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오키나와 주변 수역과 동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2011년 7월 초에는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센카쿠열도 주변 상공에서 대치하기도 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시(石垣市)는 2010년 12월 초에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을 제정하고 한 달 후에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2012년 3월에 센카쿠열도 주변 무인도에 명칭을 붙이는 작업을 끝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부 사이트에 센카쿠열도 관련 중국 명칭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중일 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해상조난자 구조를 위한 관련 협정(海上遭難者を救助するための関連協定)’을 체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한편,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만드는 데에 합의했고, 중일 양국 합선의 상호 방문도 재개하기로 했다.¹⁷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 개선 노력은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이는 2012년 4월 중순에 도쿄도 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가 센카쿠열도 매입을 발표한 일과 이후 일본 정부가 9월 초에 센카쿠열도를 매입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¹⁸

16 최희식, 2013,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 46쪽.

17 伊藤剛 외, 2012, 『民主党政権誕生以降の日中関係二〇〇九—二〇一二年』, 『日中関係史1972—2012 I 政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496쪽.

18 센카쿠열도 매입과 관련하여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나선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통해 내셔널리즘을 선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당을 창당하여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서였다(河村範行, 2014, 앞의 글, 24쪽). 노다 총리는 2012년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 저자세 외교(弱腰外交)라는 비판을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 당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분열 상태에 빠졌고,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지 않을 경우 당내에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Karol Zakowski, 2014, 앞의 글, 138-139쪽).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는 중일 양국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반일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9월 15일에는 급기야 일본계 슈퍼마켓이 중국인들에게 습격당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9월 말에 센카쿠열도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배치시키고, 12월 중순에는 항공기를 센카쿠열도 영공에 진입시키기도 했다. 2013년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초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 고유의 영토이자 중국의 영토주권이 걸린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언급했으며, 11월 말에는 센카쿠열도의 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중국 군함의 접근, 홍보 사이트 개설 등으로 대응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이어졌다. 2013년에는 센카쿠열도 등 낙도(落島) 보호를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계획 발표(9월), 센카쿠열도 방위를 위해 오키나와에 대형순시선 배치(10월), 센카쿠열도 유사 사태에 대비한 실전 훈련 실시(11월), 2014년에는 센카쿠열도 관련한 미일 상설 협의기관 설치 합의(3월), 센카쿠열도 인근에 위치한 요나구니섬(与那国島)의 레이더 기지 건설 공사 착수(4월), 2015년에는 해상보안청의 센카쿠열도 전담경비체제 구축 계획 발표(3월)와 같이 군사적·물리적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강경한 조치와 함께 센카쿠열도를 홍보하는 다국어 영상물을 제작했고(2013년 10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센카쿠열도에 관해 기술하게 했으며, 일본의 영유권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2014년 1월)하는 등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응도 실시했다.¹⁹⁾

센카쿠열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는 2012년 12월에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인식과 정책이 반영되었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협상의 여지는 없으며,

19 박항기, 2015,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236-237쪽.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강경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²⁰ 이러한 인식은 2013년 12월에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라는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57년 5월에 작성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대해서(国防の基本方針について)’를 대체하는 것으로 당면 과제는 크게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과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과제’로 나뉘어 있다. 후자에는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다양한 지역에서의 적극적 진출’이라는 과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①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대·강화하고 있다. ②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③ 양안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통한 안정화와 군사적 균형의 변화에 의한 잠재적인 불안정이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¹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내용은 ②에서 “센카쿠열도 부근의 영해 침입·영공 침해, 독자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강경한 조치들이었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²²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중일 양국 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서 일본의 영토 교육의 실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 安倍晋三, 2013,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完全版』, 東京: 文藝春秋, 125쪽.

21 内閣官房ホームページ, 2013, 『国家安全保障戦略(概要)』, <https://www.cas.go.jp/jp/siryou/131217/anzenhoshou/gaiyou.html> (검색일: 2023.03.26).

22 添谷芳秀, 2017, 『日本の外交「戦後」を読みとく』, 東京: ちくま学芸文庫, 171쪽.

Ⅲ.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1. 중학교 지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017년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센카쿠열도에 관한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 과목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²³이라는 남쿠릴열도 관련 기술만 실렸지만,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 과목은 물론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등 모든 중학교 사회 과목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

지리 과목에서는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해양 국가라는 특색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루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⁴ 2008년 학습지도요령과 비교하면, 남쿠릴열도 관련 기술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센카쿠열도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되었다. 특히 일본이 독도와 남쿠릴열도를 둘러싸고 한국, 러시아와의 영역 문제, 즉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루도록 기술한 반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즉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과 같이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2008년 해설서에는 없었지만, 2014년 해설서에는 새롭게 등장했다.

23 文部科学省, 2008, 「中学校学習指導要領」, 21쪽.

24 文部科学省, 2017,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이하, 「2017年中学校学習指導要領」), 46쪽.

2017년 개정 전까지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것은 2008년 학습지도 요령이었는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2014년 해설서에 등장한 것이었다. 이는 지리 과목뿐만 아니라, 역사 과목, 공민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 중학교 해설서 중 지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5

연도	기술 내용
2008	없음
2014	… 그때, 「북방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에서,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와 다케시마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러시아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우리 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 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017	…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하는 것(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고, 우리 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점도 다룬다”(내용의 취급)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7년에 개정된 해설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2017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한층 더 강화되

25 文部科学省, 2014,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及び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 公民編(平成26年1月一部改訂前後対応表)」(이하, “2014년 중·고등학교 학습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1쪽 및 文部科学省, 2017,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会編」(이하, “2017년 중·고등학교 학습指導要領解説社会編”), 42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일출 필자).

었다.

이와 같이 중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며,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4년과 2017년 해설서를 비교했을 때,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과 독도 관련 기술이 큰 대조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독도 관련 기술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에게 각각 항의와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불법 점거’, ‘항의’, ‘반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본의 유효 지배’, ‘영유권 문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독도 관련 기술과는 온도차가 크다. 이와 같이 대조되는 기술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2. 중학교 역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과목에는 없었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등장했다. 메이지 시기 당시 이루어진 부국강병 정책과 식산흥업정책과 관련하여 “... 영토의 확정 등을 다루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를 다루면서, 다케시마, 센카쿠열도 편입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⁶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획득한 영토를 기술할 때 센카쿠열도를 편입한 경위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해설서의 역사 과목에서는 <표 2>와 같은 변화가 보인다.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2008년 해설서에는 없었지만, 지리 과목과 함께 2014년에 개정된 해설서에는 새롭게 추가되었다.

26 文部科学省, 2017, 「2017年中学校学習指導要領」, 56쪽.

〈표 2〉 중학교 해설서 중 역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²⁷

연도	기술 내용
2008	없음
2014	... 「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하여, 류큐 문제나 홋카이도 개척을 다룬다. 그 때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센카쿠열도를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우도 다룬다. 또한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다룬다.
2017	... 「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하여, 류큐 문제나 홋카이도 개척을 다룬다. 그 때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계속 우리 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이 설정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다루고, 동시에 다케시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우도 다루며, 이러한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다룬다.

2014년 해설서에서는 당시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제법상 정당하게 영토로서 편입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었으며, 이와 함께 2017년 해설서에서도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라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중학교 해설서의 역사 과목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 과목에서는 센카쿠열도와 독도 관련 기술 모두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로 영토로 편입한 경우를 다룬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술한 지리 과목에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지리 과목에서와 같이 대조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3. 중학교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공민 과목에는 지리 과목, 역사 과목과 동일하게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공민 과목에서는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나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센카쿠열

27 文部科学省, 2014, 「2014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2쪽 및 文部科学省, 2017, 「2017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編」, 113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밑줄 필자).

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⁸ 독도와 남쿠릴열도와 관련한 남아 있는 문제, 즉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한 반면,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센카쿠열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전술한 지리 과목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표 3>은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4년 해설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표 3> 중학교 해설서 중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²⁹

연도	기술 내용
2008	없음
2014	... 그때,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의 학습 성과를 토대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도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관해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나 현 상태에 이른 경우, 우리 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 우리 나라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 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017	...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의 「영역의 범위와 변화 및 그 특색, 역사적 분야의 「영토의 확정」 등의 학습 성과를 전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 나라도,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단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영토 문제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우,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었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기도 했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나가는 등 불법 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 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황에 이른 경우,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리 과목과 동일하게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주요 내용이다. 해당 내용들은 2017년 해설서에서도 대부분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센카쿠열

28 文部科学省, 2017, 「2017年中学校学習指導要領」, 62쪽.

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특징으로 지리 과목과 같이 독도 관련 기술과 큰 대조가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고, 불법 점거로 인해 어업과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과거에 선박 나포 등으로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미해결 문제’, ‘불법 점거’, ‘제한’, ‘사상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인해 일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과 대조되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IV.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1. 고등학교 지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8년에 개정되었으며, 2017년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독도, 센카쿠열도와 함께 남쿠릴열도도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2009년 학습지도요령의 지리 과목에서는 “...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것”(지리A), “...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이해시킨다”, “... 영토 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

29 文部科学省, 2014, 「2014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3쪽 및 文部科学省, 2017, 「2017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編」, 161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밑줄 필자).

문제도 다를 것”(이상, 지리B)³⁰으로 기술했을 뿐 영토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상도 기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 과목뿐만 아니라, 역사 과목, 공민 과목에서도 센카쿠열도, 독도, 남쿠릴열도가 명기되었다.

지리 과목의 지리총합과 지리탐구³¹에서는 공통적으로 “또한 우리 나라의 해양국가라는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케시마나 북방 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루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를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² 2008년 학습지도요령이 단순히 ‘일본의 영역 문제, 영토 문제를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지만,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는 센카쿠열도, 독도, 남쿠릴열도가 명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섬들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센카쿠열도의 경우는 영토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뿐만이 아니라 독도, 남쿠릴열도 관련 기술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 중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009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4년에 개정된 해설서에는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9년 학습지도요령은 2018년 개정되기 전까지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었는데,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2014년 해설서에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는 전술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센카쿠열

30 文部科学省, 2009,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27쪽, 28-29쪽.

31 2018년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서 과목이 개편되었다. 기존의 세계사A/B, 일본사A/B, 지리A/B,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에서, 개정 후 지리총합, 지리탐구, 역사총합, 일본사 탐구, 세계사 탐구 및 공공(公共), 윤리, 정치·경제로 개편되었다. 이 중 지리총합, 역사총합, 공공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32 文部科学省, 2018,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이하, 「2018年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51쪽, 55쪽.

33 文部科学省, 2014, 「2014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6-7쪽 및 文部科学省, 2018, 「【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이하, 「2018年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49쪽, 100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미출 필자).

도 관련 기술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해설서의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등장한 것과 동일했다.

〈표 4〉 고등학교 해설서 중 지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³³

연도	기술 내용
2009	없음
2014	〈지리A〉 … 「일본의 영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를 것,(내용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의하고, 우리 나라가 당면한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나 경제수역문제 등을 다루며, 국경이 가진 의의나 영토 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때, 우리 나라가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처에 걸쳐 항의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깊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 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지리B〉 … 「(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의 현황이나 동향을 다룰 때에 일본의 영토 문제도 다룰 것.(내용의 취급)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가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 이하 상기(지리A)의 기술과 동일 ….
2018	〈지리 총합〉 …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 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를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당면한 다케시마나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란,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영토 문제나 경제수역문제 등을 다루며, 국경이 가진 의의나 영토 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나라가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나 북방영토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처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고, 우리 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룬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지리 탐구〉 상동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2014년 해설서에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개정 해설서에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해설서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중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고등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과 2017년 중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과 독도 관련 기술을 비교했을 때 후자에서

영토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기술이 눈에 띄었는데, 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2014년과 2018년 고등학교 해설서의 지리 과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해설서와 같이 대조되는 기술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2. 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009년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과목에는 지리 과목과 동일하게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는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역사총합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일본사 탐구는 메이지 유신과 국민국가의 형성 등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영토의 확정 등을 다루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를 다루면서, 동시에 다케시마, 센카쿠열도 편입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⁴ 이는 2017년 중학교 해설서의 역사 과목 기술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해설서의 역사 과목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정리하면 <표 5>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점차 그 기술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고등학교 해설서 중 역사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35

연도	기술 내용
2009	없음
2014	<p><일본사A> … 메이지 초기 외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외정책이나, 우리 나라의 영토가 러시아 등과의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고찰한다. … 또한,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센카쿠열도를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다룬다.</p> <p><일본사B> … 또한 우리 나라의 영토가 러시아 등과의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고찰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센카쿠열도를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다룬다.</p>

34 文部科学省, 2018, 「2018年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62쪽, 69쪽.

35 文部科学省, 2014, 「2014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4-5쪽 및 文部科学省, 2018, 「2018年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 149쪽, 205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밑줄 필자).

2018	<p>〈역사 총합〉 … 또한 ‘영토의 확정’(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영토가 러시아와 등과의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룬다. 그때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토로후섬)가 일관되게 우리 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이 설정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다루고, 동시에 다케시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다루며, 이러한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사 탐구) 상동</p>
------	---

2014년 해설서에는 당시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제법상 정당하게 영토로서 편입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2018년 해설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실렸고, 이와 함께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라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해설서의 역사 과목에서 기술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또한 센카쿠열도와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기술이 있는데,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지리 과목에서 보이는 대조적인 기술은 없었다. 이 역시 중학교 해설서의 역사 과목과 동일하다.

3. 고등학교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2018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공민 과목에서도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공민 과목의 공공과 정치·경제에서 국가 주권 및 영토와 관련하여 “... 우리 나라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나 북방 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이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다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⁶ 독도와 남쿠릴열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전술한 중학교 해설서의 공민 과목과 동일하다.

36 文部科学省, 2018, 「2018年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83쪽, 89-90쪽.

한편 <표 6>은 고등학교 해설서의 공민 과목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지리 과목, 역사 과목과 동일하게 2009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4년과 2018년 해설서에는 기술되었다.

<표 6> 고등학교 해설서 중 공민 과목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³⁷

연도	기술 내용
2009	없음
2014	<현대사회> …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영토 문제에 대해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관해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나 현 상태에 이른 경우, 우리 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킨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 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이해시킨다. <정치·경제> 상동
2018	<공공> … 그때, 영토(영해, 영역을 포함)에 대해서는, 중학교 사회과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 나라에도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구나시리섬, 에도로후섬)에 관해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영토 문제 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른 경우 및 도항이나 어업,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 나포, 선원 억류가 이루어졌고, 그중 과거에는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 나라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 국제법 및 국가기구의 역할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황에 이른 경우, 우리 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경제> 상동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 ‘일본의 유효한 지배’, ‘영유권 문제 존재하지 않음’이 주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2018년 해설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2018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는 경향은 중학교 해설서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중학교 해설서의 공민 과목에서 나타난 독도와와의 대조적인 기술이 고등학교 해설서의 공민 과목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중학교 해설서에서와 같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센카쿠열도의 경우 ‘영유

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은 독도 관련 기술과 대조되면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³⁷

V. 맺음말

이 글은 일본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였다. 이하에서는 머리말에서 제기했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변화가 어떠한지, 독도 관련 기술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 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지리 과목에서 남쿠릴열도만 언급이 되었는데, 2017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중학교 해설서의 경우도 2008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4년과 2017년 해설서에는 기술되었다. 2014년 해설서의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17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이 추가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서 센카쿠열도, 독도, 남쿠릴열도 관련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다. 2009년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리 과목에서만 '영토 문제를 다룰 것' 정도의 기술이 있었고 그 대상조차 명기되지 않았지만, 2018년 학습지도요령에는

37 文部科学省, 2014, 「2014年中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一部改訂」, 8-9쪽 및 文部科学省, 2018, 「【公民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 63쪽, 149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밑줄 필자).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가 명기되었다. 고등학교 해설서의 경우도 2009년 고등학교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없었지만, 2014년에 개정된 해설서에는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18년 해설서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 또한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영토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보이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들이 일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7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는데, 지리 과목과 공민 과목에서는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 과목에서는 ‘영토의 확정과 관련하여 센카쿠열도의 편입을 다룬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기술되었다.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2017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기술 자체가 거의 동일했다. 중학교 해설서와 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도 이와 같다. 2014년 중·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대체로 비슷하며, 2017년 중학교 해설서와 2018년 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이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기술 자체가 거의 동일했다. 이와 같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그리고 중학교 해설서와 고등학교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일체화되어 왔다.

셋째,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각각 소구점(訴求點)이 달랐으며, 기술의 정도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며,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독도 관련

기술은 관련 과목 모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누차 항의하고 있다’(지리 과목),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역사 과목), ‘미해결 문제가 존재하며, 일본은 피해를 입었지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공민 과목)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한국의 불법 점거’, ‘항의’, ‘미해결 문제 존재’, ‘일본의 피해’ 등의 표현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에 비하면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즉 영토 문제가 없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정도의 기술이다. 기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분량 또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독도 관련 기술보다 적다. 이와 같은 센카쿠열도와 독도 관련 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개정될 때마다 관련 기술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각각 강조하는 소구점이 각각 달랐고, 관련 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도 있으며, 이로 인해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영토 문제가 없다는 의도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잇달아 개정하면서 영토 문제 관련 기술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기술들이 일선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 문제 관련 기술에 영향을 끼치면서 영토 교육의 강화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일본의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독도 관련 기술에 비해 그 중요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영토 교육 강화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방향성과 전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일본의 일선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실제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기정·정진문, 2010,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 분석: 군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제2호.
- 김기주·황병선, 2013,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2호.
- 김병연·이상균, 2019,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7호.
- 김영수, 2021, 「독도 관련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제60권 제1호.
- 남궁영·김원규,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제1호.
-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제1호.
- 呂秀一, 2013, 「다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 『독도연구』 제15호.
- 박향기, 2015,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 서인원, 2020, 「센카쿠제도 관련 중일 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집.
-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제8호.
- 송한용, 2012, 「尖閣列島/釣魚島 영유권분쟁의 역사적 추이」,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 송휘영, 2020,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독도연구』 제28호.
- 신정화, 2017, 「일본의 센카쿠열도 정책의 내용과 변화: 현상 유지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6호.
- 엄태봉, 2020a,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비교일본학』 제49집.
- _____, 2020b,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와 독도 문제-2020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75집.
- _____, 2020c,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9호.

- 尹 虎, 2012,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독도연구』 제13호.
- 이기현, 2016, 「중국의 다오위다오 대응 전략 변화 원인 분석: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 이동률, 2015,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다오위다오(钓鱼岛)/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 이명찬, 201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1호.
- 이성환, 2014, 「근대 일본의 팽창과 영토문제 - 센카쿠, 독도, 간도」, 『일본역사연구』 제40집.
- 이정환, 2018,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
- 이우진, 2018,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본 일본의 영토교육-‘개정 교육법’부터 ‘2018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독도연구』 제24호.
- 윤석상, 2019, 「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일본의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1호.
- 장성호, 2014,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의 분쟁 대응방식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4호.
- 정광호, 2013,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 『한국군사학논집』 제69집 제2권.
- 최은봉·석주희, 2012,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해양정책 -갈등, 대응,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15권 제1호.
- 최희식, 2013,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
- 홍성근, 2021,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문제점-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21호.
- 홍성근·서종진, 2018,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제16호.
- 安倍晋三, 2013,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完全版』, 東京: 文藝春秋.
- 石井明他 編, 2003, 『記録と検証日中国交正常化・日中友好条約締結交渉』, 東京: 岩波書店.

- 伊藤剛・高原明生, 2012, 「民主党政権誕生以降の日中関係二〇〇九-一二年」, 『日中関係史1972-2012 I 政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浦野起央・劉魁朝・植榮邊吉, 2001, 『釣魚臺群島(尖閣諸島)問題研究資料匯編』, 東京: 刀水書房.
- 河村範行, 2014, 「尖閣諸島領有権問題と日中関係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考察」, 『名古屋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紀要』第46号.
- Zakowski, Karol, 2014, 「年尖閣諸島国有化をめぐる決定過程の一考察」, 『法と政治』64(4).
- 齊藤孝弘, 2015, 「中国の台頭と日本の安全保障—新たな安全保障環境構築に向けて—」, 『国際情報研究』12巻1号.
- 添谷芳秀, 2017, 『日本の外交-「戦後」を読みとく』, 東京: ちくま学芸文庫.
- 文部科学省, 2008, 「中学校学習指導要領」.
- _____, 2014,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及び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 公民編(平成26年1月一部改訂前後対応表)」.
- _____, 2017,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 _____, 2017,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会編」.
- _____, 2018, 「【地理歴史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
- _____, 2018, 「【公民編】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解説」.
- _____, 2018,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
- 野村靖, 1895, 「標杭建設二関スル件(秘別一三三号請議書および閣議決定)」, https://www.spf.org/islandstudies/jp/wp/infolib/docs/01_history013_add01.pdf (검색일: 2023.03.26).
- 内閣官房ホームページ, 2013, 「国家安全保障戦略(概要)」, <https://www.cas.go.jp/jp/siryoku/131217anzenhoshou/gaiyou.html> (검색일: 2023.03.26).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도이다.

연구 결과,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점차 강화되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이전에는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되었을 때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공민 과목 모두에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각각 명기되었다. 해설서의 경우에도 2014년 개정 해설서에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2017년, 2018년 개정으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둘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지리 과목, 공민 과목), ‘영토의 확정과 관련하여 센카쿠열도의 편입을 다룬다’(역사 과목)는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관련 과목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기술되었다. 중·고등학교 해설서에서도 특히 2017년과 2018년 중·고등학교 해설서의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은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을 포함하여 거의 동일했다.

셋째,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을 독도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달랐으며, 강조하는 내용의 수준은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이 약했다.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센카쿠열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였고, 독도 관련 기술의 요점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국제법상 정당하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미해결 문제이며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였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주제어〉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영토 교육,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ABSTRACT

A Study on the Territorial Education About the Senkaku Islands in Japan: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Um, Tae Bong
(Lecture Professor, Daejin University)

The study results from the gradual strengthening of the descrip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bo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previous version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did not include any description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However,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pecific descriptions related to the islands were included in the subjects of geography, history, and civics. In the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4 revision. The statement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was added in the 2017 and 2018 revisions.

Secondly, the descriptions pertaining to the Senkaku Island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have been integrated. In the 2017 revision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gue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territorial issues do not exist” (subjects of geography and civics) and “Incorporation of the Senkaku Islands about territorial determination has been resolved” (subjects of history). The description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the descriptions related to the Senkaku Islands in 2017 and 2018 were almost the same, including the description that “Japan’s position is legitimate both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rdly, a comparison between the descriptions on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has shown that the level of emphasis on the former is noticeably weaker. The key points describ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regarding the Senkaku Islands are that they ar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and that there is no issu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key points in the descriptions on Dokdo are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the island,” “It was legitimately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 is an unresolved issue and Japan is working to resolve it peaceful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se descriptions highlight the fact that there are no territorial issues surrounding the Senkaku Islands.

Keywords

Senkaku Islands, issue of territorial sovereignty, territory education,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

자료소개



- **김수희** |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둔 시기, 제주해녀의 어업 활동 자료
- **정영미** |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이력서(履歷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둔 시기, 제주해녀의 어업 활동 자료

김수희 독도재단 교육연구부장

- I. 독도의용수비대와 제주해녀
- II. 1953년 독도 침입을 구술한 박옥랑 해녀
- III. 1954년 『日本海新聞』에 기록된 해녀어업 실태
- IV. 1956년 『동아일보』의 해녀 기사
- V. 1956년 제주도 ‘올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

I. 독도의용수비대와 제주해녀

제주해녀의 독도 물질은 1935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옛날부터 독도를 경영했다는 증거 자료로 1935년 독도에서 촬영된 제주해녀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본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강조하였다. 시마네현이 제작한 「죽도 학습 리플릿」에는 5~7월까지 해녀 4명이 3개월간 전복을 채취한 수입 결산서가 남아 있고 일본어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당시 독도어장을 소유한 죽도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는 강치가 남획되어 더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1935년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며 해녀를 고용해 전복 포획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자금 부족으로 1935년 한 번만 실행되었고 더 이상 해녀를 고용한 어업은 진행되지 않았다(〈자료1〉 참조).

해방 후 독도어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천에 깔린 것이 미역이었다고 전한다. 길이가 짧아 손질을 따로 해야 하는 육지 미역에 비해 독도 미역은 따서 그대로 말려도 길고 바다가 맑아 미역이 잘 자란다고 전하고 있었다. 독도 미역의 상품적 가치는 월등히 높았다.

1950년경 울릉도로 간 해녀는 울릉도 사람이 자신에게 “독도는 미역이 많이 나고 미역이 썩어 넘친다, 막 흘러넘친다. 미역이 너무 좋다”, “독도로 가라. 미역이 많아, 아무도 없는 섬”이라고 적극 권유해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¹ 독도어장의 경제적 가치는 미역이었고 울릉도인과 제주해녀 및 동해안어민들에게는 독도가 자신들의 어장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²

이러한 어장적 가치로 인해 독도어장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감과 이 귀한 어장을 보호하려는 수호

1 1952년경 독도에 도향한 제주해녀 박옥랑의 증언.

2 1948년 미군 독도폭격사건을 조사한 미군특별소청위원회는 독도가 동해안어민들에게 중요 어장임을 조사하였다. 정병준, 2011, 「독도 1947」, 돌베개, 201쪽

(자료 1) 「시마네현 죽도 학습 리플릿」

昔の竹島と日本との関わり

島根県告示

島根縣告示第四十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二度五十五分
 竹島(下) 緯度 日本縣所屬嚴島郡所管ト定マラル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松永武吉



隠岐の人たちによる竹島でのアシカ猟の様子です。(1935年)



漁業を行った隠岐の人たちです。雇われた朝鮮人の海女も写っています。(一九三五年) 下の収支決算書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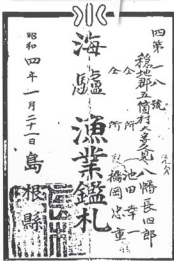
江戸時代初め、日本人が幕府の許可を得て鬱陵島で林業や漁業を行い、その行き帰りに現在の竹島で漁業を行っていました。1661(寛文元)年以降、現在の竹島についても幕府の許可を得て漁業が行われました。

明治30年代になると、日本人によるアシカ猟やアワビ・ワカメ漁が現在の竹島で本格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各地から竹島に漁に来るようになり、アシカの絶滅を心配した隠岐の中井養三郎は、竹島でのアシカ猟を許可制にするため、竹島を日本の領土とすることを政府に願い出しました。政府は、これまでこの国も竹島を自国の領土だとしていないこと、日本人しか実際に漁業を行っ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1905(明治38)年1月、竹島の領土編入を閣議決定しました。これを受けて、島根県は同年2月22日、竹島が島根県隠岐の管轄になったことを正式に告示しました。(左資料)以後、竹島での漁業は県の許可制となり、30数年続けられました。

韓国は、日本の竹島領土編入を「侵略(韓国併合)の第一歩」だと主張していますが、現在の竹島が韓国の領土であったことはなく、日本人による漁業が長く行われてきたことから、日本が竹島を領土編入したことが「侵略の第一歩」などではないことは明らかです。

国土地理院発表の現在の緯度経度
 北緯 37度14分
 東経 131度52分

島根県が発行したアシカ(海獺)猟の許可証です。



1935(昭和10)年 春(5月20日~7月10日) 収支決算書(契約30頭、境港渡し1頭140円)

収入の部		現在価値換算	
アシカ捕獲	29頭	4,060万円	2,030万円
干しアワビ		800万円	400万円
計		4,860万円	2,430万円
支出の部			
発動機諸経費		800万円	400万円
人件費(漁夫)	13人	1,300万円	650万円
海女	4人	600万円	300万円
雑費		500万円	250万円
米代		180万円	90万円
小艇船	3隻	250万円	125万円
利益金		1,230万円	615万円
計		4,860万円	2,430万円

県から許可もらった権限(池田八幡さんの漁業の決算書です。当時の一円を現在の五千円として計算しました。(小学) 校教員の初任給の比較換算による)

島根縣, 竹島學習リフレット, 「竹島」, 2013年(1935年 제주해녀와 독도어업경영자료)

의식이 나타났다. 특히 울릉도 상이군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에 대항해 민간단체를 조직하고 일본 침탈에 맞서 싸

을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울릉도 상이군인인 독도의용수비대가 상주하고 일본과 무력 항쟁을 벌인 결과, 대한민국은 현행법인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2조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 목적, 활동기간 및 활동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³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2조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절해고도에서 일본의 위협 아래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을 3년 8개월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설립 배경에는 독도어장의 이권 사업인 미역 채취 어업과 관련이 있다는 증언자들이 나타났다.⁴ 독도의용수비대에는 미역채취당(?)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녔고 홍순칠 대장은 미역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회고할 정도로 어민들 사이에서는 미역어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했다.⁵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결성 배경에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항쟁 의식이 있었으며, 그 어장을 수호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는 수십 명의 해녀를 고용하고 운반선을 투입해 어장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어장 경영 방식으로 인해 독도어장에서는 삶의 온기가 살아났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서 활동할 시기,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에 앞장 선 해녀들의 어업 활동 자료를 제주도에서 있는 비석문과 해녀

3 이용원, 2014, 『독도의용수비대』, 범우사.

4 김호동, 2010,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을 위한 제안」, 『독도연구』9호.

5 홍순칠, 1997, 『이 땅이 누 땅인데』, 해인, 181쪽.

들의 증언, 일본 신문기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1956년 제주도 협재리 부녀회가 건립한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는 독도에서 어로 작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해녀들이 마을운영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부녀회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립한 헌정 비석으로, 해방 후 독도영유권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이 비석에는 독도에서 활동한 37명의 해녀 이름이 새겨져 있고 현재까지도 이 비석에 새겨진 해녀들이 생존해 있어 독도어장의 활용방법과 유인화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II. 1953년 독도 침입을 구술한 박옥랑 해녀

1953년 3월 미·일 합동위원회가 독도의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을 취소하자 일본 순시선은 독도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관용선이 처음 독도에서 한국어민의 어로 작업을 확인한 것은 1953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 63톤)’였다. ‘시마네마루’는 독도에 불법 상륙한 다음 한국어민을 심문하였고 약 30여 명이 3년 전부터 4월이 되면 독도로 출어하여 잠수기를 사용해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한국어민들은 약 5톤짜리 발동기선 5척과 전마선 5척을 타고 활동하였으며 밤에는 동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본은 1953년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을 관할하는 제8관구해상보안부에 지시해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단속 특명”을 내렸다. 제8관구해상보안부는 외국 업무 관련 행정부서인 시마네현 국경본부, 마쓰에(松江) 입국관리사무소, 시마네현청, 마쓰에(松江) 지방감찰청, 미군 사카이(堺)항공대와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협의하고 연락하면서 행동하였다. 1953년 제8관구해상보안부는 약 16번 이상 독도에 침입하였고 3번이나 독도에 자국 영토임을 표시하는 ‘일본령’ 표주를 설치하였다.⁶

6 박병섭, 2014,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독도연구』 17호, 206-208쪽.

일본외무성과 시마네현 자료를 토대로 일본 순시선의 침입과 침탈 행위를 연구한 박병섭 씨는 1953~1954년 약 2년 사이 일본 관용선은 33번 이상 침입했다고 하였다.⁷ 그리고 일본은 독도에 ‘시마네현(島根縣) 오치군(隱地郡) 고카무라(五箇村) 다케시마(竹島)’라고 적은 높이 1간(間) 반, 5촌각(寸角)의 쫓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업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 ‘주의 다케시마(연안도서를 포함)의 주위 500m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해조패류)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채포를 금함. 시마네현’이라는 팻말을 세웠다. 또한 한국인의 어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에는 한국어로 ‘주의 일본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經한 외국인 이외는 일본국 정부회[원문대로] 허가 읍시 영해(도서 巨岸 3해리)내의 立入을 금함’이라고 썼다.⁸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므로 일본인 이외에는 어업을 할 수 없다는 표목을 세우고 표지판에는 한국어민들의 어업을 금하는 경고문을 세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어장에 불법 상륙한 제8관구해상보안부는 무장 경찰을 파견하면서까지 한국어민을 불법 심문하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당시 독도 어장에는 침입한 일본 제8관구해상보안부 순시선을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해녀들이 있었다. 1953년 당시 20살이었던 박옥랑 해녀는 독도에서 미역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인터뷰할 당시 80살이던 박옥랑 해녀는 독도어장에 침입한 일본 순시선의 행동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도 주변을 순회하고 있는 일본 순시선을 자주 목격하였고 일본인이 너무나도 싫어 울었다고 기억하였다. 일본 순시선의 위협적인 행동과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났다고 하였다. 순시선은 해녀들에게 미역을 팔아 달라고 여러 번 졸랐고 주위를 돌면서 감시하였다. 박옥랑 해녀는 “독도 땅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그때 너무 고민했었다”고 안타깝고 불안한 독도어업을 말하였다.

7 박병섭, 2015, 「광복후 일본의 독도 침탈과 한국의 수호 활동」, 『독도연구』18호 참조.

8 田村清三郎, 2010,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島根縣總務部總務課, 119~120쪽.



〈그림 1〉 박옥랑 해녀(2013년 8월 27일)



〈그림 2〉 20대 때의 박옥랑 해녀(뫼출 정중앙)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 땅이라고 물론 했으니까 한국 땅이라고 한 건데... 일본배가 우리에게 미역 팔라고 했어. 일본놈들 귀찮은데, 막 눈물 났어. 이 땅에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왜 이런 좋은 땅을, 물 좋고 바다 좋고 물건도 잘 나고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내줬을까? 진복이고 미역이고 그뿐이 아니라 고기나, 물개, 아이고 물개, 물개가 그냥 천지여서, 수천 마리 올라 앉아 있었어. 그냥 물개가 많아.(박옥랑 해녀, 출처: 2013년 김수희 구술채록)

그녀는 독도바다가 미역과 전복, 강치가 너무나도 많은 좋은 바다라고 단언하였다.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면 항상 불안하였고 숨어서 해녀들의 물질을 지켜보는 일본 순시선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녀는 독도가 한국 땅이고 한국 경찰이 있었지만 ‘왜 일본배(순시선)가 오는지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원래 그런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거니까 한국 땅으로 합쳐진 거야. 아 이놈의 일본배가 빼죽거리면서 우리에게 자꾸 미역 팔아 달라고 했고, 다른 배들은 소련배고 중국배고 다 지나가는데 일본 배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우리 물질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 아이고 일본놈들은 그때 하는 짓이 너무 미워. 일본놈들 너무 미워. 그런데 자꾸 저 일본놈이 그 우리 경찰들 있는데도 막 돌아보고 했어.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했어. (박옥랑 해녀, 출처: 2013년 김수희 구술채록)

박옥랑 해녀는 일본 순시선을 자주 보았으며 거침없이 행동하는 순시선을 보았다. 순시선은 독도 주변을 빙빙 돌아다녔고 오랫동안 물질을 관찰하였고 미역을 팔아 달라고까지 하였다.

독도는 한반도 땅이니 바다에 많은 배들이 지나갔어. 중국배, 소련배, 별이 많이 있는 나라(미국)배 들이 막 지나갔어. 그제 한반도니까 이래가고 저래가고 해서 여러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요즘의 일본배가 우리에게 빼죽거리면서 오는 거야. 큰 배야 큰 배인 거야. 해녀에게 살금살금 다가와 이렇게 내려보고, 굴에 숨어도 보고 숨어서 보면, 왜~ 자꾸 돌아보는지. 빙빙 돌아다니다가 간다. 빙빙 돌아다니다가 눈치도 안 본다. 휘이 휘이 숨비소리를 듣고 배를 멈추고 가만히 행동을 보는 거야. 한참 동안 가만히 일본배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는 거야. 2년차(1953) 갈 때 사공이 하는 말이 (일본배가) 우리에게 (미역을) 팔아 달라고 했어. 우리에게 일본사람이 미역 좀 팔

아 달라고, 우리 형님은 예약한 물건이라 못 판다고 했어. 일본놈 미워. 그러니까 아이고 일본놈들에게 팔지 마세요. 우리 예약한 거 있다고 하면서, 일본놈들에게 안 팔아 줬어. 우리는 안 판다. 사공에게 말했어 가라고 말했어. 미역 팔리지도 못했으니 안 판다고 두어 번 보냈어. 우리는 화도 나고 일본놈들에게 팔아 주지 않았어. 이놈의 일본배가 해마다 가면 꼭 도는 거라 도는 거라 우리만 보면... 이제 생각해 보니 이놈의 배가 틀림없이 왔구나. (박옥랑 해녀, 출처: 2013년 김수희 구술채록)

일본 순시선은 조용히 다가와 내려다보고 해녀를 감시하듯이 행동하였다. 해녀들은 굴속으로 들어가 순시선이 가기를 기다렸고 절해고도인 독도에서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면 재빨리 숨었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가 일본 영토이니 작업을 하면 일본 경찰에 인치당한다”는 등의 협박을 했지만 해녀들의 독도어업은 지속되었다.⁹ 독도어장은 미역이 흘러넘치는 미역어장이었기에 목숨보다 귀한 어장을 뺏길 수 없었다.

해녀 박옥랑은 ‘이 땅을 뺏길까 봐’ 노심초사했다. 이렇게 미역이 많이 나는 좋은 바다를 대한민국이 왜 지키지 못할까 좌절하고 많이 걱정했다. 지금도 박옥랑 해녀는 독도가 한국 땅이지만 일본이 침입하고 겁박했던 상황이 무서웠다고 말하며 ‘왜 한국 대통령들이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III. 1954년 『日本海新聞』에 기록된 해녀어업 실태

1954년 5월 3일 일본 제8관구해상보안부 소속 순시선 5척이 일본어민에게 독도어장을 보여 주기 위해 오키 구미무라(久見村) 어업협동조합장과

9 외무부, 1955, 『독도문제개론』, 61쪽.

키다 사토시(脇田敏) 등 어민 10여 명을 데리고 독도에 상륙하였다. 이들이 본 독도에는 약간의 전복과 미역만 있을 뿐 생산물이 거의 없었다.¹⁰

1954년 5월 29일 돗토리현(鳥取縣) 소속 수산시험선 ‘다이센(だいせん)’은 독도에 상륙하였다. ‘다이센’은 콩치 봉수망어업 시험선으로 봉수망어선은 보통 250~350톤급 내외의 30~35명이 승선하는 대규모 어선이다. 봉수망어업은 일본에서 발달한 어업으로 그물 형태는 사각형 보자기 모양에 그물 상부에 뜬대를, 하부에 발돌과 돌음줄을, 양 옆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부착하여 투망 시 그물이 뜬대에 의해 좌우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양 망 시에는 돌음줄과 조임줄을 당긴다. 조업은 낮에 해황을 조사하거나 육안으로 어군을 탐색하는 등 어장을 선정하다가 해진 후부터 집어등을 켜고 본격적으로 어군을 탐색하는 어업이다. 당시 일본은 독도 주변에서 대규모 콩치어업, 오징어어업 등 어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어업을 시험 조업하고 있었던 것이다.

콩치 봉수망어업 시험선 ‘다이센’에는 니혼카이(日本海)신문사 기자가 탑승하고 있다. 평화선 선언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공방이 치열할 시기 일본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독도를 방문하고 기사를 방출하였다. 『니혼카이신문』도 돗토리 수산시험선을 타고 독도를 취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도에서 작업하는 한국인들을 만났다. 기자는 수십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독도는) ‘수백 년 전의 선조들의 자취가 있는 섬, 지금은 꿈. 일본 영토 표주는 제거되어 있고 일본 섬에 한국 영토 표주가 세워져 있다’, ‘한국어민 51명이 이미 20일 전부터 살고 있다. 한국 표시가 있다’고 독도어장의 모습을 보도하였다. 그는 일본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인이 독도에 영토 표식을 세우고 활발히 어업하는 등 한국 영토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하였다.

10 박병섭, 2015, 앞의 글, 96-97쪽.

일본 어선의 진출을 막으려고 한국이 광대한 해역을 포함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오키 서북방 90해리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을 때 일본은 조야를 막론하고 동요하였고 외교 문제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 이후 이 라인을 넘은 일본 어선은 한국 측에 붙잡혀 배는 몰수당하고, 선원들은 징역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이제 세인의 머리에서 잊혀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은 그 주장을 포기했을까? 현실은 전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독도는 지금 한국령의 표식이 새겨져 한인들 이 어업을 하고 있다. 제8관구해상보안부가 몇 번이나 세운 일본 영토 표주는 이미 흔적도 없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서일본해의 무인도이지만 어업 일본에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보물섬이다. 기자는 독도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때마침 풍치 봉수망 시험 조업을 하는 돛토리현수산시험장 시험선 '다이센'에 동승, 30일 동도에 상륙했다. 이하는 독도 상륙과 그 견문록이다.¹¹

일본 기자는 독도 상륙 과정에서 만난 한국어민들과의 대화 내용 및 한국인의 어업 실태, 거주 상황 등을 자세히 알렸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경비지역에 상륙을 감행하면서까지 독도의 모습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보인다. 아련히 보이는 섬」 해도에는 독도가 2개 있다. 오키 서서북, 울릉도 남남동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독도, 다른 하나는 울릉도이다. 도쿠가와(徳川)시대 돛토리번(鳥取藩)에서는 전자의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하였고 울릉도를 죽도(竹島)라고 하였다고 한다. 원화(元和)3년 7월(340년 전) 요나고(米子) 오야진기치(大屋甚吉)가 에치고(越後)로부터 돌아오는 중에 표류하여 발견하고 죽도 도항을 한 것이 울릉도이다. 도비(土肥) 어로주임이 지도하는 시험선 '다이센'은 풍치망으로 독도를 찾아 남동으로 갔다. 20해리 부근

11 “日本海の焦点 竹島上陸記”, 『日本海新聞』, 1954.6.3.

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그림자가 수평선의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안개 때문에 쌍안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파탐지기에는 어군도 해저도 반응이 없는 1,460m의 심해가 계속되고 있다. 잠시 앞으로 가니 전파에 암초가 나타났다. 170m선이다. 이 층이 7해리 정도 계속된 다음 끝이 없는 단층이 되는 1300m선이다. 수평선상의 독도는 점차 남색의 그림자를 띠었고 전설의 귀신섬을 연상시켰다. 한 조각의 육지도 볼 수 없는 절해의 고도가 지금 일·한 양국의 영토권 주장의 중심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500m 정도까지 접근하였지만 망원경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발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이상 접근하지 않고 회선하였다. 남단과 북단 동문(洞門)이 희뿌연게 하늘이 보인다. 다이센은 방향을 서쪽으로 잡았다. 섬을 남에서 서로 돌렸다. 동도와 서도 중간지점에 대나무가 움직였다. 배다. 전파선을 타고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배가 2척이 있다. 거기에는 똑바로 서 있는 기암석이 해안절경보다 멋지다. 꿩이갈매기가 날아다니면서 운다. 무수의 새다. 아마 수천 마리, 작은 섬에 떼로 몰려들고 서도 187m 절경으로부터 하나의 나무도 없는 섬의 절벽과 절벽의 녹색에 흰색으로 줄지어진 꿩이갈매기의 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다가오는 전마선」 서쪽을 향해 항로를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해안가에 붉은색 인간이 흩어져 있다. '여자다' 한순간 의외의 감정이 일어났다. 거친 바다를 타고 오는 것은 남자뿐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완벽하게 틀렸다. 어느 바위 뒤에서 총을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배편에 탄환의 구멍이 뚫린 듯한 환영이 엄습하였다. 하지만 섬의 인적은 해초를 따기에 열심인 듯하다. 물속에서부터 올라와 배를 바라보는 자도 있다. 쪽 세어 보니 30명이다. 서북에 흩어져 있는 100m 정도의 낮은 암초를 돌아보니 갑자기 눈앞에서 물보라가 올라왔다. 강치가 3마리 헤엄치고 있다. 한 번 검은 모습 보여 준 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작년은 30두 정도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잡았을지도 모른다. 암석 뒤에서 작은 깃발을 휘날리는 하얀 동력선

이 모여들었다. 7톤인가 8톤 정도의 배다. 북면으로 돌면 서도의 무너진 해변에 하얀색 페인트로 한국기가 그려져 있다. 그 한편의 글씨는 아마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일 것이다. '다이센'은 해저의 암석을 피해 돌았다. 여기까지 와서 상륙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유감이다. 도비(土肥) 어로주임. 처음 항해하는 선장 이도우 야스오(伊藤康夫)에게 부탁하여 한 번 순회하였다. 그러자 동도의 서남 작은 평지에 드럼통이 보이고 미역 건조장이 보였다. 그 위에 돌인지 시멘트 모양의 표주가 있다. 한국 영토라는 표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100m 정도 접근해도 작은 섬에 모인 꿩이갈매기는 날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서쪽으로 돌아 인원은 전보다 많았다. 북쪽에서 배를 멈추자 서도의 바위 그늘에서 전파선이 노를 저어 왔다. 한국군인가, 관헌인가, 어부인가, 침을 삼키는 사이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귀려고 오는지도 모른다고 안심하였다. 가까이 온 배에는 25세 전후의 청년 6명이 타고 있었다. 웃고 있었으므로 적의는 없다고 다소 안심했다. 그리고 동도로부터 또 한 척의 전파선이 가까이 왔다. 방심해서 '손을 올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됐다. 하지만 과감히 '섬에 데리고 가 달라'고 말하니 '오케이' 미국 스타일로 과감히 승낙하였다.

「**혼자서 섬에 들어가다**」 기자가 혼자서 섬에 가게 되었다. 혼자서 한국인이 많은 곳으로 게다가 양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섬에 가려니 비장함마저 든다. 한국인의 전파선에 타자마자 담배다. 담배를 나눠주고 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청년이 일본어를 한다. "한국군에 소 집되어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입어 돌아왔지만 살아갈 수 없어 상이군인회의 원조로 미역 채취를 위해 왔다. 벌써 20일 정도가 된다. 발동기선 1척과 작은 배 4척이 있다. 섬에는 남자가 23인, 여자가 28인이 있다. 여자 중 제주도로부터 온 여자가 20명 정도다." 여러 명의 입에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독도에 도착했다. 여기저기 작은 섬에서 쉬고 있었던 나체의 해녀가 일제히 물에 들어갔다. 남자를 부양하는 해녀로 유명한 제주도 여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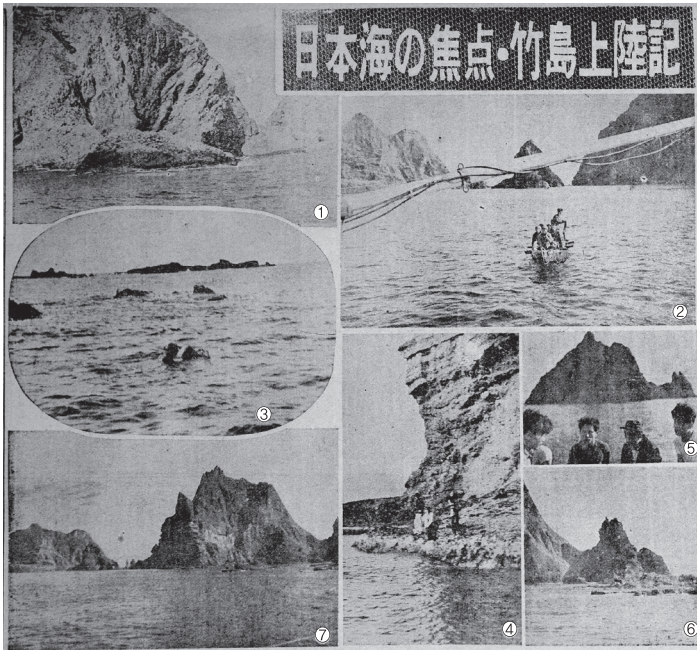
카메라를 향하니 잠수해 버린다. 해녀의 숨비소리가 확 울리는데 이 소리는 휴리는 작은 한숨 소리와 비슷하다. 남자들은 2칸(2間) 남짓한 대나무 끝에 낫을 달고 바다 안의 미역을 자르고 있지만 해녀는 머리 크기의 두롱박을 띄워 진복이나 소리를 잡는다. 잠수하면 3분 정도는 나오지 않는다. 파도가 치지 않는 암석이라고 하는 암석마다 미역을 20, 30~43, 45cm 정도의 장방형으로 말리고 있다.

「**늪름한 해녀**」 하늘에서 춤추는 무수의 팽이갈매기, 미역은 적갈색이며 상등품이 아니다. 그런 적갈색 미역이라도 한국에서는 10관으로 1만 엔이라고 한다. 쌀은 풍부하며 5두로 3,500엔이라고 하니 좋은 장사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절해의 고도에 멀고 먼 제주도로부터 여자가 돈 벌러 오는 것이 과연 용감해서일까? 여자는 대체로 일본어를 알지 못한다. 해녀들의 빨간 동색 빛을 띠는 피부와 터질 것 같은 가슴에 물보라와 5월의 태양이 비춘다. 둥근 안경은 일본 해녀와 같다. 어떠한 해녀도 육체미의 편린을 보여 준다.

「**몽돌해변 위가 가옥**」 해녀군을 지나서 30세 정도의 여자가 찢어진 하얀 바지를 입고 바다 근처에서 작은 조개를 찾고 있다. 부식으로 할 것 같다. 손은 찢어진 상처투성이로 빨간약을 바르고 있고 카메라를 보자 암석 뒤로 숨어 버렸다. 서도의 서안에 올랐다. 거기에는 조금 긴 해안선이 60~70m이다. 폭은 2~5m 정도이다. 절벽을 따라서 멍석이나 가마니가 깔려 있는 곳이 주거이다. 그 다음 절벽은 안쪽의 동굴로 비와 이슬을 건디는 곳이지만 생활의 대부분은 몽돌해변 위에서 취사도 그 암석 뒤에서 이루어진다. 나무 하나도 없는 섬이므로 경비선이 보급하여도 땀감은 부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국 영토라고 하는 해상보안청 5촌각의 표목은 바로 손쉬운 땀감이 되었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누군가가 빨아 놓은 하얀 셔츠가 돌 위에 말려 있다. 올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팽이갈매기 2쌍이 기대어 하얀가슴을 건주고 있다. 재미있는 섬, 풀 말고는 섬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나

지 않는 섬. 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태고 해변에 살고 있는 원시인을 상상케 한다. 한국인은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 듯하다. 동쪽의 섬은 낮지만 주위가 넓어서 대도(大島)라고 부른다. 높은 서도는 소도라고 부른다.

기자는 섬 남쪽에서 미역 채취 전마선 2척을 발견, 서도 서쪽에서 해녀 약 30명과 7~8톤짜리 동력선을 확인하였다. 서도 북쪽 암석이 무너진 해안가에는 흰 페인트로 한국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다이센'으로 25세기량의



(그림 3) “日本海の焦点 竹島上陸記”, 『日本海新聞』, 1954.6.3, (鳥取縣立圖書館 소장)

사진 설명 ① 서도 남쪽 섬에 떼 지어 모여 있는 갯이 갈매기

② '다이센'에 옷을 얼굴로 다가오는 여섯 청년

③ 태왁을 띠운 제주도로부터 온 해녀

④ 서도에 있는 한국 소년

⑤ '다이센' 위에 있는 청년들(오른쪽 2번째가 훈장을 달고 군모자를 쓴 상이군인)

⑥ 서도 그늘에 가려진 흰동력선

⑦ 북에서 바라본 독도전경

청년 6명이 웃으면서 다가왔다.

전마선 청년 6명 중 1명은 군모를 쓴 상이군인이며 훈장(略綬)을 달고 있었다. 이들이 섬에 온 경위가 “한국군에 소집되어 전쟁터로 갔다. 부상해 돌아왔지만 먹을 수 없으므로 상이군인회의 도움으로 미역을 채취하러 울릉도에서 왔다. 이미 20여 일이 된다. 섬에는 발동기선 1척과 작은 배 4척이 있다. 사내가 23명, 여인이 28명이 있다. 여인 중 제주도에서 온 자가 약 20명”이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림 5〉 “拔去られた標柱”, 『日本海新聞』, 1954.6.3. (鳥取県立図書館 소장)

IV. 1956년 『동아일보』의 해녀 기사

『동아일보』 1956년 8월 25일 자 3면에는 “이색의 여(女) 주민, 구슬피 우는 물개”라는 제목으로 경비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해녀 3명의 기사가 있다. ‘이색의 여(女) 주민’은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56년 독도작업이 끝난 후 우뚝가사리 작업을 위해 다시 독도에 잠입한 3명의 해녀들이다. 이 해녀들은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



〈그림 6〉 “독도의 생태”, 『동아일보』, 1956년 8월 25일

「송아지 울음의 물개」 독도 주변에는 약 1백여 마리로 추산되는 물개(웃토 세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물개들은 가끔 바윗돌 위에 올라와서는 소리쳐 놀기도 하는데 그 울음소리는 마치 송아지가 우는 것과 꼭 같으며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잘 도망가지 않다고 한다. 이 물개는 현재 천연기념물로서 극진히 보호하고 일체 수렵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일인들이 독도에 자주 온 것은 고기보다 이 물개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女) 주민(은) 해녀 셋」 독도를 지키는 경비초소 방안에는 세 사람의 예뻐장한 젊은 아가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경비 순경에게 “가족들을 데리

고 왔느냐?”고 물은 즉 순경은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요 … 제주도에서 미역을 따러 온 해녀들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아무리 미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이 멀고 먼 무인도(?)까지 하필 세 사람만이?... 이런 생각이 들어 얼굴을 들 줄 모르는 해녀에게 “그래 미역 많이 따셨?”하고 물으니 해녀는 모기 같은 소리로 “아니요” … 하고 말문을 닫고 만다. 방 아래쪽에는 다른 경비원 한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코를 골고 잠자고 있었으며 이날의 경비초소의 분위기는 자못 추잡하기 짝이 없었다. 6명의 남자에 세 사람의 아가씨, 물론 적적하기 짝이 없을 그들이기는 하나 외적의 침범 언제 있을지도 모를 국토의 최첨단을 수비하는 경비초소가 이렇게 무질서해도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스친다.

V. 1956년 제주도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복지회관에는 1956년 7월 협재리 대한부인회가 건립한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가 있다. 이 비석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현무암 돌로 가공된 가로 29~32.5cm, 세로 72.5cm, 폭 13cm 크기의 비석으로 비석 후면에는 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이름을, 좌면에는 고향을 잊지 못해 독도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아낌없이 내어 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정문을 적어 놓았다. 협재리부인회에서는 울릉도·독도에서 고생스럽게 번 돈을 아낌없이 내어 준 해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헌정문과 그 비석에 해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새겼다.

비석 전면

울릉도출어부인기념비

비석 후면

고춘죽/홍생낭/홍춘화/홍남선/리정수/김순하/정유순/홍여순//리계생/장

순효/김정남/홍선숙/홍순자/박애자/홍금선/고임순//박옥남/홍선정/김윤하/양복녀/림복녀/장부자/장정남/끝//재향부인(협회)/홍정남/윤종신/장덕순/고렬죽/임병귀/고유길/박춘화//강행인/양묘출/문복순/리경필/김영순/홍명화/고창범

비석 좌면

객고풍상(객지에 나가 고생하면서도)

애향연금(고향을 사랑하여 돈을 내놓았으니)

성심성의(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뜻을)

영새불망(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비석 우면

단기 四二八九년 七月 협재리대한부인회 근슈

전통적으로 제주해녀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행사가 있으면 해녀들이 기부금을 내고 마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녀마을의 큰 행사인 잠수굿이나 영등굿 비용을 조달하고, 마을공동기금을 마련하고 마을의 공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마을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제주해녀마을에서는 다양한 사안을 해녀들이 관례에 따라 의결하고 해결하였다. 따라서 해녀마을에서는 많은 미담이 전해 온다. 해녀들이 학교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선한 행동을 위해 사회기금을 마련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에 담긴 내용, 즉 6·25전쟁 직후 마을이 폐허가 되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어린 해녀들이 멀고 먼 독도에서 벌어들인 돈을 기부했다는 점은 해녀사회의 전통적 관행을 떠나 가혹한 인간적 사랑을 보여 주고 있었다. 대부분 20세 미만의 꽃다운 아가씨들의 먼 독도로의 왕래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다니면서 갖은 고생으로 기부금을 마련하였다. 남자들도 쉽게 가지

못하는 독도에서 어린 해녀들이 벌어 왔기에 부녀회에서는 그 아름다운 정성을 헌정 비석에 기록하였다.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에는 해녀 23명과 재향 해녀 14명 총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재향 해녀는 당연히 협재 출신으로 육지에 주소를 둔 해녀였지만 고향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서슴없이 기부금을 냈다.

1935년생으로 현재 협재리에 살고 있는 고정순 해녀는 17살에 독도에 갔다고 한다. 1952년경일 것이다. 고정순 해녀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 독도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무서워 이틀 정도만 미역을 채취하다가 울릉도로 나왔다고 한다. 고정순 해녀와 함께 독도로 간 이유를 박옥랑 해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성님) 포항서 (오징어를) 사서 부산 가서 (팔아냈는데) 오징어 값을 잘 받았어. 포항사람이 우리 성님에게 하는 말이 울릉도 오징어 가져와서 팔라고 했어. 울릉도 가라고 하니 (성님이) “울릉도 미역 같은 거 납니까?” (물어보니), 울릉도 다녀온 사람이 “미역은 남자도 한다. 낫으로 베어서 미역하는 거 다니면서 보았다”고 하였다. 우리 성님은 해녀야. 그래서 딴 사람 데려 가면 원망하니 안 될 것 같아 우리 사촌들만(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문득 생각하니 딴 사람들 데려가면 돈도 못 벌고 원망을 듣겠다 싶어서, 고모 딸과 사촌 딸, 오빠 딸 우리 사촌이 여섯이야, 사촌 여섯만 (울릉도에) 갔어. 울릉도에 가니 한국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울릉도에서 배 하나 빌려 해안을 돌아보니 미역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돌아보니 미역이 많았어. 우리 성님은 배를 사서, 함께 미역을 했어. 울릉도에 한 3년 다녔어.(박옥랑 해녀, 김수희 구술채록)

이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가 건립된 1956년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상주하며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시기였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철은 1954년 제주에서 직접 해녀를 데려왔다고 수기에 기록하였다.¹²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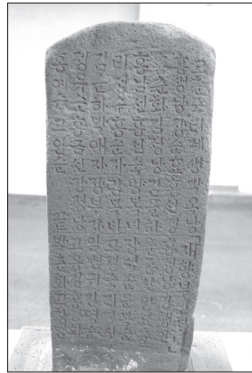
12 홍순철, 1997, 앞의 책, 87쪽

『니혼카이신문』의 ‘제주에서 20명의 해녀들이 왔다’는 기사를 보더라도 이들은 협재에서 모집된 해녀일 것이다.

최근까지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는 제주해녀마을에 건립된 해녀공덕비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독도에서 활동한 해녀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진척됨에 따라 이 비석이 독도를 지켜낸 영웅 33인과 함께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제주해녀 37명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5년 국가가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을 법률로 정해 이들의 정신을 계승한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독도어장을 개척하고 수호한 해녀들의 공적을 1956년 협재 마을 비석거리에 세워 이들을 영원히 헌정하였다.



〈그림 7〉 비석 전면



〈그림 8〉 비석 후면



〈그림 9〉 비석 우면



〈그림 10〉 비석 좌면

<https://doi.org/10.23037/tas.2023..25.006>

영토해양연구 Vol. 25 (2023. 6.)

자료
소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이력서(履歷書)」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카이 요자부로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다. 1903년 독도 강제 포획의 사업성을 인지한 그는 그 다음해 ‘독도 편입 및 임대 청원’¹⁾(이하 「청원서」)을 내무·외무·농상공부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1905년 일본 내각은 ‘량코도’라는 이름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여 일본에 편입하고 ‘다케시마’를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하에 두는 결의를 하였다.

나카이가 독도에서의 독점적 강제 포획 사업을 계획하고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을 청원하게 된 과정은 여러 사료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이 집필한 『다케시마와 울릉도』²⁾ 및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입지전」(이하 「입지전」)³⁾, 금번 소개하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⁴⁾ 등이다.

나카이는 원래 독도를 한국 영토로 알고 「청원서」를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출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접촉한 끝에 일본 정부에 청원하게 되었다. 이 과정이 위에서 언급한 문헌과 사료에 각각 기술되어 있으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강제 포획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1904년 여기에는, 각 방면으로부터 속속 도항하여, 경쟁적으로 막 포획한 결과,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나카이 요자부로 씨는 량코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조선 정부에 임대를 청원하려는 결심을 하고, 1904년 여기가 끝나자마자,

1 「リャンコ島領土編入并二貸下願」.

2 奥原壁雲, 1906, 『竹島及鬱陵島』, 27~34頁 (奥原福市,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55~64頁).

3 奥原壁雲, 明治三十九年(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立志伝」(塚本孝, 2007, 「資料」『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明治39(1906)年(奥原碧雲)), 『第1期(平成17年6月~平成19年3月)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Web 竹島問題研究所, 71~74頁.

4 島根縣, 昭和28年(1953), 「從明治參拾八年 行政諸官庁往復雜書類 竹島漁獵合資会社」,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目錄 no.005」.

즉시 상경하여 오키 출신 농상무성 수산국장 후지타 간타로 씨의 도움을 받아, 마키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다. 그 역시 이에 찬성하고, 해군 수로부에 랑코도의 소속에 대해 확인해 보게 하였다. 나카이 씨는 기모쓰키 수로부장을 면회하여, '이 섬의 소속에 대한, 확실한 증정이 없고, 특히 일한 양국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으로 10리(里)가 가깝다. 이에 더해, 일본인으로서, 이 섬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에는,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나카이 씨는 결국 뜻을 굳히고, 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을 내무·외무·농상무성 3대신에게 제출하게 되었다.⁵

「입지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덧붙여, 해도에 따르면, 이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하므로, 일단 외인의 습격을 만나면, 섬이 보호를 받을 길이 없음으로, 이 같은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간파하고, 이 섬의 대여를 조선 정부에 청원하여, 일거에 어업권을 점유하려고 결심하고, 같은 해의 어기가 끝나자마자,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상경길에 올랐다. 그는 먼저 오키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 씨의 도움을 받아, 마키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다. 그도 이 거사에 찬성하고, 먼저, 해군수로에, 랑코도의 소속을 확인해 보게 하였다. 그는 기모쓰키 수로부장을 면회하여, 가르침을 바라자, '이 섬의 소속에 대한, 확실한 증정이 없고, 특히 일한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일본 쪽이 10리 근거리리에 있으며 (이즈모국 다코바 나로부터 108리, 한국 호미곶으로부터 118리) 덧붙여, 조선인으로서 종래 이 섬 경영에 관계하였던 형적이 없는 것에 반해,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이미 이 섬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있는 이상은 당연히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결국 뜻을 굳히고, 랑코도 영토편입 및

5 奥原壁雲, 1906, 앞의 책, 27~28頁.

임대 청원을 내무·외무·농상무성 3대신에게 제출하게 되었다.⁶

『다케시마와 울릉도』와 「입지전」은 나카이가 독도에서의 독점적 강치 포획 사업을 계획하고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을 청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즉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생각한 나카이가 한국 정부에 임대 청원을 하려고 상경하여 먼저 동향의 농무성 수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산국장에게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먼저 해군수로부에 랑코도의 소속에 대해 확인하게끔 하였다. 이에 해군수로부 기모쓰키 수로부장을 면회하여 소속에 대해 물었다. 수로부장은 랑코도가 조선 영토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고, 일본인이 섬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으니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나카이는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에 랑코도 편입 신청과 임대 청원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자료는 오쿠하라 헤키운에 의해 집필된 것이다. 오쿠하라는 1906년에 3월에 실시된 시마네현 관민의 독도 시찰에 참여한 후 5월에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집필하였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서문(1906.7)에 따르면, 1905년 여름 독도 시찰을 마친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의 지시에 따라 40여 명의 관민시찰단이 ‘제2 오키마루’를 타고 독도를 시찰, 그 위에 울릉도까지 시찰한 후 복명했으며, 이후 시찰단 일원이었던 오쿠하라가 복명서 등을 참조하여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집필했다고 한다.⁷ 이 책은 집필 후 60여 년이 지난 1965년에 발간되었다.

「입지전」은 「오쿠하라 원고용지」라고 인쇄된 원고용지 10매에 쓰인 약 4,700자 분량의 원고로 당시 발간되고 있던 잡지 『성공-입지·독립·진보의 친구』⁸에 투고된 것이다. 이 잡지는 매호 저명인의 전기나 경력서, 해외 진출 및 성공담 등을 게재한 잡지인데 오쿠하라의 원고가 이 잡지에 게재

6 塚本孝, 2007, 「資料」『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明治39(1906)年(奥原壁雲), 73頁.

7 奥原壁雲, 1906, 앞의 책.

8 『成功一立志独立進歩之友』, 東京: 成功雜誌社.

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⁹ 1906년 시찰 시 오쿠하라가 동행했던 나카이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한다.

두 자료에 기록된 내용은, 나카이가 일본 정부 관료들과 접촉하여 회유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무주지로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나카이가 참고한 ‘해도’를 1896년 4월 해군수로부가 발행한 『조선전안(朝鮮全岸)』으로 추정하고, 동 수로지의 제목을 통해 나카이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오해’하였다는 해석을 한다.¹⁰

한편 이번에 소개할 「이력서」는 나카이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다. 「이력서」는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가 생산한 「섭외관계철(다케시마 관계철)(1953)」 목록 5번 「메이지 38년부터 행정 제관청 왕복 잡서류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昭和28年)〕目録 no.005 「從明治參拾八年 行政諸官庁往復雜書類 竹島漁業合資會社」에 수록된 것으로 메이지 43년(1910)에 나카이 요자부부가 작성하여 오키도청에 제출한 것이다.

「제1 학력」, 「제2 사업」, 「제3 상벌」 3개 대항목 및 「제1 블라디보스토크 강치 어업」, 「제2 돗토리현 강치 어업」, 「제3 건착망 시험 어업」, 「제4 다케시마 시험 어업」, 「제5 지시마 경영」, 「제6 석유발동기어선」으로 세분화한 별도의 「사업 경영 개요」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카이의 출생에서부터 학업, 추진 사업 경과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제4 다케시마 시험 어업」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나카이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9 塚本孝, 2007, 「奥原碧雲竹島關係資料(奥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竹島研究会參考資料)『第1期(平成17年6月~平成19年3月)「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Web 竹島問題研究所, 61~70頁.

10 塚本孝, 2007, 「奥原碧雲竹島關係資料(奥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竹島研究会參考資料)『第1期(平成17年6月~平成19年3月)「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Web 竹島問題研究所, 61~70頁.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통감부를 대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상경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하던 중에 당시의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씨가 주의(主意)해 준 대로 반드시 한국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던 끝에 당시의 수로부장 기모쓰키(肝付) 장군이 단정(斷定)해 줌에 따라 이 섬이 완전히 무소속임을 확인하였다. 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말하고 이 섬을 우리 나라 영토로 편입한 후 대여해 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부의 3대신에게 청원하는 청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니 내무성 당국자가 ‘이런 시국에 (일터개전 중) 한국 영토일지도 모를 작디 작은 한 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주변 국가들이 우리 나라가 한국 병탄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키우게 하면 이익은 매우 적고 반대로 사태는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청원서를 각하시키려고 했다. 이와 같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의 정무국장 아마자 엔지로(山座門二郎) 씨를 상대로 설득했다. 아마자 씨는 ‘이런 시국이기 때문이야말로 그 영토의 시급한 편입이 필요하다.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매우 좋지 않겠나, 특히 외교에서는 내무성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신속히 청원서를 우리 성(외무성)으로 회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세 좋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섬은 마침내 우리 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¹¹

여기에는 기모쓰키 수로부장의 말에 따라 독도를 무소속의 땅이라고 재인식한 이후의 경과가 기술되어 있다. 즉 내무성·외무성·농상부성의 3대신에게 제출하는 「청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가 거절당한 것, 이에 외무성 정무국장 아마자 엔지로를 설득하여 외무성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 등이다.

11 후기하는 원문 및 번역 참조.

이미 일본 연구자의 발췌·인용¹²을 통해 위의 자료들의 내용 중 주요 내용은 국내에 알려져 있다.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던 것, 기모쓰키 수로국장이 독도와 한일 본토와의 거리 비교와 경영 현황을 통해 독도를 무주지로 단정한 것, 독도 편입에 대한 내무성과 외무성의 입장 차이 등의 단정을 통해 독도를 무주지로 재인식한 것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이 소개된 적은 없다. 전문을 통해서서는 외무성에 의한 「청원서」 추진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즉 내무성에 제출된 「청원서」가 각하되려 하자 외무성 정무국장을 설득하여 내무성으로부터 「청원서」를 반환받아 다시 외무성에 제출, 외무성을 통해 다시 내각결의에 이르게 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서」 제출에 있어, 일본 정부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또 나카이란 인물의 출생, 학력, 사업 경력의 전모를 볼 수 있어 그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이하 원문 전문과 번역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 (島庁へ提出せる)履歷書

本籍地 島根県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字指向二十三番地

平民 漁業 中井養三郎

元治元年正月二十七日生

元鳥取県東伯郡小鴨村大字中河原村

平民農亡甚六 三男分家

第一 學歷

一 明治五年 鳥取県久米郡下田中村小学校(現今ノ東伯郡上灘村)ニ入学ス。

一 明治十一年 同校ニ於テ小学全科ヲ卒業ス。

12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81-89쪽; 나이트 세이추·김병렬, 2006,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88-100쪽.

- 一 明治十二年 島根県松江市西茶町内村友輔ノ相長學舎ニ入り漢学を修ム。
- 一 明治十三年 相長學舎塾長ニ任セラル。
- 一 明治十七年 相長學舎ヲ辞シ東京麹町区宝田町斯文齋ニ入り漢学ヲ修ム。
- 一 明治十八年 実業ニ志シ斯文齋ヲ辞ス。

第二 事業

- 一 明治十九年 視察ノタメ小笠原島ニ渡航ス。
- 一 明治二十年 濠洲渡航ヲ企テ発程ニ臨ミテ頓挫果タサズ、長崎県西彼杵郡松島村ニ流浪ス。
- 一 明治二十三年 潜水器漁業ニ着手ス。
- 一 明治二十四年~二十五年 露嶺浦斯德¹³附近ニ於テ潜水器ヲ使用シテ海驢漁業ニ従事ス。
- 一 明治二十六年 潜水器ヲ使用シテ我カ筑前・対馬・朝鮮慶尚・全羅ノ沿海ニ於テ海驢若クハ鮑ヲ歴漁ス。
- 一 明治二十七年以来潜水器ヲ使用シ鳥取・島根兩県下沿海ニ於テ鮑若クハ海驢ヲ歴漁ス。
- 一 明治三十一年 隠岐水産組合ノ委託ヲ受ケ巾着網漁業試験ニ従事ス。
- 一 明治三十三年 鳥取県西伯郡御来屋町有志者ト組合ヒ同県水産試験場ノ委託ヲ受ケ鮪流網漁業ヲ試ム。
- 一 明治三十六年 能登半島ニ於テ潜水器ヲ使用シ海驢漁業ヲ試ム。此年始メテ「リャンコールド」列岩ニ於テ海驢ヲ試ム。
- 一 明治三十七年 一切潜水器漁業ヲ廢シ専ラ海驢ヲ試ム。此年「リャンコールド」列岩ヲ本邦領土ニ編入セラレンコトヲ内務・外務・農商務三大臣ニ願ヒ出ヅ。

13 블라디보스토크, 浦塩斯德의 오류.

- 一 明治三十八年「リャンコールド」列岩ハ本邦ノ領土ニ歸シ隱岐島司所管ニ屬シ竹島ト命名セラル。
竹島漁獵合資会社ヲ組織シテ其事務ヲ執行シ以テ今日ニ至レリ。
- 一 明治四十年 島根県視察員一行ニ隨ヒ露領浦塩斯德ニ往復ス。
- 一 明治四十一年 北海道千島国新知島外八島ニ於テ総地籍拾貳万八千八百八十四坪有料使用ノ許可ヲ北海道庁根室支庁ニ願出テ許可ヲ受ク。
- 一 明治四十二年 隱岐水産組合ノ委託ヲ受ケ日本型漁船ニ石油發動機ヲ据付ケ之ガ漁業上ノ試験ヲ行ヒ以テ今日ニ至レリ。

第三 賞罰

- 一 明治二十九年 神戸市ニ開催セラレタル水産博覧會ニ於テ海參製造ニ對シ二等賞ヲ受ク。
- 一 明治三十一年 鳥取県東伯郡御來屋町火災ノ際、焼出米ヲナシタルハ特志ナリトシテ木杯一個ヲ下賜セラル。
- 一 明治三十年 西郷町火災ノ際、焼出米ヲ寄付シタルハ殊勝ナリトシ木杯一個ヲ下賜セラル。
- 一 明治三十九年 下関市ニ於テ開催セラレタル第二回關西・九州府県連合水産共進會ニ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ノ出品ニ係ル海驢油ニ對シ三等賞ヲ受ク。
- 一 明治四十三年 名古屋市ニ開催セラレタル府県連合共進會ニ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ノ出品ニ係ル海驢乾肉肥料ニ對シ四等賞ヲ受ク。
- 一 明治四十三年 英国倫敦ニ於テ開催セラレタル日英博覧會ニ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ノ出品ニ係ル海驢皮附属手提鞆ニ對シ銀賞ヲ受ク。
- 一 曾テ処罰セラレタル事ナシ。

★ (右に附属する)事業經營概要

第一 浦塩斯德海驢漁業

濠洲渡航ノ頓挫ノ潜水器業者笠干里ナルモノノ詐術ニ陥リ旅費金ヲ失ヒタルニ由ル。其為メ長崎県西彼杵郡松島村流浪中自然潜水器ヲ研究シ其最モ有利ノ漁具タルヲ知タルト同時ニ之ヲ使用スベキ地并ニ事業ヲ種々ノ書類ニ抛リテ調査シ南洋木曜島其他ニ於ケル真珠介、「フィジ」群島ニ於ケル海驢及ヒ浦塩斯德附近ニ於ケル海驢採取等ノ最モ有望ナルコトヲ発見シタリ。就中浦塩斯德へ當時西比利亞鐵道數年内ニ開通ノ噂アリ、其ノ貫通ノ曉ニ於ケル繁榮ハ想像スルニ余リアリ、且ツ地最モ近クシテ起業最モ容易ナルヲ以テ爰ニ之レヲ企ツルニ至シタルモノナシ。舎弟嘉造ヲシテ先ヅ渡航シテ實地ノ調査及ヒ露国政府ニ対スル交渉等ヲ為サシメ大ニ費用ヲ投ジ時日ヲ費シタル結果目的漁業ノ外捕鯨業及ヒ黒龍江ニ於ケル鮭漁業・貿易等ノ頗ル有望ナルコトヲ確カメ得タリ。斯クテ種々多大ノ望ヲ抱キ先ヅ海驢漁業ニ着手シタリ。是レ實ニ西比利亞沿海ニ於ケル潜水器漁業ノ嚆矢ナリトス。其漁獲ハ予期ノ如クナルコトヲ得タルモ其製造ハ大ニ困難シタリ。蓋シ西比利亞沿海ハ濃霧強ク製造中尽ク腐敗シ去ルヲ以テナリ。種々苦心ノ末塩海參ノ製法ヲ支那人ヨリ伝習シ始メテ此困難ヲ免ルハコトヲ得タリ。本邦人ノ塩海參製造ハ亦タ恐ラク之ヲ以テ嚆矢ト為スナレベシ。塩海參ハ専ラ北清地方ニ需用アルモノナリ。明治二十五年ニ在リテハ潜水器四台ヲ使用シタリシカ、五月ヨリ九月ニ至ル五ケ月間ニ於テ收穫高塩海參約三万五千斤、代金約壹万三千円ニ達スル好成績ヲ得タリ。茲ニ在留邦人(當時ノ在留人ハ概シテ博徒賤業者其他浮浪徒食ノ徒ニシテ着実ナル人士ハ實ニ曉天ノ星ナリキ)ノ疾視脅迫、駐在貿易事務官(事務官ハ二橋某、書記生ハ野村某)ノ干渉圧迫等ヲ受ケ同情ニ富タル杉浦商会(當時ノ杉浦久大氏)ノ大ナル後援アリタルモ結局露国政府ノ禁制ニ遭ツテ事業ヲ繼續スルコト能ハズ非常損害ヲ蒙リテ破産ニ瀕シ、海外ニ在リテハ復タ起ツコト能ハズ前途種々ノ望ヲ抱キナカラ涙ヲ吞ンデ空シク潜水器ヲ携へ歸朝セザルヲ得ザルニ至レリ。

舎弟ハ留リテ露国人某ト取組ミ捕鯨業ヲ試ミタルモ空シク失敗シ伊予

国波止浜八木某ノタメ

黒龍江ノ貿易ヲ開始シ幸ニ成功シテ今日同江ニ於ケル本邦人ノ漁業□□大隆盛ノ端緒ヲ開キ得タリ。然レトモ舎弟ハ夙ニ八木某ノ背□ヲ看破シ事業ノ緒ニ就クヲ待テ直ニ空手辞シ去リ。種々ノ事業ヲ試ミテ尽ク失敗シ竟ニ病ヲ得テ去ル明治三十五年台湾ニ客死シタリ。而シテハ八木某ハ座シテ数十万ノ巨利ヲ博シ舎弟ノ媒介ニ抛リテ八木ノ代理店タルヲ得タル島田六太郎ハ有名ナル一大商店ト為リタリ。

浦塩斯德附近ニ於ケル潜水器使用海驢漁業ハ其後度々露国人ノ名義ヲ以テ本邦人之ヲ經營スルモノアリシカ利益ノ大部分ハ名義人ノ手ニ歸シ直接經營者ニ歸スル利益ハ甚ダ大ナラザリシカ如シ。

第二 鳥取県海驢漁業

鳥取県海岸ハ一望ノ砂浜ニシテ磯ニ棲ムベキ海驢カ此海底ニ繁殖ストハ一見想像シ得ヘカラス、特ニ如何ナル方法ヲ以テシテモ從來嘗テ此沿海ニ於テ海驢カ掃捕セラレタルコトナキヲ以テ爰ニ潜水器漁業ヲ企ツルハ無謀ナリトテ大ニ危ムモノアリシモ地方漁夫等カ説ク所ノ海底ノ状態ニ對シテ見ル所アリタルニ由リ斷行シタル□□ナリ。

畢然其成績頗ル良好ニシテ明治二十八年ノ起業ヨリ三十五年廢業迄毎年潜水器二台乃至一台ヲ使用シ、其收穫多キ年ハ海參約七千斤代金五千円ニ達シ普通五千斤三千円前後、少キ年モ二千斤千五百円ヲ下リタルコトナカリキ。廢業後他人經營ノ下ニ引續キ相当ノ漁獲アリテ其入漁料組合ノ財源タリ。

第三 巾着網試驗漁業

試ニ四五月ノ交天氣靜穩ノ日隱岐列島ノ周圍ヲ緩徐ニ航行セヨ。海上至ル所ニ鯖若クハ大鰯ノ大群ヲ見ザルコトナカルベシ。而シテ之ヲ望見セシモノハ嗚呼天与ノ大富源如何ニカシテ之レカ開發ノ方法ナキカト歎息セザルモノナカルベシ。然トモ此等ノ回游魚類ハ年ニ依リ去來集散必期シ得ベカラズ。列島在住ノ漁業者ハ烏賊漁業ヲ偏重シ新規大規模漁

業ノ試験ニ適セザル欠点アリ。這般巾着網漁業試験ノ成績如何ハ列島水産業ノ前途ニ影響スルコト極メテ重大ナラザルベカラズ。斯試験事業ノ経営ニ就キテハ頗ル考慮ヲ要シタリ。其結果ト烏賊漁業ヲ偏重スルノ習慣ナキ漁夫ヲ他ノ地方ヨリ募集シ來リ西郷湾内字場所ニ漁舎ヲ新築シテ別ニ一部落ヲ形成シ種々ノ漁具・漁船ヲ準備シ平素ハ普通ニ従事セシメ置キ一朝目的ノ魚群來集セバ直ニ挙テ巾着網漁業ニ従事セシムノ方針ヲアリタリ。巾着網ノ製造□□等ハ隱岐水産組合ノ指定ニ従ヒ、籠ヲ本邦巾着網ノ鼻祖岩手県大越式ニ取り大越安太郎ヲ聘シテ教師トシ網地・網船等ハ一切之ヲ理想的ニ新調シ網目ハ大鯛并ニ鯖ノ捕獲ニ兼用シ得ラルベク編製シタリ。随テ網目ハ大鯛ニ対スレバ大ニ過ギ鯖ニ対シハ小ニ過クルノ欠点ヲ免ザリキ。

一切ノ準備略整頓スルヤ幸ニ魚群大ニ來集シタルヲ以テ直ニ目的ノ試験ヲ舉行スルコトヲ得タリ。而シテ其成績ハ當時其筋ニ詳細報告シタルガ如ク網縁海底ヲ摩スル深サニ在リテハ苟モ網目ニ留ル限りハ如何ナル魚類ヲモ捕獲シ、敏捷無類ノ魷類ヲモ逸スルコトヲ得カラシメ一般漁業者ヲシテ駭歎セシメタルノ好成绩ヲ奏シタルモ之ニ反シテ網縁海底ヲ摩セザル深サニ在リテハ如何ナル魚類ニ対スルモ總テ無効ナル不成績ヲ告ゲタリ。依テ時期試験ノ方針トシテハ万全ノ策ヲ取り当分尙大越氏ニ抛リ当期実験ノ教訓ニ基キテ大ニ改良ヲ加ヘ専ラ淺海漁獲ヲ行ソテ經濟的持久ヲ図リ其傍ニ於テ徐々深海ニ適スル工夫ヲ懲ラサントシタリ。而シテ此深海工夫ニ就キテハ総員挙テ研究ヲ競ヒ多少考案スル所アリ。前途頗ル多望ナリキ。

幸カ不幸カ事業ノ経営大ニ其當ヲ失セリトテ痛ク投資者等ニ時ノ水産組合長早乙女鶴吉氏等ノ極力排斥ヲ受ケ前途□□□□望ヲ抱キナカラ時期ノ試験方針ヲモ未ダ實施スルニ至ラズシテ爰ニ熱涙ヲ濺キテ此試験事業ト絶縁セザルヲ得ザルニ至レリ。斯クテ此試験事業ハ早乙女組合長希望ノ如ク挙ゲテ投資者自身直接の經營ニ歸シ教師以下漁夫一切ヲ交替シ網ノ構造□□等總テ試験實施ノ方針ハ全然改変ヲ加ヘ、更ニ大

ニ資本ヲ投ジ頗ル盛大ニ举行セラレタルモ成績益不良ニシテ結局甚シキ
失敗ニ終リタリ。

這般ノ試験事業ハ此ノ如ク全ク失敗ニ終リタリト雖モ然カモ我隱岐列
島ニ於巾着網漁業ハ前記試験成績ノ一班二呈シテモ決シテ絶望ノモノ
ニアラザルコト明白ナリ。

第四 竹島經營

竹島ニ海驢駝シク群集スルコトハ從來蔚陵島方面此業者ノ周知スル所
ナリシモ一朝其捕獲ヲ開始セテ忽チ散逸シ去ルコトナキカ、捕獲スルモ
用途・販路アルカ、要スルニ利益ノ全ク不明ニ屬スルガ為ニ從來之レカ
捕獲ヲ企ツルモノナクシテ空シク放遺シアリタルナリ。然レトモ斯ク放
遺セズ如何ニ有望ノ利源モ容易ニ開發セラルハ、期ナカルベク、以テ爰
ニ損害ヲ度外ニシテ斷然其捕獲ヲ試ミタルナリ。而シテ其一箇有望ノ
利源タルコトヲ事實ノ上ニ確カメ得タリ。然レトモ其レト同時ニ又夕忽
チ諸方ヨリ多數ノ此獵者來集シ競争亂獲至ラザル所ナリ。用途・販路
へ未ダ充分講究セラレザル内其材料ハ特ニ絶滅シ去ラントスルニ至リタ
リ。是レニ於テ如何ニセバ此弊害ヲ防ギテ利源ヲ永久ニ持續シ以テ本
島ノ經營ヲ全フシ得ベキカ苦心慘憺タラザルヲ得ザリキ。

本島ノ蔚陵嶋ヲ附屬シテ韓国ノ所領ナリト思ハレ、ヲ以テ將ニ統監府
ニ就テ為ス所アラントシ上京シテ種々畫策中時ノ水産局長牧朴真氏ノ
注意ニ由リテ必ラズシモ韓国領ニ屬セザルノ疑ヲ生ジ其調査ノ為メ種々
奔走ノ末時ノ水路部長肝付將軍斷定ニ頼リテ本島ノ全ク無所屬ナルコ
トヲ確カメタリ。依テ經營上必要ナル理由ヲ具陳シテ本島ヲ本邦領土
ニ編入シ且ツ貸付セラレンコトヲ内務・外務・農商務ノ三大臣ニ願出
テ願書ヲ内務省ニ提出シタルニ内務當局者ハ此時局ニ際シ(日露開戰中)韓
國領地ノ疑アル叢薺タル一箇不毛ノ岩礁ヲ収メテ理想ノ諸外國ニ我國
カ韓国併合ノ野心アルコトノ疑ヲ大ナラシムルハ利益ノ極メテ小ナルニ
反シテ事決シテ容易ナラズトテ如何ニ陳弁スルモ願出ハ終ニ却下セラ
レントシタリ。斯クテ挫折スベキニアラザルヲ以テ直ニ外務省ニ走り時

ノ政務局長山座門二郎氏ニ就キ大ニ論陳スル所アリタリ。氏ハ時局ナレバコソ其領土編入ヲ急要トスルナリ、望樓ヲ建築シ無線若クハ海底電信ヲ設置セハ海艦監視上極メテ屈強ナラズヤ、特ニ外交上内務ノ如キ顧慮ヲ要スルコトナシ、願ラク速カニ願書ヲ本省ニ回附セシムベシト意気軒昂タリ。此ノ如クニシテ本島ハ竟ニ本邦領土ニ編入セラレタリ。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其告示アルヤ、本島經營權ノ獲得ニ就キ又タ続々競願者ヲ生シタルモ結局隱岐在者ニシテ明治三十七年迄ノ出漁者ノ共同經營ニ對シテ許可ヲ与ヘラレタルヲ以テ爰ニ竹島漁獵合資会社ヲ組織シテ其組織ヲ執行シー方ニ海驢捕獲ヲ適度ニ節制シテ蕃殖ノ維持ヲ図リ他方ニハ大ニ用途ヲ講究シ販路ノ拡張ヲ図リタリ。而シテ其今日ニ至ル迄ノ成績ハ左ノ如シ。

- 一 多少蕃殖ノ衰ヘタル形跡ナキニアラザルモ毎年大同小異ノ收穫ヲ持續シ來レリ。
- 一 皮ハ最初僅カニ牛皮代用トシテ需要アリシニ過ギズ隨テ價格遙カニ牛皮ニ及ベザリシモ今日ハ絶高ナル工作品ノ材料ニ供セラレ價格ハ最初ノ三倍ニ昂騰シテ牛皮ヲ凌駕スルニ至リタリ。
- 一 油ハ海外輸出品トシテ鯨油ニ劣ラザル價格及ビ需要ヲ有スルニ至リタリ。
- 一 肉及ビ骨ハ窒素若クハ磷酸肥料トシテ需要無限ナリ。
- 一 尚ホ毎年ノ收穫ヲ表示セバ左ノ如シ。

明治三十八年 壹千參頭 代金 二千五百五十九圓七十九錢二厘
 明治三十九年 壹千三百八十五頭 代金 五千四百三十七圓十七錢五厘
 明治四十年 一千六百頭 代金 五千九百四十圓八十錢
 明治四十一年 一千六百八十一頭 代金 五千八百七十八圓五十五錢五厘
 明治四十二年 一千百五十二頭 代金 四千三百四十四圓十九錢
 明治四十三年 六百七十九頭 代金 二千三百十七圓十三錢四厘
 但シ、四十三年獵獲高僅少ナリシハ千島海驢獵ニ從事セシムベク熟練

ナル人夫ノ多数ヲ帰還セシメタル為メナリ。
又一頭ニ對スル單価ノ年ニ依リ大ニ移動アルハ主トシテ相場ノ變動ニモ
ヨレトモ又々海驢ノ大小及ビ油肥料採製ノ多少等ニモ依リ其關係ハ一
ナラズ。

本島海驢ノ蕃殖ハ前記ノ如ク多少衰へタル傾キアルモ今後捕獲ヲ節制
セバ更ニ衰へルガ如キコトナキノミカ節制ノ程度ニ抛リテハ更ニ大ニ増
殖セシメ得ベキ望確立シ、今後大ニ節ヲ加フルノ方針ナルヲ以テ本島海
驢ノ生産ハ本社ノ經營ニ屬スル限リハ蓋シ無窮ナルベシ。本島ニ於テハ
獨リ海驢獵ノミナラズ、從來頻リニ造林ヲ企テタルモ常ニ幾万ナルヤ知
ルベカラザル迄ニ夥シク蕃殖シ殘レル巨大ナル野鼠ノ妨害スル所ト為リ
テ未ダ成功ヲ告ぐる事能ハズ、依テ爰ニ鼠族ヲ食トスル所ノ貴重ノ小野
獸類ヲ妨害シテ蕃殖スルニ随ヒ自然鼠害ヲ減ジ、然然後造林耕作ヲ為
스ノ方針ヲ取り明治四十三年始メテ狸雌雄二組ヲ放チタリ。而シテ內
一組ハ放養後へい覽レタリ。今後続テ貂ヲ放養スル方針ナリ。

第五千島經營

千島列島ハ根室半島ヨリ殆ド一直線ニ并列シテ「オコーツク」海口ヲ〇シ
勘察加半島乃至「コンマンタースキー」ヲ介シテ北米ノ「アリュシャン」群
島ニ連続セリ。其形勢固ヨリ輕視スベキモノニアらず、往事此列島ニハ
臘虎・腦肭臍獸群棲シ北門ノ一大宝库ナリト云フモ不可ナカリシナ
リ。然ルニ其臘虎・腦肭臍獸ハ夙ニ外国密獵船ノ為メニ濫獲シ尽サレ
テ殆ンド絶滅ニ帰シ国後・択捉島門等南部諸島ヲ除キタル自余ノ大小
二十有五島千四百方哩ノ地ニ概シテ人煙空絶滿目荒涼明治八年国示ガ
甚シキ損失ヲ忍ヒテ樺太ノ北緯五十度以南ノ地ト交換シタル俛空シク
北辺ニ委棄シアルナリ。

抑列島ノ地ハ形延長ニシテ勢急峻□シテ山岳ノミニシテ平地少ク寒氣
酷冽ニシテ殆ト半ヶ年間ハ積雪ニ埋マリ樹木矮¹⁴小物産□乞一見全ク無

14 글자가 명확하지 않음.

用ノ地ニシテ容易ニ移住開拓ノ望ナキカ如シト雖モ深ク深窮セハ此ノ如キ地ニハ自然此クノ如キ地ニノミ適度スル特殊適応ノ經營方法ナクンバアラス、例ヲ拳クレハ 獵虎・臘臍臍獸ハ其特産ノ顯著ナルモノナリ。濫獲ノタメ現在殆ンド絶滅ニ歸シタリト雖モ保護ヲ加フレハ其蕃殖ハ回復セシメ得ベカラズンバアラス。又夕寒氣ノ酷冽ナルヲ以テ列島ニ産スル狐ハ毛皮特ニ美ニシテ價特ニ貴シ、然レトモ冬季食物ノ欠乏スル事甚シクシテ、且ツ長キ為メニ自然蕃殖ヲ妨害セラル、事大ナラザルベカラザルヲ以テ爰ニ食料ヲ補給セ、忽チ大ニ増殖セシメ得ベキハ明カナリ。實地ヲ臨ミテ深ク探求セ、此クノ如キ類例ハ蓋シ限り無カルベシ。

十五ヶ年間獵虎・臘臍臍獸ノ密猟ニ従事シテ仔細ニ列島ヲ調査シタル英人「スノー」曰ク、若シ海驢ニシテ使用サルベキ途アリトセバ列島ニ其材料甚ダ多シ。列島ハ海驢蕃殖地トシテ兎異中最大モノナリト。而シテ其所謂使用セルベキ途ナルモノハ既ニ講究發見セルヲ以テ竹島ニ於ケル經營ニ拠リテ爰ニ適度ノ捕獲ヲ行ヒツ、之ヲ基礎¹⁵トシテ徐ニ特殊適応ノ物産并ニ其經營方法ヲ探求シ以テ大ニ移住開拓ヲ図ラント教シ、今回列島中必要ノ土地地用ノ許可ヲ受ケ現ニ着手ノ準備中ナリ。

第六 石油發動機漁船

我カ隱岐列島ニ於ケル第一鳥賊漁場ハ前年沖合ニ移リ今ニ普通在來ノ漁舟ヲ以テシテハ大ニ不便危險ヲ感ズルニ至レリ。第二鰈・蟹漁場ハ甚ダ廣大ニシテ加フルニ漁利頗ル豊富ナレトモ只其漁場ノ遠キガ為メニ普通在來ノ漁舟ヲ以テシテハ、□ノ如ク漁獲スルコト能ハザル状態ニ在リ、第三多數理ノ沖合ニハ鮪・鯉ノ大群通過ルモ普通在來ノ漁舟ヲ以テシテハ固ヨリ如何トモスルコト能ハズ、石油發動機漁舟ハ主トシテ此等ノ漁業ニシテ今ダ着手セズ、第二、第一ハ現在實驗中ニ屬ス。其外著シキ効能ヲ發揮スルコト能ハザレトモ不日必ラズ其効アルコトヲ確信ス。以上。

15 글자가 명확하지 않음. '기반(基盤)'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도청에 제출) 이력서

본적지 시마네현(島根縣) 스키군(周吉郡) 사이고정(西郷町) 오아자(大字)¹⁶ 니시

정(西町) 아자(字) 맞은편 23번지

평민 어업 나카이 요지부로

겐지(元治) 1년 (1864) 1월 27일생

원 돗토리현(鳥取縣) 도하쿠군(東伯郡) 오가모촌(小鴨村) 오아자 나카가와라촌

(中河原村) 평민 농업 고 진로쿠의 3남으로서 분가

제1 학력

1. 메이지(明治) 5년(1872) 돗토리현 구메군(久米郡) 시모다(下田) 나카무라(中村) 소학교[지금의 도하쿠군 가미나타촌(上灘村)]에 입학.
2. 메이지 11년 (1878) 동교 소학교 전 과정 졸업.
3. 메이지 12년 (1879) 시마네현 마쓰에시(松江市) 니시차정(西茶町) 우치무라 유스케(内村友輔)¹⁷의 상장학사(相長學舍)에 입학하여 한학을 배움.
4. 메이지 13년(1880) 상장학사 숙장(塾長)으로 임명됨.
5. 메이지 17년(1884) 상장학사를 나와 도쿄 고지마치구(麹町区) 무로다정 사문강좌(斯文齋)¹⁸에 들어가서 한학을 배움.
6. 메이지 18년(1885) 실업가가 되기 위하여 사문학교를 그만둠.

제2 사업

1. 메이지 19년(1886) 시찰을 위해 오가사와라도(小笠原島)에 도항함.
2. 메이지 20년(1887)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항하고자 했으나 출발에 즈음하여 좌절하였고 나가사키현(長崎縣) 니시소노기군(西彼杵郡) 마쓰시마촌(松島村)을 유랑함.

16 에도시대 농촌 또는 산촌이었던 지역에 적용된 지명. 오아자(大字)와 아자(字)로 구분. 오아자는 에도시대에 촌(村)이었던 범위에 적용된 지명이며, 아자는 오아자보다 작은 집락(集落)이었던 범위에 적용된 지명. (<https://www.zenrin.co.jp/product/article/geography-180227/index.html>, 검색일: 2023.3.30)

17 우치무라 유스케(内村友輔):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의 한학자, 교육자, 상장사(相長舍)는 우치무라 유스케가 설립한 사숙(私塾: 사교육기관)이다.

18 사문강좌(斯文齋): 사문학회(斯文學會)가 개최한 각종 강좌. 사문학회는 메이지 13년(1880)에 한학 부흥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이다.

3. 메이지 23년(1890) 잠수기 어업에 착수함.
4. 메이지 24년(1891)~메이지 25년(1892)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하여 강치(海驢) 어업에 종사함.
5. 메이지 26년(1893) 잠수기를 사용하여 일본 지쿠젠(築前: 오카야마 현), 쓰시마, 조선 경상·전라 연해에서 강치 혹은 전복 채취업을 하였음.
6. 메이지 27년(1894) 이래 잠수기를 사용하여 돗토리·시마네 두 현의 연해에서 전복 혹은 강치 어업을 하였음.
7. 메이지 31년(1898) 오키 수산조합의 위탁을 받아 건착망(巾着網) 어업 시험에 종사함.
8. 메이지 33년(1900) 돗토리현 사이하쿠군(西伯郡) 미쿠리아야정(御來屋町)의 뜻이 맞는 자들과 함께 동현 수산시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참다랑어 유망(流網) 어업을 시험함.
9. 메이지 36년(1903) 노토반도(能登半島) 에서 잠수기를 사용하여 강치 어업을 시험함. 이해 처음으로 '량코루도' 열암에서 강치 어업을 시험함.
10. 메이지 37년(1904) 모든 잠수기 어업을 접고 강치 어업에만 종사함. 이 해 '량코루도' 열암을 우리 나라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내무·외무·농상부 3대신에게 청원함.
11. 메이지 38년(1905) '량코루도' 열암은 우리 나라 영토가 되어 오키도사가 소관하게 되었으며 다케시마라고 명명됨.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옴.
12. 메이지 40년(1907) 시네마현 시찰 일행을 따라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옴.
13. 메이지 41년(1908) 홋카이도 지시마국(千島国) 시무시루도(新知島) 외 8도의 총 지적 128,184평에 대한 유료 사용 청원 홋카이도 네무로(根室) 지청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음.
14. 메이지 42년(1909) 오키 수산조합의 위탁을 받아 일본형 어선에 석유발동기를 달아 어업상의 시험을 하며 지금까지 옴.

제3 상벌

1. 메이지 29년(1896) 고베시에서 개최한 수산박람회에서 해삼제조 분야 2등상을 수상.
2. 메이지 31년(1898) 돗토리현 도하쿠군 미쿠리아정에서 화재가 났을 때 쌀(燒出米)을 기부한 것에 대해 뜻이 장하다고 하여 목잔 1개를 하사 받음.
3. 메이지 30년(1890) 사이고정(西郷町) 화재 때 쌀을 기부한 것에 대해 매우 훌륭하다고 하여 목잔 1개를 하사 받음.
4. 메이지 39년(1906) 시모노세키시(下関市)에서 개최된 제2회 간사이(關西)·규슈(九州) 부현 연합 수산공진회에서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가 출품한 강치 기름이 3등상을 받음.
5. 메이지 43년(1910)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 개최된 부현 연합 공진회에서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가 출품한 강치 건육 비료가 4등상을 받음.
6. 메이지 43년(191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일영박람회에서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가 출품한 강치기죽 부속 핸드백이 은상을 받음.
7. 이제까지 처벌 받은 이력은 없음.

(위에 부속함)

사업 경영 개요

제1 블라디보스토크 강치 어업

오스트레일리아 도항에 실패한 것은 잠수기 사업자 입간리(笠干里)라는 자에게 사기를 당해 여비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사키현(長崎縣) 니시노기군(西彼許郡) 마쓰시마촌(松島村)을 유랑하던 중 자연스럽게 잠수기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매우 좋은 어구임을 알게 되자 동시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사업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여 남양 모쿠요우도(木曜島)¹⁹ 등에서의 진주 조개, 피지 군도에서의 강치 및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의 강취 채취 등이 가장 유망한 것을 발견했다. 그중 블라디보스토크는 당시 시베리아 철도가 수년 내에 개통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개

19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에 속하는 섬. 토레스 해협 제도를 이루는 섬.

통만 되면 상상 이상으로 번영할 것이고 또 거리도 가까워서 업(業)을 일으키기에 매우 용이하므로 이것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후배인 가조(嘉造)로 하여금 먼저 도항하게 하여 실지 조사 및 러시아 정부와 교섭하게 한 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시간을 보낸 결과 목적인 어업 외 포경업 및 흑룡강에서의 연어 어업 무역 등이 매우 유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큰 희망을 품고 먼저 강치 어업에 착수했다. 이것이 실로 시베리아 연해에서의 잠수기 어업의 효시가 되었다. 어획량은 예상한 바와 같았으나 제조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베리아 연해는 안개가 짙어서 제조 중에 다 부패해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고심한 결과 염장 해삼 제조법을 중국인으로부터 배워서 처음으로 이 곤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염장 해삼 제조는 어찌면 이것이 그 효시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염장 해삼의 수요는 북청 지방에서만 있었다. 메이지 25년(1892)에 잠수기 4대를 사용하였으나 5월부터 9월까지의 5개월간 수확량이 염장 해삼 약 35,000근(斤), 대금 약 1만 3천 엔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때 재류 일본인(당시의 재류인이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도박이나 천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외는 부랑자나 무위도식자들이었고 착실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의 질서와 협박, 주재 무역 사무관(사무관은 니하시(二橋) 모찌, 서기생은 노무라(野村) 모찌)의 간섭과 압박을 받았는데, 동정심이 많은 쓰기우라(杉浦) 상회(당시는 쓰기우라 규다이(杉浦久大) 씨)의 후원이 있었으나 결국 러시아 정부의 금지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파산하였고, 해외에서는 재기 불가능하여 여러 계획이 있었으나 눈물을 삼키며 허무하게 잠수기를 들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후배는 남아서 러시아인 모찌와 함께 포경업을 시도했으나 허무하게 실패하여 이요노쿠니(伊豫國)²⁰ 하시하마(波止濱) 야기(八木) 모찌를 위한 흑룡강 무역을 시작하여 다행히 성공했고 지금은 그 강에서 일본인의 어업 □□가 크게 융성하는 단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후배는 일찍이 야기 모찌의 배□을 간파하고 사업이 정착하지마자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그만두었

20 에히메현(愛媛縣).

다. 여러 사업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결국 병을 얻어서 지난 메이지 35년(1902) 타이완에서 객사했다. 이리하여 야기 모씨는 앉아서 수만금의 이익을 챙겼고 후배의 주선으로 야기의 대리점을 맡게 된 시마다 로쿠타로(島田六太郎)는 유명한 상점 주인이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의 잠수기 사용 강치 어업은 그 후 때때로 러시아인의 명의를 빌려 우리 나라 사람이 경영하기도 했으나 이익의 대부분의 명의를인에게 돌아가고 경영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았다.

제2 돛토리현 강치 어업

돛토리현 해안은 한눈에 바다로 보이는 모래사장으로서 해안에 서식하는 강치가 이 해저에 번식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상상이 안 되나 특히 종래 이 연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치가 잡힌 적이 없으므로 잠수기 어업을 계획하는 것은 무모하며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 어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저의 상태가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으므로 단행하였다.

따라서 그 성과를 양호하여 메이지 28년(1885) 창업 후 35년(1902) 폐업 때까지 매년 잠수기 2대 내지는 1대를 사용하였는데, 수확이 많을 때는 해삼 약 7,000근(斤)에 대금 5,000엔에 달하였으나 보통은 5,000근에 3,000엔 전후였으며, 적을 때도 2,000근에 1,500엔을 내려간 적이 없다. 폐업 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경영하여 상당한 수확을 보고 있어 그 입어료(入漁料)가 조합의 재원이 되고 있다.

제3 건착망(巾着網) 시험 어업

시험적으로 4, 5월 환절기의 평온한 날에 오키열도 주위를 천천히 항행해 보자. 바다 곳곳에서 고등어 혹은 큰 정어리떼를 볼 수 있다. 이를 본 자는 모두 '아아 하늘이 준 이 큰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유 어족들은 해에 따라 오고 가며 모이거나 흩어지기 때문에 때를 기약하기 어렵다. 열도에 사는 어업자는 오징어 어업에만 편중하여 대규모의 새로운 어업을 시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금번 건착망 어업 시도 성과의 여부는 열도 수산업의 앞날에 매우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이 시험사업 경영에는 많은 고려가 필

요하다. 그 결과 오징어 어업에만 편중하는 습관이 없는 어부를 다른 지방에서 모집해 와서 사이고(西郷)항 내 일정 장소에 어사를 신축하여 별도의 부락을 만들고 여러 어구와 어선을 준비하여 평소에는 일상적 어업을 하다가 어느 날 목적인 어군이 몰려오면 즉시 모두 건착망 어업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건착망의 제조 □□ 등은 오키(隠岐) 수산조합의 지정에 따랐으며, 우리 나라 건착망 어업 원조인 이와테현(岩手縣) 오고에(大越) 식을 모범으로 삼아 오고에 야스타로(大越 安太郎)에게 교시를 청했고 이상적인 그물과 어선을 새로 만들었으며 그물코는 큰 정어리(大鰯)와 고등어를 함께 잡을 수 있게 짰다. 따라서 그물코가 큰 멸치를 잡기에는 너무 크고 고등어를 잡기에는 너무 작다는 결점이 있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다행히도 큰 어군이 몰려와서 즉시 목적인 시험 어업을 거행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 성과는 당시 관계청에 상세하게 보고한 바와 같고, 그물 가장자리가 바닷속에 닿는 깊이에서는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어떤 어류라도 포획할 수 있었고, 민첩하기 그지없는 문절망둑류(魷類)라도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업자가 놀랄 정도의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나 그물 가장자리가 해저에 닿지 않는 깊이에서는 어떠한 어류에게도 아무 효과가 없어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이에 다음의 시험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당분간은 오고에 씨가 이번 실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큰 폭의 개량을 하는 한편 얕은 바다에서만 어획을 하여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심해 어업에 적합한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이 심해 어업 방법에 관해서는 회사원 모두가 경쟁적으로 연구하여 다소 결과를 내기도 하였다. 매우 전도유망한 사업이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사업 경영에 실수가 있자 당시의 투자자 중 수산조합장 사오토메(早乙女) 쓰루키치(鶴吉) 씨 등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 전도유망한 사업이었음에도 다음의 시험 방침을 세우지 못하여 눈물을 삼키며 이 시험 사업과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이 시험 사업은 하야오 토메 조합장이 희망한 대로 투자자 자신이 직접 경영하게 되었고 교사 이하 어부 모두를 교체하고 그물 구조 □□ 등 시험 실시를 위한 모든 방침은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으며 더 나아가 새로 자본을 투입하여 대단히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나 성적 불량으로 결국 큰 실패로 끝났다.

금번 시험 사업은 이와 같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하나 우리 나라 오키열도에서의 건착망 어업은 앞서 기술한 시험 성적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절망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제4 다케시마 경영

다케시마에 무수한 강치가 군집하는 것은 종래의 울릉도 방면 어업자는 잘 알고 있는 바였으나 포획을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지 않나, 포획해도 용도와 판로가 있나, 즉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해서 종래에는 포획을 기도하는 자가 없이 허무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도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유망한 이익의 원천이라도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때가 없을 리 없어, 손해를 무릅쓰고 포획을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하나의 유망한 이익의 원천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여러 지방에서 다수의 강치 포획자가 즉시 몰려와서 경쟁적으로 남획을 하게 되었다. 아직 충분히 용도와 판로를 강구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 원재료가 절멸하여 사라질 판이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이 폐해를 막아 이익 원천을 영구히 지속시킴으로써 이 섬 경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고심했다.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통감부를 대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상경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하던 중에 당시의 수산국장 마키 나옴사(牧林眞) 씨가 주의(注意)해 준 대로 반드시 한국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던 끝에 당시의 수로부장 기모쓰키(肝付) 장군이 단정(斷定)해 줌에 따라 이 섬이 완전히 무소속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말하고 이 섬을 우리 나라 영토로 편입한 후 대여해 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부의 3대신에게 청원하는 청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더니 내무성 당국자가 '이런 시국에 (일라개전 중) 한국 한국 영토일지도 모를 작디 작은 한 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주변 국가들이 우리 나라가 한국 병탄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키우게 하면 이익은 매우 적고 반대로 사태는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청원서를 각하시키려고 했다. 이와 같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의 정무국장 아마자 엔지로(山座門二郎) 씨를 상대로 설득했다. 아마자 씨는 '이런 시국이기 때문이야말로 그 영토의 시급한 편입이 필요하다.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매우 좋지 않겠나, 특히 외교에서는 내무성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신속히 청원서를 우리 성(외무성)으로 회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세 좋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섬은 마침내 우리 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

메이지 38년(1905) 2월 22일 그에 대한 고시가 있자, 또 다시 이 섬 경영권 획득을 위한 청원자가 등장하여 경쟁하였으나 결국 오키 거주자로서 메이지 37년(1904)까지의 출어자 공동 경영에 대해 허가를 내려 주었으므로 이에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제 포획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번식이 유지되도록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도를 강구하고 판로 확장을 꾀하였다. 이리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번식이 다소 쇠퇴한 형적이 없지 않아 있으나 매년 대동소이한 수확을 지속해 왔다.
2. 가죽은 처음에는 소가죽 대용의 수요가 조금 있었을 뿐이었고 따라서 가격은 소가죽에 전혀 미치지 못했으나 지금은 고가의 공작품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초의 3배의 가격으로 뛰어 소가죽을 능가하게 되었다.
3. 기름은 해외 수출품으로서 고래 기름 상당의 가격 및 수요가 있게 되었다.
4. 살과 뼈는 질소 혹은 인산 비료로서 무한한 수요가 있다.

또 매년의 수획량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1905)	1,003두(頭)	대금 2,559엔 79센(錢) 2리(厘)
메이지 39년(1906)	13,085두	대금 5,437엔 17센 5리
메이지 40년(1907)	1,600두	대금 5,940엔 80센
메이지 41년(1908)	1,681두	대금 5,878엔 55센 5리

메이지 42년(1909) 1,152두

대금 4,344엔 19센

메이지 43년(1910) 679두

대금 2,370엔 13센 4린

단, 43년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지시마 강치(海馬) 포획을 위해 숙련된 인부 다수를 귀성시켰기 때문이다.

또 매년 마리당 단가의 큰 폭의 변동은 주로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것이나 또한 강치의 크기 및 기름 채취와 비료 제조량의 다소에도 따른 것이며 그 원인은 동일하지 않다.

이 섬의 강치 번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소 쇠퇴한 경향이 있으나 금후 포획을 절제하면 더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절제의 정도에 따라서는 더욱 증식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으니, 앞으로 강도 높은 절제 방침을 세우면 본사가 경영하는 한 이 섬 강치의 생산은 무궁할 것이다. 이 섬에서 단지 강치 포획뿐만 아니라 조림(造林)도 계속 기획해 왔으나 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식하는 거대한 들쥐의 방해로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에 쥐들을 잡아먹는 귀중한 작은 짐승들을 풀어놓아 번식하게 하여 쥐로 인한 피해가 저절로 줄어들게 한 후 줄었고, 조림과 경작을 할 방침을 세우고 메이지 43년(1910) 처음으로 너구리 두 쌍을 풀어 놓았다. 이 중 한 쌍은 풀자마자 죽었다. 금후 계속해서 담비를 풀어놓을 방침이다.

제5 지시마(千島) 경영

지시마열도는 네부로(根室) 반도에서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오후츠크해구를 □하여 캄차카(樺加) 반도 내지는 「콘만타스키」²¹를 끼고 북미의 「알류산」군도로 연결되어 있다. 원래 경시할 만한 것이 아닌 형세인데 종래 이 열도에는 해달과 물개가 군집하는 북쪽의 일대 보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찍부터 외국 밀렵선이 그 해달과 물개를 남획하여 거의 멸절했다.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伊都) 등 남부 제도를 제외한 그 외의 대소 25여 개의 섬 1,400평방마일이 대체로 인연공절(人煙空絶) 만목황량(滿目荒涼)의 땅이었는데 메이지 8년(1875) 국가가 큰 손실을 감수하고 가라후토(樺太, 사할린)

21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동쪽에 있는 코만도르스키에 제도(Commander Islands)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북위 50도 이남 땅과 교환²²한 채 북쪽 끝에 버려져 있었다.

원래 열도의 땅은 길게 늘어진 형태로 산세가 험준한(勢峻險) 산악뿐인 곳으로 평지가 적고 한기가 극렬하며 거의 반년간은 눈에 덮여 있어 수목이 왜소하고 물산이 궁핍(匱乏)하여 일견 아무 쓸모 없는 땅이어서 쉽게 이주하여 개척 가능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땅에는 자연히 이와 같은 땅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경영 방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해달과 물개가 특히 그렇다. 남획 때문에 현재 거의 절멸했다고는 하나 보호를 하면 번식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기가 극렬하기 때문에 열도에서 나는 어우가죽은 특히 아름답고 가격이 매우 높으나, 겨울철 먹이가 없고 또 겨울이 길기 때문에 자연히 번식을 크게 방해하므로 이에 먹이를 보급해 주면 즉시 증식할 것은 명백하다. 현지에 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예가 한없이 많을 것이다.

15년간 해달과 물개 밀렵에 종사하면서 열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바 있는 영국사람「스노」가 말하길, '만일 강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재료가 되는 것이 열도에 매우 많다, 열도는 최대의 강치 번식지이다. 이에 소위 그 사용 방법은 이미 강구되어 있으므로 다케시마 경영을 통해 적절한 양을 포획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서서히 특수 물산 및 그 경영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이주와 개척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엔 열도에서 필요한 토지 사용의 허가를 받아 현재 착수할 준비 중에 있다.

제6 석유발동기어선

우리 오키열도의 제1 오징어 어장이 먼바다 쪽으로 옮겨져 보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어선으로는 불편하고 위험함을 알게 되었다. 제2의 가지마와 게 어장은 매우 광대하고 이에 더해 이익도 크게 나는 어장이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재래식 어선으로는 □년처럼 어획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삼십여 리 밖의 먼바다는 참치, 가다랑어의 큰 떼가 지나가는 곳이나 보통의 재래식 어선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석유발동기어선

22 가라후토·지시마 교환조약(1875).

을 써야 하는 어업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제2, 제1은 현재 시험 중에 있다. 그 외 아직 현저한 성과는 없으나 앞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浮子浮子器、材料、ササ、魚上、繩、大舟、長サ、其他耐腐具一印
 三、漆料
 四、鯨貝保存方法及保存別向
 五、鯨貝製骨(細別)
 六、鯨船(肩巾、全長、進水器(帆、舵、全動器)、帆、材料面積
 七、鯨夫員數、人夫數
 八、鯨漁、漁法、潮流、産質、水深、藻類、状況、以上

☆(島方へ提出せる)履厂書
 本籍地、島根県国吉郡西郷町大字西町字指向二十三番地
 平民漢業、中井、卷三郎
 元治元年正月二十七日生
 元島根県東伯郡小嶋村大字中河原村
 平民農七甚六三男令宗

第一 學歴
 一、明治五年、島取京冬米郡下田中村小学校(現今、東伯郡上灘村)ニ入テス
 一、明治十一年、全校ニ於テ小字全科ヲ卒業ス
 一、明治十二年、島根県松江中西常町内村交輔ノ相長洋舎ニ入り漢字ヲ修ム
 一、明治十三年、相長洋舎塾長ニ任セラレ
 一、明治十七年、相長洋舎ヲ辭シ東京麹町区宝田町斯文會ニ入り漢字ヲ修ム

「ナカイ 요자부로의 이력서」 1

一 明治十八年 実業ニ志シ斯ノ業ヲ辞ス
第三事業
 一 明治十九年 視察ヲタメ小笠原島ニ渡航ス
 一 明治二十年 濠州渡航ヲ企テ奏程ニ臨ミテ領陸果タリガ長崎県西彼村郡松島村渡渡ス
 一 明治二十三年 潜水器渡業ニ着手ス
 一 明治二十四年 二十五日 露領浦斯德附近ニ於テ潜水器ヲ使用シテ海用渡業ニ從事ス
 一 明治二十六年 潜水器ヲ使用シテ我カ筑前、対馬、朝鮮慶尙全羅ノ沿海ニ於テ海用若クハ鮫ヲ獲ル
 一 明治二十七年 潜水器ヲ使用シテ鳥取島根兩県下沿海ニ於テ鮫若クハ海鼠ヲ獲ル
 一 明治三十一年 陸政水産組合ノ委託ヲ受ケテ中着網渡業試験ニ從事ス
 一 明治三十三年 鳥取県西伯郡御来屋町有志者ト組合ヒ今県水産試験場ノ委託ヲ受ケ網渡業試験ヲ試ム
 一 明治三十六年 能登半島ニ於テ潜水器ヲ使用シテ海用渡業ヲ試ム
 此年始メテトリヤンコイルド列岩ニ於テ海用網ヲ試ム
 一 明治三十七年 一切潜水器渡業ヲ廃シ専ラ海用網ニ從事ス
 此年トリヤンコイルド列岩ヲ本邦領土ニ編入セラル内務、外務、農商務三大臣ニ稱ヒ出ツ
 一 明治三十八年 「トリヤンコイルド」列岩八本邦ヲ領土ニ歸シ陸政島司所管ニ編シ竹島ト命名セラル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2

竹島漁獵合資会社ヲ組織シテ其事務ヲ執行シ以テ今日ニ至レリ

一 明治四十年 島根県視察員一行ニ隨ヒ 露領浦塩斯德ニ往復ス

一 明治四十一年 北海道牛島郡新島外八島ニ於テ 終地積於式万八千六百八十四坪有料
使用ノ許可ヲ北海道庁根室支庁ニ願出テ許可ヲ受ク

一 明治四十二年 陸岐水産組合ノ委託ヲ受ケテ日本製漁船ニ右油套動機ヲ提供セ之ガ漢
業上ノ試験ヲ行ヒ以テ今日ニ至レリ

第三 賞罰

一 明治二十九年 神戸市ニ南催セラレタル水産博覽會ニ於テ海務製造ニ對シ 賞賞ヲ受ク

一 明治三十一年 鳥取県東伯郡御米屋町火災ヲ際燒出米ヲナレタルハ特志ナリトシテ
木柱一箇ヲ下賜セラレ

一 明治三十年 西郷町火災ノ際燒出米ヲ寄付シタルハ殊勝ナリトシ木柱一箇ヲ下賜セリ

一 明治三十九年 下関市ニ於テ南催セラレタル分ニ 岡國西九州府県聯合水産共進會ニ
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ノ出品ニ係ル海産油ニ對シ 三等賞ヲ受ク

一 明治四十二年 名古屋市中區南催セラレタル府縣聯合共進會ニ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
ノ出品ニ係ル海産乾肉肥料ニ對シ 四等賞ヲ受ク

一 明治四十二年 英皇御教ニ於テ南催セラレタル日英博覽會ニ於テ竹島漁獵合資会社
ノ出品ニ係ル海産皮付極手攪乾ニ對シ 銀賞ヲ受ク

一 曾テ処罰セラレタル事ナシ

次(右ニ附奉スル) 事業經營概要

第一 浦塩斯德海用漁業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3

洋洲渡航ノ領事ノ潜水器業者莫于里ナルモノノ詐術ニ起リ旅費金ヲ失セタルニ由ル
 其爲メ長崎京面彼村即松島村流傳中自然潜水器ヲ研究シ其裏モ有利ノ漁具タルヲ知リ
 ルト同時ニ之ヲ使用スヘキ地并ニ事業ヲ營ルノ書類ニ執リテ調査シ南洋木蘭島其他ニ
 於ケル眞珠介コトヲ発見シタリ孰中浦蘆斯爲ハ當時西北亞鐵道敷設未周ニ開通ノ際下
 界モ有望ナルコトヲ発見シタリ且ツ地界モ近クシテ起臺島モ安易
 リ其ノ貫通ノ曉ニ於ケル繁榮ハ想像スルニ餘リアリ且ツ地界モ近クシテ起臺島モ安易
 ナルヲ以テ後ニ之レヲ在ワルニ至シタルモノナシ 今華船造ヲ以テ先ヅ海航ニテ實地
 ノ調査及ビ露國政府ニ封スル交渉等ヲ爲サレメ大ニ費用ヲ省キ日ヨモ甚シク結果日
 的漁業ノ外捕鯨業及ビ置老江ニ於ケル鯨漁業買島等ノ願ル有望ナルコトヲ確カメ得タ
 リ斯クニ種々多ク望ヲ抱キ先ヅ海航漁業ニ着手シタリ是レ突ニ西北利亞活海ニ於ケ
 ル潜水器漁業ノ端矣ナリトス其後獲ハ予期ノ如クナルゴトヲ得タレモ實製造ハ大ニ困
 難ニタリ蓋シ西北利亞活海ハ濠羅洋ノ製氷中悉ク廢敗シ去ルヲ以テ予リ種々苦心ノ末
 塩造法ノ製法ヲ支那人ヨリ伝習シ始メテ此困難ヲ脱ルハコトヲ得タリ本邦人ノ塩造法
 製造ハ亦タ恐ラク之ヲ以テ端矢ト爲スナルハレ塩造法ハ專ラ北清地方ニ需用アルモノ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4

ヲ經營スルモノアリレバ利益ノ大部分ハ名義人ノ手ニ歸シ直接經營者ニ歸スル利益ハ
甚大ナラザリシカ如シ

第三 鳥取県海産物産業

鳥取県海岸ハ一望ノ沙濱ニシテ磯ニ種々ベギ海鼠ガ此海産物ニ當テストハ一見其價値
得ハカニ入持ニ如何ナル方ヲ以テモ從業當テ此海鼠ガ採擷セツレカ
ルコトヲキウ以テ及ニ潜水器産業ヲ在ウルハ無謀ナリトテ大ニ危ムモノアリシモ地
漁業者ガ説ク所ニ海産物ノ狀態ニ對シテ見ル所アリタルニ由リ斷行セタムセリナリ
里邊其狀態既ニ良好ニシテ明治二十八年ノ起業ヨリ三十五年泰業迄毎年潜水器ニ台乃
至一トヲ使用シ其收穫多キ年ハ海産物七千斤(代金五千元)ニ達シ並ニ五千斤三千元前後
少キ年モ二千斤至五百円ヲ下リタルコトナカリキ 産業後他人ニ告言ノ下ニ引續キ相
ノ漁獲アリテ其入漁料組合ノ取添ナリ

第三 中着網試獲漁業

試ニ四月ノ交天邊霧霧ノ日陸岬列島ノ周圍ヲ繞行セニ航行セヨ海上至ル所ニ鰯若ク
ハ大鰯ノ大群ヲ見サルコトナルベシ而シテ之ヲ望見セシモノハ鳴呼天ノ大雷聲如
何ニシテ之レハ聞知ノ方ヲオキカト歎息セサルモノナルベシ然レバ此等ノ回遊魚類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6

八斗ニ依リ去来甚散必期ニ符ヘカラス列島在任ノ漁業者ハ鳥賊漁業ヲ侮重シ新羅大規
 捕漁業ヲ試験ニ適セガレ久キテリ遂般中着網漁業ヲ試験ノ成程如何ハ列島北着業ノ前途
 ニ影響スルコト極メテ重大ナラガレバカラス斯試験書業ノ経営ニ款キテハ頗ル老成ヲ
 帶シタリ其結果ト鳥賊漁業ヲ侮重スルノ管轄ナキ漁夫ヲ如ノ地方ヨリ募集シテ西御
 港内宇津島ニ漁舎ヲ新築シテ別ニ一郡港ヲ形成シ得ルノ漁夫漁船ヲ設備シテ平素ハ管
 轄ニ從事セシメ置キ一郡目ハ魚鱈捕獲セバ直ニ差テ中着網漁業ニ從事セシムルノ方
 針ヲ取リタリ 中着網ノ製造装置等ハ改以水産省令ノ指示ニ從ヒ能ク本邦中着網ノ專
 習者手集大成式ニ取り大成安太郎ヲ聘シテ教師トシ網比網郡等ハ一切之ヲ運送的ニ新
 網ニ網目ハ大鱈糸ニ替テ捕獲ニ常用ト爲サルバク編製ニタリ隨テ網目ハ大鱈ニ對スレ
 バ大ニ遠式鱈ニ對シバ小ニ遠ケルノ欠点ヲ免レザリキ

一切ノ準備略電報スルヤ卒ニ魚鱈大ニ集集タルヲ以テ直ニ目的ノ試験ヲ奉行スル
 コトヲ得タリ而シテ其成績ハ岩崎其筋ヲ詳細報告タルガ如ク網線海在ノ摩スル深サ
 ニ在リテハ尙モ網目ニ留ル隔リハ如何ナル魚鱈ヲモ捕獲レ敏捷無難ノ釣獲ヲモ得スル
 コトヲ得カラシメ一般漁業者ヲシテ敬服セシメタルノ好成績ヲ奏シタルモ之ニ及シテ
 網線海在ノ摩セガレ深サニ在リテハ如何ナル魚鱈ニ對スルモ綫ヲ無効ナル不攪獲ヲ得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7

不タリ 依ラ次期試験ノ方針トシテハ万全ノ策ヲ取リ者今尚大越式ニ執リ岩期試験ノ
 教訓ニ基キテ大ニ改良ヲ加ヘ耳ヲ改海邊ヲ行ンテ経済的持久ヲ図リ其務ニ於テ徐々
 深堀ニ由スルニ工夫ヲ施ラサントシタリ而シテ此深堀工夫ニ就キテハ終局考ヲ研究スルヲ
 多少考究スル所アリ前途既ニ多量ナリキ
 事力不奉ノ事案ノ経営大ニ其當ラ失マリトテ幕ノ投資考等ニ時ノ水産組合長早之中
 野吉兵衛ノ極力排斥ヲ受ケ前途懸念甚望ヲ抱キテかう次期ノ試験方針ヲモ未ダ定メ
 ス此に至ラズシテ爰ニ熟慮ヲ澁キテ此試験事業ト絶縁セザルヲ望ムルニ至レリ 斯ク
 テ此試験事業ハ早之中組合長希望ノ如ク考ヘテ投資者自身直轄ノ経営ニ採ル所以下
 漢夫一印ヲ交替シ網ノ構造船等終テ試験實施ヲ方針ハ全盤改変ヲ加ヘ更ニ大ニ資本
 ヲ投ジ擬ヒ登天ニ奉行セラレタルモ亦懐念ヲ長ニシテ終局ニ至ルニ至リキ
 此般ノ試験事業ハ此ノ如ク全ク失敗ニ終リタリト望ムルカモ我段以列島ニ於ケル中
 著稱深業ハ前記試験航行ノ一斑ニ至シテモ決ニ絶望ノモノニアラザルコト明白ナリ
 第四 竹島聖堂
 竹島ニ海軍ノ勲ニク群集スルコトハ従末樺島ヲ面此澳者ノ用知スル所ナリモ一
 朝其捕獲ヲ開始セバ忽チ散逸シ去ルコトナキカ捕獲スルモ用途賅アルカ要スルニ利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8

益ノ全ク不明ニ屬スルガ爲メニ從未之レガ捕獲ヲ企テラルモノナクシテ空ニク故遺ニア
 リタルナリ然レト氏斯ク故遺ニテ如何ニ有望ノ利益ヲ容易ニ捕獲セラルハノ期ナカルベ
 ク以テ爰ニ損害ヲ度外ニシテ斷然其捕獲ヲ欲ミタルナリ而シテ其一箇有望ノ利益タル
 コトヲ事實ノ上ニ確カメ得タリ然レト氏其レト同時ニ又タ忽チ諸方ヨリ多數ノ此輩若者
 乘リ獲手遊獲ヲラガル所ナリ用ニ取賂ハ未分充令講究セラレタル内其材料ハ將ニ終滅
 シ去ラントスルニ至リタリ是レニ於テ如何ニセバ此輩ヲ防ギテ利益ヲ永久ニ持續シ
 以テ本島ノ經營ヲ全フレ得ベキカ苦心慘怛タラザラザラ得ザリキ

本島ノ樺皮島ヲ附屬シテ韓國ノ所領ナリト思ハル、ヲ以テ將ニ統監府ニ報テ爲ス所
 アラントシ上京シテ種々画策中時ノ水産局長枚林良氏ノ注意ニ由リテ必ラズシモ韓國
 領ニ屬セザルノ疑ヲ生ジ其調整ノ爲メ種々奔走ノ末踏ノ水踏奇長肝付將軍斷定ニ罷リ
 テ本島ノ全ク無所屬ナルコトヲ確カメタリ依テ經營上外票ナル理由ヲ具陳シテ本島ヲ
 本邦領上ニ編入レ且ツ管付セラレンコトヲ内務外務農商務ノ三大臣ニ稟出テ獲事ヲ内
 務省ニ提出シタルニ内務省爲者ハ此際爲ニ際シ(日露南嶺中)韓國領地ノ疑アル叢荒
 タル一箇不毛ノ岩礁ヲ收メテ環視ノ諸外國ニ我國が韓國併吞ノ野心アルコトノ疑ヲ大
 ナラシムルハ利益ノ極メテ小ナルニ及レテ事体決レテ容易ナラズトテ如何ニ陳言スル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9

毛履出ハ解ニ却下セラレントレタリ斯リテ挫折スハキニアラザルヲ以テ直ニ外務省ニ
 走リ時ノ政務局長山座四ニ部以ニ執キ夫ニ輪陳スル所アリタリ氏ハ時局ナレハコソ其
 領土編入ヲ急要トスルナリ望稱ヲ建策シ無餘若クハ海を電信ヲ設置セバ前艦監視上極
 メテ尾竟ナラスヤ特ニ外交上内務ノ如キ概悉ヲ掌スルコトナレ煩ラク速カニ撥書ヲ本
 省ニ回附セシムバントモ急野望ヲナリ此ノ如クニレテ本島ハ竟ニ本邦領土ニ編入セラレ
 タリ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其告示アルヤ本島經略ノ獲得ニ執キ又夕統々授教者ヲ
 生シタルモ結局廢政存者ニシテ明治三十七年迄ノ出獵者ノ共同信託ニ對シテ許可ヲ予
 ヘラレタルヲ以テ後ニ竹島總領合資会社ヲ組織レテ其組織ヲ執行シ一方ニハ海馬獵獲
 ヲ圖度ニ節制シテ舊苑ノ維持ヲ固リ他方ニハ大ニ用途ヲ擴充シ販路ノ擴張ヲ固リタリ
 タリ而シテ其今日ニ至ル迄ノ成績ハ左ノ如シ
 一 多少舊苑ノ衰ハタル跡跡ナキニアラザルモ毎年大同小異々收獲ヲ持續シ未シリ
 一 皮ハ器初備カニ牛皮代用トシテ現要アリシニ過キ又隨テ價格違カニ牛皮ニ及ハザリ
 シモ今日ハ倍出ナル工作品ヲ材料ニ採セラレ價格ハ器初ノ三倍ニ昂騰シテ牛皮ヲ凌駕

「나카이 요지부로의 이력서」 10

スルニ至リタリ

一 油ハ海外輸送品トシテ鯨油ニ劣ラサル價格及ビ商賣ヲ有スルニ至リタリ、
一 肉及ビ骨ハ窒素素若クハ燐酸肥料トシテ需要無限ナリ

尚ホ毎季ノ收穫ヲ表示セバ左ノ如シ

明治三十八年	老牛券額	代金 二千五百五十九圓七十九錢二分
明治三十九年	老牛券額	代金 三千四百三十七圓 十七錢 五分
明治四十年	一千六百頭	代金 五千九百四十四圓 八十錢
明治四十一年	一千六百八十頭	代金 五千八百七十八圓五十五錢五分
明治四十二年	一千百五十三頭	代金 四千三百四十四圓十九錢
明治四十三年	六百七十九頭	代金 二千三百七十四圓十三錢 四分

但シ四十二年 獵獲高僅少ナリシハ千島海峽ニ從事セシムバク孰録ナリ人夫
ノ多額ヲ歸還セシメタル者ナリ

又一頭ニ付スル單價ノ年ニ依リ大ニ異動アルハ主トシテ相場ノ変動ニモヨシキ
又々海野ノ大小及ビ油肥料採取ノ多寡ノ等ニモ依リ其關係ハ一ナラス

本島海野ノ蕃殖ハ前記ノ如ク多少老へタル程キアルニ今後捕獲ヲ限制セバ更ニ老へ
ルガ如キトナキノミカ限制ノ程度ニ依リテハ更ニ大ニ増殖セシメ得ベキ望望立シ今
後大ニ節ヲ加フルノ方針ナルヲ以テ本島海野ノ蕃殖ハ本社ノ経営ニ屬スル限リハ蓋シ

「ナカイ 요자부로의 이력서」 11

無窮ナルヘシ 本島ニ於テハ地ヲ海野嶽ノミナラス從事振リニ遊林ヲ企テタルモ帶ニ
 幾ナルヤ知ルヘカヲザル迄ニ駭ヒリ蕃絶シ残レル巨大ナル野籠ノ防害スル所ト爲リ
 テ未カ放功ヲ告クル一能ハズ依テ差ニ胤族ヲ食トスル所ノ貴重ノ小野獸類ヲ放營シテ
 蕃絶スルニ隨ヒ自然風雪ヲ滅シ然ル後ヨリ林捕作ヲ爲スノ方針ヲ取り明治四十三年始メ
 テ狸雄ニ組ヲ放チタリ而シテ内一組ハ放營後裝レタリ今後統テ組ヲ放營スル方針ナリ

半島列島ハ相當半島ヨリ殆んど一直線ニ並列シテ「オコーツク」海ロラ〇レ嶽峯地
 半島乃至「コンマンカ」スキーレヲ介シテ北米ノ「アリユ」ンヤンレ群島ニ連統セリ其
 形勢固ヨリ輕視スベキモノニアラズ往事此列島ニハ臍鹿・臍鹿筋狀群島ニ北門ノ一大
 宝庫ナリト云フモ不可ナカリシナリ然ルニ其臍鹿・臍鹿筋狀ハ夙ニ外國兎獵船ノ爲メ
 ニ濫獲レズサレテ殆んど絶滅ニ殆レ國後採探島内等南群島ヲ除キタル自余ノ大小ニ
 十有五島千四百方哩ノ地ニ概シテ人煙空絶藩自荒涼明治八年國本ガ甚シキ損矣ヲ忍ヒ
 テ權太ノ北籍至十度以南ノ地ト交換シタル後空シク此國ニ番業シアルナリ

抑刻島ノ地ハ形勢長ニシテ形勢險峻シテ山岳ノミニシテ平地少ク寒氣酷烈ニシテ殆
 んど半々半向ハ降雪ニ埋マリ樹木稀少ノ爲ニ一見全ク無用ノ地ニシテ容易ニ移往南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 12

第六 石油金御換渡船
 飛カ防以列島ニ於ケル第一島賊渡場ハ道ニ沖合ニ移リ今ニ普通在来ノ渡舟ヲ以テシ
 テ八大ニ不便爲障ヲ爲スルニ至レリ第二島賊渡場ハ甚カク大ニシテ扱フルニ渡船取ル
 豊富ナレバ只其渡場ノ志キカ爲メニ普通在来ノ渡舟ヲ以テシテハ甚ク取ク渡船スル
 能ハザル状態ニ在リ第三島單ノ沖合ニハ船隻ヲ大群通過ルモ場也在来ノ渡舟ヲ以テ
 シテ八箇ヨリ如何トモスル一能ハズ石油金御換渡舟ハ主トシテ此等ノ渡業ニシテ未ダ
 着手セズ第六 第一ハ現在富強中ニ在リ未ダ老シキ 効能ヲ發揮スル一能ハガレバ不
 自ヤラス其効アルコトヲ確信ス 以上

大別級ノ面リ内務部表ヨリ申越ニ升御選抜ノ上何合ノ御回答相成度矣 御都合ツケ
 ハ右試験トシテ御送付相成リテハ如何ニ云哉 先ハ通紙申上ス
 正奉 授手

竹島強犯合社御中
 五月三十一日

☆明治四十四年五月三十一日
 海防殿ハ既米ニ於テ担当職務ヲ有スルモ本邦ニテハ此等製業者充分ナラズ從ツテ未
 ダ世ニ貴重セラルルニ至ラズ依テ貴所諸君有テ之ヲ之が試験致度趣ヲ以テ左記
 如理法ニ依リ本親及(約十坪位)モ一ニ十枚該製業者ヨリ送付云御照会致度ニ付可然御
 取付相成者此致度照会候也

23

서평



- **이석용**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도시환 편, 2022, 동북아역사재단
- **주성재** |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연구」: 김순배 · 김종근 · 양윤정 · 정인철 공저, 202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도시환 편, 2022, 동북아역사재단)

이석용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사 조명 학술연구서
- I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적 과제와 영토문제의 개관
- II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와 평화공동체의 과제 검토
- IV.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결방안 검토
- V.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학문적 수월성을 구비한 연구서

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사 조명 학술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구총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여섯 분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학제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출간한 것인데, 제1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와 미결의 과제」는 편찬책임자인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박사, 제2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1965년 체제'의 원점」은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평화공동체의 과제」는 아베코키 교수, 제4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적 유산과 영토갈등」은 알렉시스 더든 교수,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기원」은 하라 키미에 교수,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은 이성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들은 각자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체결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조약체결 과정을 살피고, 카이로선언과 알타회담, 포츠담선언, SCAPIN 677과 미국과 영국 등의 조약 초안 등을 분석하여 영토문제와 식민지배·전쟁피해 관련 배상체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검토하며, 최종 강화조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적절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적 과제와 영토문제의 개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어 1952년 4월 28일에 효력발생에 들어간 48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간의 조약이다. 본래 국제법에서 강화조약은 국가 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여 평화상태를 회복하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조약이므로, 영토문제와 전쟁피해 관련 책임 문제에 있어서 패전국에게는 다소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동서냉전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어 국제정치적·경제적 고려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당초 연합국이 의도한 강화조약에서 상당히 이탈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각서, 즉 SCAPIN 677호는 독도와 쿠릴열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등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토를 대부분 포기하도록 하여 일본에 대한 징벌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항복 이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체결되었으니, 조약에는 이미 수립된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급변해 가던 당시의 국제질서가 반영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미국이 주도하였는데, 미국이 작성한 이 조약의 초안들은 냉전의 격화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일본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 세력을 구축하기로 한 카이로선언,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구소련에 할양하기로 한 알타협정, 그리고 이를 확인한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계승하여, 초기 미국이 준비한 조약 초안들은 일본의 새로운 국경선을 위도와 경도로 자세히 기재한 지도를 첨부하였으며 국경선 근처의 작은 섬의 명칭과 귀속국가까지 명시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본격화로 미국이 일본을 공산세력에 대비하는 방파제로 여기게 되면서 당초의 목표는 희미해지고 규정은 모호해졌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장에서 영토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며, 대만과 평후제도, 쿠릴열도, 사할린 남부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던 남태평양의 도서들은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남극과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귀속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쿠릴열도부터 남극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광활한 범위의 영토문제를 다루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접근과 냉전체제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은 분단의 문제를, 그리고 독도, 센카

쿠릴도, 쿠릴열도, 오키나와, 남사제도 등은 영토의 귀속과 그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가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토와 국경선은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귀속이 결정되었으며, 대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는 카이로선언부터 강화조약 초기 초안까지는 한국에 귀속되게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잠시 일본령으로 표기된 후 최종적으로는 언급 자체가 사라져 독도 영유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었다. 쿠릴열도는 연합국이 소련의 참전을 독려하고자 알타협정에서 소련에 할양하기로 약속한 대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구소련의 영토가 되었으나 현재도 러일 간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일본인들의 고유영토 인식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한 결정에 따른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969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 탐사보고서가 그 부근에 해적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영유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전으로 영토를 회복하도록 한 카이로선언에 따라서 센카쿠열도가 중국이나 대만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본은 강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될 지역으로 보았고 실제로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열도도 일본에 반환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이처럼 다소 아쉬운 부분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영토문제의 속성상 조약체결 이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조약의 개편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고자의 제안대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와 식민지배 관련 배상에 관한 합의들도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11조에서 일본은 동경제판소와 기타 국제군사법정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하였고, 제14조 (a)항은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

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배상에 관한 원칙은 설정하였지만, 동시에 일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에는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시족과 같은 규정을 첨부하여 유연한 적용을 예고하였다. 나아가 동조 (b)항은 연합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배상청구권과 일본과 그 국민이 자행한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서구의 연합국 대부분은 대일배상요구를 포기하였고, 한국과 중국, 월맹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영국령이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배상요구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스스로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였고, 버마와 인도네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강화회의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였다. 결국 강화조약 서명국가인 필리핀과 월남만이 일본과의 개별협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취지는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합의서와 청구권협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양국과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공 피해자들의 배상 추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된 한일 간 국교정상화 협상은 1951년 시작되어 양국 간 기본관계, 재산청구권,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선박, 문화재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국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시하였고, 일본은 남한에 남겨진 일본인 사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미군정이 재산을 접수하여 한국 정부에 양도한 효력이 인정되어 일본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양국 간 협상은 일본 대표의 망언 등으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62년 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오히라 외상이 청구권 관련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그 후에도 양국 국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은 1965년 6월 22일에야 조인되고 동년 12월 18일 발효하였다.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위해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경제협력 조치들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

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였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계속 부인하는 상태에서 청구권 자금도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그 하부시스템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서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후속대책 위원회가 일본의 책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그 후 한국 정부도 외면해 온 한국인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배상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작위의무 위반을 지적하였다. 2012년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정당한 것으로 계속 주장하여 갈등이 증폭되었으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위안부’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합의는 이로써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문제인 정부는 이러한 합의에 회의적이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갈등이 재연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최근 이들에 대한 배상합의를 발표하여 피해자 15명에 대한 판결금 40억 원을 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이 출연하는 재단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문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그러한 방향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낼지는 미지수이다.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국가 중심의 국가 간체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강화조약도 전쟁이나 식민지배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데 소홀하면 아니

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약체결 시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문제는 덮어 둔 채 일괄처리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기타 관련 조약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II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와 평화공동체의 과제 검토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는 국내의 학자 여섯 분의 옥고를 모은 것이다. 이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박사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와 미결의 과제」(제1장),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1965년 체제'의 원점」(제2장), 아베 코키 교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평화공동체의 과제」(제3장), 알렉시스 더튼 교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적 유산과 영토갈등」(제4장), 하라 키미에 교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기원」(제5장), 이성환 교수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제6장)에 대한 서평이다.

제1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와 미결의 과제」는 편찬책임자인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박사의 글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의 패전으로 귀결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미국은 전후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공산권의 세력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매우 관대한 내용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오래된 현안인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책임과 독도 영유권 문제의 기원 및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내용 및 미결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저자는 한일 관계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식민지배에 따른 청구권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경제협력 방식으로 풀어 가기로 정치적 타협을 한 것으로 보였다. 한일 간의 청구권에 관한 합의는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른 제반문제의 청산이라는 기초 위에서, 국교수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배상이란 의미는 배제된 채 국가 간 경제협력조약의 형태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청구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도 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제 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부분은 개인청구권 문제였다. 이는 결국 개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이를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저자는 이 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국제사회는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포츠담선언을 거치면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팽창, 동구권의 공산화, 중국 공산당의 본토 장악, 한국전쟁의 발발 등을 보면서 경계심을 갖게 되어 일본을 징벌대상에서 대공산권 방과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관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 결과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면책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 등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과 같은 날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것이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포츠담선언에서 주요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SCAPIN 677에서 일본의 영역을 축소하였는데 특

히 독도가 한국령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산세력의 팽창에 따른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을 반공국가로 재건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대일강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엄격한 강화조약 대신에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등에서 징벌적 성격이 배제된 강화조약을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미국과는 별도로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초안을 독자적으로 작성하였고, 미국의 초기 초안들과 유사하게 징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나, 덜레스는 일본 측의 불만에 동조하여 영국이 초안을 폐기하도록 설득하였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연합국 간에 합의된 대일강화조약의 원칙들은 그렇게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하였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되어 이듬해 4월 28일 발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조 (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만과 쿠릴열도 등도 일본 영토에서 분리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귀속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강화조약이 모든 섬들의 귀속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카이로선언과 SCAPIN 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할 때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일본이 취한 1696년 도해금지령과 1877년 태정관지령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과 고유영토론 주장을 비판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독도의 귀속에 대한 무언급에도 불구하고 한국령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에 근거한 독도영유론을 비판하였다.

제2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1965년 체제’의 원점」은 일본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의 글이다. 그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전쟁을 종결지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넓은 의미에서 전후의 국제질서를 결정한 다국 간 합의이고,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은 미국의 권유로 시작되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한일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부체제(서브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일본 전쟁범죄 처벌과 전후배상 관련 합의들은 당초 강화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부드럽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11조에서 동경재판소와 다른 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일본의 자원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규정을 첨부하였다. 그리하여 구미의 연합국 대부분은 대일배상요구를 포기하였는데, 이러한 무배상 방침은 냉전체제의 등장으로 미국이 중국이 아닌 일본을 파트너로 정하고 파트너로서 일본의 부흥을 돕고자 한 것이 그 배경이라는 것이다.

한일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청구권 협상은 1951년 미국의 주선으로 시작되었으며, 1952년 2월 15일부터는 본회담이 시작되어 기본관계, 재산청구권,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선박, 문화재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국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시하였고, 일본 측은 남한에 남겨진 일본인의 사유재산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 (b)항에 따라 미군정이 남겨진 재산을 접수하여 한국 정부에 양도한 효력을 승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미가 없었다. 진행되던 청구권 협상은 일본 측 대표의 망언 등으로 4년 반 동안 중단되기도 하였다. 1962년 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무상 간 청구권 관련 합의가 타결된 후에도 양국 국민들의 반대 등으로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6월 22일에야 조인되고 동년 12월 18일 발효하였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의 대한국 경제협력조치로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과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규정과 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었으나, 저자는 경제협력을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청구권 자금을 ‘독립축하금’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군 조선인 병사의 유골송환, 사할린 조선인의 귀국, 피폭자의 피폭자원호법 적용에 협력하였다. 나아가 1993년 8월 4일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관여를 인정하였으며,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는 자국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였고, 1995년 7월에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인식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지만 그로 인해 조선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는 ‘합법·부당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는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하부시스템인 1965년 체제는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후속대책 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한계를 맞았다고 하였다. 저자는 그 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 정부로부터도 외면받아 온 한국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여 온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의 작위 의무 위반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다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정당한 것으로 돌려놓으려 시도하였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위안부’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설립할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이 합

이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합의에 회의적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합의를 발표하여 피해자 15명에 대한 판결금 40억 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이 출연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일본기업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 문제는 과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그 하부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에 비하여 개선된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한일 양국 간 협력체제의 수립이 중요해진 만큼 그러한 방향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낼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평화공동체의 과제」는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교의 아베 코키 교수의 글이다. 아베 코키 교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국가중심주의와 식민주의에 기초한 국제체제를 정립한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기여하도록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법에서 강화조약은 주권국가 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시상태로 회복하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조약이다. 이러한 전형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 패전국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의무를 인정하여 그 조건을 정하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토를 반환하는 데 관한 합의들을 담고 있으나, 영토의 처리기준이 모호하고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가 귀속될 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영토문제 해결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배상의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으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배상을 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묘한 규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법인 포함)의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연합국은 대부분 일본에 배상을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취지는 1965년 한일 간 기본합의서와 청구권협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추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국제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국가중심주의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제인권보호가 되면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말대로 평화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폭력의 부재라고 한다면, 직접적 폭력(전쟁 등)은 물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식민주의, 인종주의, 국가중심주의 등)도 제거하지 않으면 평화는 실현되지 않는다. 평화의 개념을 극적으로 확장한 갈통의 이러한 입장에 연결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기초라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도 역사 속에 고정된 체제가 아니라 ‘평화’ 개념의 변용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법 규범을 반영하여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대국 또는 남성지배엘리트 주도의 법논리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소수자 인권보호, 식민주의 척결 등 오랫동안 봉쇄되었던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약서명 시점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문제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관련 조약의 해석과 운용에도 오늘날의 국제인권법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는 중대한 국제법위반이 되는바 당연히 책임과 배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저자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질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그 구조가 만들어져 정착되었으며,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직시하는 것을 오히려 혐오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법부와 이전 정부의 진보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는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공과와 개선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IV.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결방안 검토

제4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역사적 유산과 영토갈등」은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글이다. 논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약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번역문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려다 보니 논점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에서는 센카쿠(尖閣)열도, 중국과 대만에서는 дя오위다오(釣魚島)라고 부르는 동중국해의 섬을 중심으로 중국, 대만, 한국, 러시아를 상대로 주장하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제국주의와 결부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류큐국을 1879년 병합하였고, 청일전쟁 당시 대만과 인접 도서를 점령한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따라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이 터지기 10년 전부터 무주지(terra nullius)였던 이 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 이시가키 섬 주민 고가 다쓰시로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생선건조와 알바트로스 가공업을 한 것을 들어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1895년 1월 14일 내무성이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내각 기밀결의안을 가결하고, 고가 다쓰시로가 신청한 임차권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등 센카

쿠릴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일본인들은 선조들의 땅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지금도 러시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945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소련의 대일본 참전의 대가로 쿠릴열도의 할양을 약속하였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쿠릴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은 구소련, 즉 현재의 러시아에 넘어갔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 섬을 자국의 고유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4개 섬 전체 또는 2개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도 불구하고 쿠릴열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더든 교수는 독도의 경우에는 일본이 이를 감히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관할권 인식과 행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한행사는 러일전쟁 당시 독도에 설치한 통신기지와 1905년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에 의해 독도를 선점을 통해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주장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독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이 섬이 너무 작아서 이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할 영토의 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연합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고자 열심히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만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지위를 모호하게 한 미국의 결정은 동북아 지역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기원」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의 하라 키미에 교수의 글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에 효력발생에 들어간 대일강화조약인데, 저자는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항복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되면서 조약은 전후처리를 넘어 냉전을 배경으로 급변하던 당

시의 국제질서를 반영한 문서가 되었다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장은 ‘영역(territory)’에 관한 부분으로 쿠릴열도부터 남극까지 그리고 미크로네시아부터 남중국해 남사제도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의 영역 문제를 다루었는데, 냉전체제는 유럽보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오히려 맹위를 떨치면서 한국과 중국 등 분단국가 문제는 물론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남사제도 등의 귀속 및 오키나와의 지위 등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위한 초안들은 냉전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 준다고 한다. 초기 미국의 초안은 연합국 간의 공조와 구 적국 일본에 대한 징벌적이고 엄격한 강화조약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영토불확대 원칙에 기초하여 일본을 모든 탈취한 영토로부터 구축하기로 한 카이로선언, 미타미가라후토와 쿠릴열도를 소련에 할양하도록 한 얄타협정, 이를 확인한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계승하여, 초기 미국의 초안들은 일본의 새로운 국경선을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여 자세히 기재하고 지도를 첨부하였으며 국경선 근처의 작은 섬의 명칭과 귀속 국가까지 명시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격화로 일본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1950년 1월에 설치된 미국의 서태평양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일본과 필리핀은 그 선 안쪽에 그리고 상실을 어느 정도 각오하던 대만과 한반도는 그 바깥에 위치하게 하였다. 이런 와중에 딜레스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초안은 내용이 바뀌고 조문도 단순해졌다. 결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조선, 대만, 미나미가라후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포기나 명시되었지만, 초기 초안에서 보이던 그 범위나 새로운 국경선에 관한 규정은 사라졌다. 특히 초기 초안에는 일본이 한국을 위해 독도를 포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49년 말 초안에서 독도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대만과 쿠릴열도, 미나미가라후토의 귀속국가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일본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던 남태평양의 도서들은 유엔의 신탁통치령이 되었으나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갔다. 일본은 남사

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귀속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라 키미에 교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제는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를 계속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속력도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대만해협,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열도, 오키나와, 남사·서사군도 등을 둘러싼 문제는 애치슨 라인을 따라서 국가나 사람들을 분단시킨 채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경제대국이 되면서 지역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 대립이 재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제정치환경의 변화 가운데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학술, 정책연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수용이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과거 올란드 중재판정(1921)과 헬싱키선언(1975)을 그 예로 들었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은 계명대학교 이성환 교수의 글이다. 이성환 교수는 이 글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제한적인 의미를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문제,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 문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종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인식하게 되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조약이 전쟁상태의 종결과 전쟁책임 추구 등 강화조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대공산권 대응전략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강화조약으로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이어서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각서, 즉 SCAPIN 677호는 독도와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등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함으로써 강화조약의 당연한 속성인 패전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미국의 초안들도 처음에는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을 한국령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중국의 공산당이 본토를 완전히 장악한 1949년 이후 주일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J. Sebald)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계기로 바뀌었고 급기야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초안까지 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차관보는 소위 '러스크 서한'을 통해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하라 키미에 교수의 말대로,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었으리라 추론하게 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 및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으니 독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사라졌다. 이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도 사라진 것인데, 미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시 팽창해 가는 공산세력 저지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없었더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아직도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 도서, 즉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미국, 소련의 정책도 일관되지 못하였다. 연합국은 소련의 참진을 독려하고자 1945년 알타협정에서 이 열도를 소련에 할양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SCAPIN 677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팽창해 가는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열도의 북부에 위치한 구나시리, 에토로후와 남부에 위치한 하보마이, 시코탄을 분리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쿠릴열도를 점령

하고 있는 현실과 유럽에서의 국경조정 추이를 감안하여, 미국은 물론 일본도 쿠릴열도를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소련에게 넘겨주는 데 명시적이든 아니면 묵시적이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화조약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북방 4개 도서, 특히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한 영유권을 회수하기를 원하고 있고 소련과는 2도 반환에 대해 묵시적 합의를 한 바 있거니와 지금도 양국 간에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쿠릴열도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규정 역시 다소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1969년 발표한 탐사보고서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해저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센카쿠열도 문제가 대두되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전으로 영토를 회복하도록 한 카이로선언에 따라서 센카쿠열도는 중국 또는 대만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강화조약 제3조에 의해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될 지역으로 보았으며,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으로 센카쿠열도도 일본의 주권 하에 들어갔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과거 명나라 때부터 역사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있었음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체제를 비판하지만, 중국이 제시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영토적 권원을 추론할 단계에 이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성환 교수가 1693년부터 1699년까지 진행된 한국(조선)과 일본(왜) 간의 울릉도쟁계(일본에서는 ‘죽도일건’이라고 한다)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관심을 끈다. 17세기 돗토리번주의 도해면허를 받은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 근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어로활동을 하였지만, 일본 막부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울릉도는 조선 땅이며,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한다”고 정리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그 후에도 충실히 지켜졌으며 1877년 태정관지령에도 반영되었는데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보기 드문 합의인 이러한 해결책은 현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학문적 수월성을 구비한 연구서

끝으로 70년 전에 체결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의 미세한 조정방안까지 제시해 준 여섯 분의 국내외 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학문적 수월성을 갖춘 연구서를 발간한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에게는 감사와 함께 축하를 전하고 싶다.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연구』

(김순배·김종근·양윤정·정인철 공저, 2022,
동북아역사재단)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

- I. 김대건 신부와 「조선전도」의 전래
- II. 「조선전도」 제작 목적과 지도 전달 과정
- III. ‘은자의 나라’ 지리정보 전달자의 여정에 대한 기록

I. 김대건 신부와 「조선전도」의 전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자박물관에서 여러 개의 지도를 본 것은 뜻밖이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여정을 표시한 동아시아 지도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하는 느낌을 주는,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표현된 지도였다. 하지만 더욱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1868년 미국 해군 장교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한반도 지도였다. 동해 수역에 적힌 'MARE ORIENTALE'는 우리가 제안하는 'East Sea'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아닌가? 반갑게도 도면 설명 말미에는 “동북아역사재단 김종근 연구위원에 의해 최근 공개되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이보다 단순화되어 보이는 비슷한 형태의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1846년 김대건 신부에 의해 제작되어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의 사본이라 적혀 있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두 도면, 어떤 인연으로 함께 전시되어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어 주는 책을 만났다. 바로 이 글의 표제에 적힌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연구』이다. 이 책에 의하면 두 도면의 관계는,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가 프랑스로 전래되어 한반도 북서부 해안 항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사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왔던 미국 선박이 이 도면을 입수했고, 미군 장교 펠란(J. R. Phelan)이 이 지도를 모사한 또 다른 「조선전도」를 제작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생기는 궁금증,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는 어떤 동기로 기존의 어떤 지도를 참조하여 이 지도를 만들었는지, 그의 지도가 가진 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프랑스로 가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미군에게 넘어갔는지, 펠란은 어떤 정보를 추가하여 그의 지도를 만들었는지, 달리 참조한 지도는 없었는지,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에 무심하지 않다.

II. 「조선전도」 제작 목적과 지도 전달 과정

이 책의 메인 스토리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 맥락에서 본 지도의 제작과 프랑스로의 전래, 원본과 사본의 비교, 지명을 중심으로 한 지도 정보의 내용을 담은 제1장(김종근)과 펠란의 지도 제작 과정과 내용, 다른 한반도 지도와의 비교를 다룬 제2장(김종근)을 통해 전개된다. 이 부분은 나에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하게 했다.

그 하나는 지도 제작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콘텐츠다. 김대건 신부의 지도 제작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속한 파리외방전교회는 막혀 있는 육로를 대신해 해로를 통해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바다로부터의 상륙과 이후 내륙에서의 활동을 위해 조선의 지리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고, 신부는 한성부 서고에 보관된 지도를 필사하여 「조선전도」를 작성한 것이다. 그의 도면을 보면 서해안 부분에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이는 바닷길 이동의 가이드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지명도 대부분 군현의 명칭이었고, 군사시설, 사찰 등은 다루지 않았다.

펠란의 「조선전도」는 김대건의 지도에 의존해 해안에 정박한 후 이루어진 수로 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해안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추가했고, 하천, 섬, 산지를 표시했다. 이것은 아마도 이후 언젠가는 활용될 조선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연지명과 인문지명 모두 김대건의 지도보다 많은 수(466개)를 포함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도 전달의 과정이다. 이것은 곧 정보의 확산 과정으로서 미지의 세계를 알아 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저자는 김대건 신부가 자신의 지도 원본을 마카오에서 만난 그의 스승 리브와(Napoléon Liboias) 신부에게 넘겨주었고, 이것이 프랑스 해군을 거쳐 프랑스국립박물관으로 갔다고 추정한다. 두 개의 사본은 다른 프랑스 성직자가 복제한 것을 상하이 주재 프랑스 총영사가 받아 프랑스국립박물관으로 전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정확한 경로는 추가 자료를 발굴하

여 밝혀야 할 부분이다.

저자는 미국 측량선이 프랑스 외교관 또는 해군에게서 김대건의 「조선전도」를 입수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프랑스에 가 있던 원본의 사본이었는지, 아니면 프랑스 외교관 또는 해군이 남겨 놓은 또 다른 사본이었는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어쨌든 이렇게 전달된 지도가 펠란에 의해 더욱 발전하여 조선에 대한 정보 확산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실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한 이후 서술은 이 핵심 부분의 이해를 돕고 보완하는 논의를 펼친다. 김대건 신부가 모본으로 삼았다고 추정되는, 그보다 50년 전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지도」와의 비교는 어떤 목적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강조되었는지 알게 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제3장, 양윤정). 서해안에 자세한 정보가 추가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김대건의 지도는 1855년 프랑스 지리학회에 소개되어 조선의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와 그 명칭에 국한되었다고 분석된다(제4장, 정인철). 이것은 그 지도가 포함하고 있던 정보의 한계와 연결된다. 지도에 포함된 지명은 당시 로마자 표기의 현황과 한계를 보여 주는 소중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제5장, 김순배).

III. ‘은자의 나라’ 지리정보 전달자의 여정에 대한 기록

자료와 문헌의 제한과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의 한계리는 고지도 연구의 일반적 문제는 이 책에도 적용된다. 특히 제1장과 제2장을 집필한 김중근 연구위원은 김대건 지도 이후 등장한 한반도 지도 간 모사 관계에 대한 불명확성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그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최근 발굴한 「Carta Corea(라틴어로 '조선전도)」는 펠란의 지도와 유사한 단면을 보임으로써 이 두 지도가 모사한 또 다른 지도의 존재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조사는 ‘동해’가 표기된

펠란의 지도를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다시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관찰 포인트는 모두 ‘은자의 나라’에 대한 지리정보가 김대건의 「조선전도」라는 전달자를 통해 세계로 확산한 여정에 주목한다. 지도가 갖는 영향력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의미 있는 사례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토·해양일지



영토·해양 일지

염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2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한·미 공군은 B-1B 전략폭격기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 실시 • 30일: 합참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이탈 확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일본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일본과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방침 • 25일: 중국 해경 선박 2척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서 순항 • 25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방안 검토 • 25일: 일본은 중국 해경선 2척과 기관포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에 출현했다고 발표 •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총 8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을 따라 비행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일: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 관련, 외교부는 즉각 삭제 촉구 및 주한 일본 대사관 관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미군은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이후 공대공 실사격 훈련 실시 • 5일: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해안 방어 미사일 배치 • 6일: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육상자위대 부대 증강 방침 발표 • 14일: 러시아는 자국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상에서 7시간 초계 비행을 했다고 발표 • 16일: 일본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과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 자위대의 '반격 능력(유사시 적기 선제공격 능력)' 보유 명문화 • 16일: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명문화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 • 16일: 중국은 일본의 발표에 6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태평양으로 남하시키며 무력시위

영토·해양 일지

2022년	국내	국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일: 민주당은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 22일: 해군과 해경은 통상 독도방어 훈련으로 불리는 동해영토 수호 훈련 실시 27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
2023년	국내	국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일: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23일: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 촉구 26일: 한국 공군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공역 진입에 F-15K 전투기 등 출격 31일: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체험관 메타버스 전시장 구축 및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중국군 무인기와 정찰기, 전투기 등이 대만 방공식별구역(TADIZ) 진입 5일: 미 해군 7함대가 대만해협 항행 5일: 중국 정부는 미 해군의 대만해협 통과에 즉각 반발 17일: 일본 정부가 공격, 정찰, 방해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발표 18일: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대한 위성 감시 기능 강화 발표 23일: 일본 외무상은 정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26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과 중국의 KADIZ가 겹치는 공역에 진입 29일: 러시아는 일본의 반러 조치에 따라 쿠릴열도 등 지역 어업 협력 논의 불응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한·미 공군은 핵무기 탑재 가능한 첨단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에 대해 초강력 대응 시사 반발 4일: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항행 4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중국 해경국 선박 항행에 대해 일본 영해 접근금지 경고

<p>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한·미 공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 23일: 공군은 미군의 훈련장소 관련 일본해 표기에 대해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독도 영유권에 관심이 있지만(유효 응답자 1,765명 중 63.6%), 교과서에서 독도를 배운 세대는 관심이 크게 낮았다고(18~29세는 38.2%) 발표 • 12일: 중국 해군 측량함이 일본 영해 침범 • 13일: 일본에서 중국 정찰용 풍선과 유사한 비행체 연속 목격 • 13일: 중국 선박이 동중국해 인근 항해 • 13일: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의 활동에 우려 표명 • 14일: 중국은 대만, 남중국해 군도, 센카쿠열도 등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 지침 하달 • 18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 22일: 미군이 훈련장소를 일본해로 표기 • 2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발사
<p>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지휘부 제거 훈련인 한·미 연합 특수작전훈련(Teak Knife) 상황 공개 • 3일: 한·미 공군은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합동훈련 실시 • 6일: 군 당국은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앞서 위기관리연습(CMX) 실시 • 7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하고 분석 • 13일: 한·미 군은 13~23일까지 한·미 연합연습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불이 동해 상에서 대북 감시 활동 실시 • 2일: 일본 국토지리원이 한국령 독도를 일본 섬으로 포함시켜 집계 • 3일: 러시아는 잠수함 장거리 순항미사일 훈련에서 1,000km 떨어진 표적 명중 발표 • 5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즉각 중단 촉구 • 7일: 북한은 한·미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한 상시적 준비 태세 구비 발표 • 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 12일: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훈련 실시 발표 • 14일: 미국 최신 정찰기가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 동해와 서해 상공 비행

3월

- 14일: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4가지 요구사항 관철 표명
-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실시
- 16일: 합참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발표
- 17일: 한·미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강화로 협의
- 19일: 한·미 공군은 미 전략폭격기 참여한 연합공중훈련 실시
- 20일: 한·미 공군은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실시
-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 영토주권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1일: 한·미 공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일환으로 공동 훈련 실시
- 21일: 해군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 실시
- 22일: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FTX: 아외기동훈련)’를 강도 높게 시행 표명
- 22일: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포착 발표
- 27일: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 강화 태세 발표
-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 15일: 일본의 소형요트와 순시선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해역 항해
- 15일: 중국 해경 총대는 일본 선박의 센카쿠열도 해역 항해에 대해 퇴거 경고
- 16일: 대만 인근 일본 섬에 육상자위대 주둔지 개설 및 미사일 부대 배치
- 1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1발을 발사
- 16일: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
- 1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 21일: 북한은 핵 어뢰(핵무인수중공격정) 실험 실시
- 22일: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해안방어미사일시스템 및 바스티온 사단 배치
- 22일: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23일: 미군이 동해 상공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정찰기 비행
- 25일: 북한이 ‘핵 어뢰’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한 시험 실시
- 27일: 러시아는 캄차카 지역에 특수 잠수함 2척 배치를 위한 기반 시설 착공
- 27일: 항공모함 포함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남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 27일: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김정은 총비서 핵 무력사업 현황과 생산 실태 보고

<p>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일: 해양수산부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나포 • 30일: 정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 대목 삭제 및 독도 불법 점거 내용에 항의 • 31일: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 훈련에서 100km 밖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 • 28일: 미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국 제11함모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 • 28일: 일본이 역사 관련 왜곡 기술 강화한 초등 교과서 심의 결과 발표 • 28일: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항해에 대응해 초계기 2대와 미사일 고속정 2척을 보내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시·정보수집 추진 • 28일: 중국 해군의 구축함과 보급함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 진입 • 29일: 일본 내각부에서 강제 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하게 제기 • 30일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서해상에서 불법 포획 조업 실시 • 30일: 미국과 일본 공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비행 훈련 실시 • 30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항의 수용 불가 표명
<p>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한·미·일 해군은 남해상에서 대잠수함전, 수색구조 등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 5일: 한·미 공군이 미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중국 선박이 3.30~4.2(4일간) 센카쿠열도 영해를 향해 • 3일: 일본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열도 진입에 순시선을 배치하고 즉시 퇴거 경고 • 4일: 일본은 센카쿠열도 인근에 육·해·공 군사력 등 '태평양 방어선'을 구축 • 4일: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일본 해경 순시선과 대치 • 6일: 중국은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립' 입장 표명 • 8일: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대만을 포위하는 보복성 군사훈련 실시 • 8일: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 면담 실시 • 10일: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주변 해역 항행 • 10일: 중국이 실탄 탑재 폭격기와 항공모함으로 대만의 군사시설 타격훈련 실시

영토·해양 일지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를 비판하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표명 • 13일: 서해해양경찰청은 서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14일: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 발간 • 14일: 한·미·일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안보회의(DTT)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공동 대응을 정례화하기로 합의 • 15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에 해군이 경고사격 실시 • 17일: 한·미·일 공군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 20일: 외교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불법 점거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11일: 러시아는 일본 외교청서의 쿠릴열도 표기에 "러시아의 고유 영토"라고 반박 •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1발을 발사 • 13일: 중국어선 1척이 서해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실시 • 13일: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 • 13일: 미·일 공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연합공중훈련을 동해에서 실시 • 13일: 일본 국립 전시관이 2년 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상을 제작·홍보 • 14일: 러시아 국방장관은 태평양함대에 대한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발령 • 15일: NLL 이남 지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 행위 실시 • 15일: 북한군 경비정이 중국어선을 쫓아 NLL 침범 • 18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폭격기 8대가 동해중립수역에서 훈련 비행 실시 발표 • 23일: 북한은 남한의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증진문제 지적에 반발 • 24일: 중국 해사국은 서해 공해역에서 주요 군사 활동 진행 발표 • 24일: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동해에서 대잠수함 탐지·파괴훈련 실시 발표 • 25일: 중국 해사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일에 서해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 실시
----	---	--

<p>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일: 한·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선언' 발표 • 28일: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정기국 회 외교 연설에서 한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일: 프랑스 해군 구축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해상활동 감시 • 28일: 러시아는 한·미 간의 '워싱턴선언'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 • 28일: 일본은 해양 안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5개년 해양기본계획 채택 • 29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간의 '워싱턴선언'에 대해 규탄 • 29일: 중국 함정 1척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 • 30일: 중국 함정 5척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 • 30일: 중국 함정의 항행에 대응해, 일본은 함정과 초계기 등으로 경계 활동 실시
<p>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총리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지적 • 8일: 한국 화물선은 북한의 퇴거 요청에 동해 먼바다로 우회해 남하 • 9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가상의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 훈련 시행 • 17일: 해양경찰은 서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나포 • 22일: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정상간 미사일 정보 공유 합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불이 서해 상공에 출격 • 8일: 일본 총리는 일본 3대 안보 문서(독도문제연급) 재개정 요청 수용 불가 표명 • 8일: 북한 선박이 정상 항로 운행 중인 한국 화물선에 퇴거 요청 • 8일: 미국은 북한을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 • 16일: 러시아 군은 쿠릴열도에서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공훈련 실시 • 17일: 중국어선이 서해 해상에서 불법조업 실시 • 18일: 일본 방위성이 중국 단거리탄두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대만에 배치 • 22일: 미국은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보 정보 공유로 대비 태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 • 24일: 러시아군은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을 캄차카반도로 이동 배치

영토·해양 일지

<p>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한·미 군은 한미동맹 제70주년을 맞아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실시 • 30일: 5.30~6.2(3일간) 육·해·공·해병대가 참가하는 서북도서 방어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러시아 군용기 2대가 태평양과 동해 상공을 비행 • 25일: 일본 방위성은 동해 상공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를 발견하고 전투기 출격 • 26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 •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나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 • 31일: 미국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31일: 일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
-----------	---	---

규정 및 규칙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정)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계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臺北: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11.11. 규칙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

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인)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_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한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송규진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윤유숙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김희정 _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영토해양연구 Vol. 25

초판 1쇄 인쇄 2023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3년 6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